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 목적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항에서 규정된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여러 유형의 청소년지도자 중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청소년단체, 대학, 기타단체)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지도자를 말한다. 즉,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청소년지도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과 품성을 지닌 청소년지도사를 양성·배치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를 통해 1997년 4월 현재 2,574명의 유자격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양성된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서는 또한 이들 청소년지도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청소년지도사양성제도 시행 이후의 사회변화와 청소년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사양성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수과정 운영 및 연수생 선발과 배치·활용 계획,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등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양성기관간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관련 단체(이하 '양성단체'라 함) 또

는 대학 및 대학원에 개설된 청소년 관련학과(이하 '양성대학'라 함)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점정을 거쳐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양성단체 연수과정과 양성대학의 관련학과 과정 이수간에는 구성원, 교과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지정단체와 관련학과의 특성에 적합한 과정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목표를 정립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활용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현장 경력자 위주로 선발·운영되고 있는 양성단체의 연수와 대학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양성대학간에는 과정 이수자의 구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성단체의 연수와 양성대학 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지도사 양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력자 중심의 단기연수와 장기간의 대학교육을 통한 전공과목 이수 등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방안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학과 교과편성에 있어서는 현장활동 지도에 필요한 실습과목의 확대, 관련학과로서의 특성 확립, 전공 심화과정 개발 등의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과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양성제도 시행 이후, 동제도의 시행근거인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청소년활동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차 개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사회변화 추세에 대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한 지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교과과정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는 수련활동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지도,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지도, 자원봉사활동 지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지도기법 습득 및 청소년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봉사·희생정신 등의 자세와 사명감 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수과정 개선 방안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 청소년지도사 수급계획 수립, 보수교육의 기본방향 모색의 세 가지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양성인원 추정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과정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지도 인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

첫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관련 법적 근거 수준을 검토한다. 청소년지도사 각급 이수과정별 이수과목은 동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과 동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8조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수과정상의 이수과목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수과정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이수과정 관련 규정에 의한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규칙상 이수과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의 이수과정이나 교과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수과목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대안이 모색·제시되었을 경우에 이를 신속히 검토·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영역별 청소년지도사 양성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기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항)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영역은 학업·근로·복무활동등의 고유활동영역, 생활권 및 자연권에서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활동영역, 그리고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고유활동영역으로 구분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의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의무(청소년기본법 제11조)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는 야외수련활동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영역별 균형 있는 보완과 청소년활동의 주요 영역으로 대두된 자원봉사활동 등의 분야에 청소년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난점이 있으며, 지역사회 및 관련행정분야에서 종사할 청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도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의 교과과정 개선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행 이수과정은 전공, 교양특강, 실습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습득 및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사명감 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수과정 개선방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밖에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변화 전망에 기초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청소년지도사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양성인원 추정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1998-2002년) 동안 소요되는 청소년지도사 수요인원을 예측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정한 인원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함은 물론 청소년육성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등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정신적 소양을 갖춘 양질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는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수교육 기본방향 모색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 2(교육) 및 동 시행규칙 43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

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는 교육이다.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에서는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의 장,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제2항)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차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보수교육의 주요 내용, 보수교육 개설 및 운영방안 등 보수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98년도부터 시행될 보수교육 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보수교육 정립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 관련법규 검토

- 가.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검토
-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 연수운영규정’ 검토

2) 문헌연구

- 가.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자료수집 및 분석
- 나. 국내 청소년관련학과 및 교원연수기관 등의 교과과정 수집·분석
- 다. 현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교과과정 분석
- 라. 기발간 연수교재에 대한 검토

3) 설문조사

- 가. 1994년 ~ 1996년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 연수생 설

문조사 결과 종합 및 분석

나. 1997년 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설문조사

- 1급 연수생 대상 : 한국청소년개발원)
- 2급 연수생 대상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스카웃연맹
한국걸스카웃연맹
- 3급 연수생 대상 : 한국청소년연맹

다. 공공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4) 전문가회의

가.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나. 기존의 연수교재에 대한 검토

다. 연수교재 집필 방향 및 기본지침 수립을 위한 논의

라.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교과과정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II.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내용

1.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정의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으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지도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위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 내용 중 제7항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단체·대학을 의미하며(제1항),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해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제2항)를 갖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중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2.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동법 제21조에서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제1항) 하며, 이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한 규정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더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7조¹⁾와 제8조²⁾에서 규정한 바

- 1) 청소년기본법 제7조 (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와 같이 국가,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의 수련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는 점까지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제고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라는 목표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지도내용이 되는 수련활동과 수련거리, 그리고 지도활동의 현장이 되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련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수련거리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그리고 청소년단체는 동법 제3조 제8항에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련시설은 동법 제3조 제5항에서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의 정의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심신단련 등의 체험활동을 생활권이나 자연권의 청소년 단체나 수련시설에서 지도하는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활동 등에 대한 법규정상의 정의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보아도 아직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매우 막연하다. 즉, 청소년지도사의 지도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개념이 모호하고 수련거리의 개념도 프로그램과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들의 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에 대한 성격 규정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역시 법규정의 검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내용, 청소년단체의 범주, 수련시설의 기준 등에 관해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타난 관련 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 영역이 정리되어야 한다.

3. 수련활동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1)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난 수련활동의 의미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심신단련 등의 체험활동, 즉 수련활동을 생활권이나 자연권의 청소년단체 또는 수련시설에서 지도하는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점정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청소년지도사의 활동내용은 수련활동 지도이며, 활동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활동내용인 수련활동 지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청소년활동 속에서 수련활동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설정한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의 틀 안에서 수련활동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증진, 수련활동 지원, 교류 진흥, 환경 개선으로 영역화된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에 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청소년들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청소년육성 및 수련활동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청소년활동 영역구분이다. 여기서는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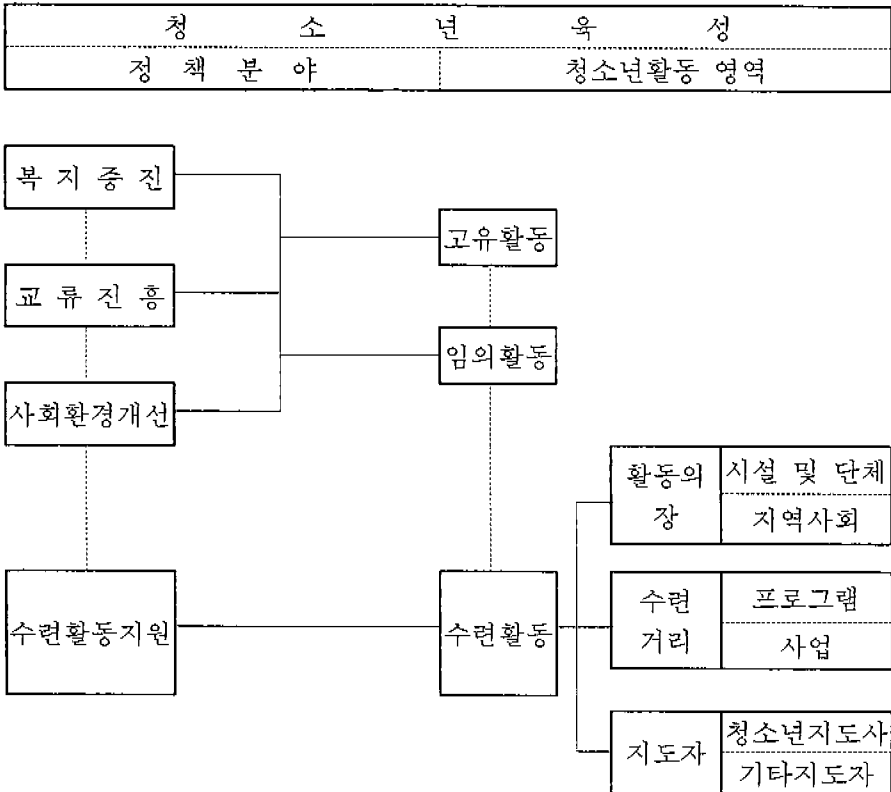
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련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II-1>과 같다.

2)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개념의 문제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청소년육성의 핵심은 수련활동이며, 이에 따라 수련활동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분야인 동시에 청소년활동 영역 중 하나로서 타분야에 비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정책분야의 구분이나 활동영역의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분야의 구분에 있어서 복지나 교류, 사회환경 개선 등의 영역은 청소년정책 이외에도 기존의 일반 정책이나 행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분야인 데 비해 수련활동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개념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는 고유활동영역(학교·직장·복무처)과 임의활동영역(가정)이 실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된 데 비해 수련활동영역(생활권·자연권)은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수련활동을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 규정한 것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더욱 수련활동의 영역이 청소년활동의 어느 범주에까지 이르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II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의 내용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정책의 분야를 복지 증진, 수련 활동 지원, 교류 진흥, 사회환경 개선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위한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활동'과 '청소년 스스로가 행하는 활동'을 혼동한 채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한 데에서 기인한다. 즉, 정책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여야 할 내용과 '청소년이 직접' 하는 활동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영역이 청소년 스스로가 행하는 활동, 그중에서도 수련활동 중심으로 영역화됨으로써 청소년육성, 청소년정책, 수련활동 지원 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혼선이 결국 청소년육성의 제분야 중 수련활동만이 강

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물론 이는 청소년육성 분야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련활동에 대한 이해마저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대안적 모색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상의 문제와 수련활동 개념의 임의성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활동을 활동요소에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청소년활동 영역 구분과 활동요소

활동영역 \ 활동요소	활동장소	활동내용	활동특성
임의활동	가정	자유활동	개별적, 자의적
고유활동	학교·직장·복무처	학업·근무·복무	의무적, 구속적
수련활동	생활권·자연권	심신단련 등 체험활동	능동적, 조직적
?	지역사회 (생활현장)	여가활동	능동적, 비조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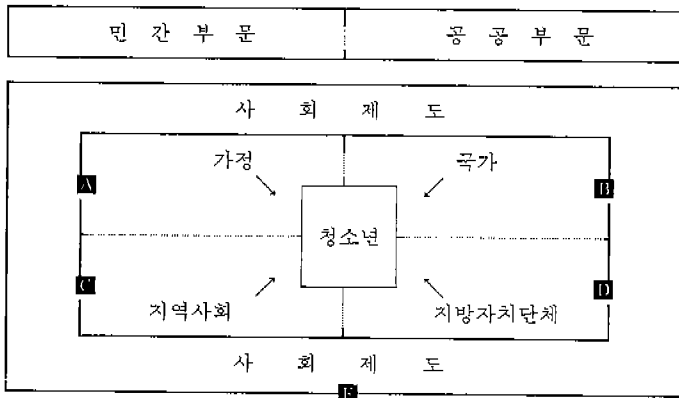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영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구분할 경우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현장인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여가활동, 즉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서의 비조직적·능동적 활동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³⁾ 이는 또한 수련활동 관련 시책 및 지원사업에도 반영되어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대해 “몇십명 또는 몇백명이 단제로 수련장 등에서 2~3일 동안 극기훈련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식의 고정된 관념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이란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또는 일반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 특히 국가의 정책과 관련하

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2(청소년이용시설) 제1항 제11호에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으로 표현함으로써 수련활동과 여가활동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를 법조문에 남기고 있다.

여 볼 때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조건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나 임의의 영역구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지도사의 지도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 위에 설정된 정책분야인 동시에 활동영역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련활동의 개념이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림 II-2> 청소년 생활공간과 청소년활동 영역



- 청소년기본법 : **A** - 임의활동영역(자유활동)
B C D - 수련활동영역(체험활동, 생활권·자연권)
E - 고유활동영역(학업·근로·복무활동)

그러나 이러한 수련활동 개념상의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이상과 같은 혼재된 기준으로 설정된 영역구분에 의해 청소년들의 비조직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생활현장에서의 활동이 배제되어서는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이라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활동 현장이 처한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다음 사항만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영역을 '청소년 지원활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기준으로 새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덕목 중심의 수련활동영역⁴⁾을 실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지적과 대안적 모색이 수련활동의 개념과 영역 설정에 반영되었을 때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에게 요구되는 자질⁵⁾이나 지도능력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문제이다.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와 활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21조이며, 이의 구체적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3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4) 제3조 (수련활동영역)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영역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영역으로서 다음의 수련활동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1. 체력단련·응급처치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2. 예술감상·독서활동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야영·해양탐험등 용기배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생활에절익하기·전통예절문화활동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5. 사회봉사·인간관계개발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6. 역사연구·문화권탐방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5) 청소년지도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은 결격사항(청소년기본법 20조 2항), 지원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3조 2항)이 있다.

<표 II -2>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구분	유형	배치기준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관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마을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의집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의집으로서 특정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종 유스호스텔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1,0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제2종 유스호스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제3종 유스호스텔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실 및 청소년야영장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 내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 회원들 둔 단체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수가 10,000인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수의 5분의 1 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4.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현황

1)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역할과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정 등록요건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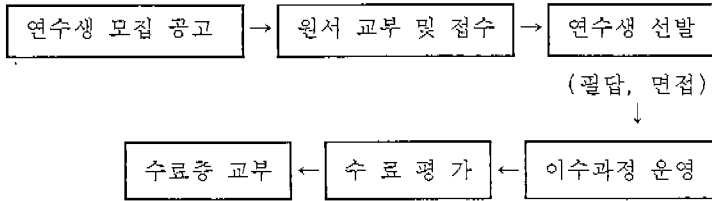
구 분	역	활	등 록 요 건
1 급 청소년 지도사	수련활동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계획, 편성,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의 운영관리		○대졸자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3년이상인 자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후 종사경력 3년이상인 자
2 급 청소년 지도사	소속기관 수련활동의 기획, 편성, 운영 또는 구체적 개별적인 수련 활동 운영관리		○대졸 및 전문대학졸업 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3 급 청소년 지도사	일정규모이하 수련시설의 구체적 수련활동이나 교육을 직접담당		○전문대 졸업 자 ○고졸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2)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의 운영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2와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단체(이하 '양성단체'라 한다)나 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단체와 양성대학에서 배출된 지도인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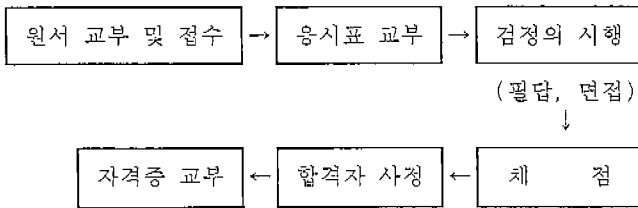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은 다음 <그림 II-3>과 같은 과정으로 운영되며, 양성대학에서 양성된 지도인력의 경우는 위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림 II -3〉 양성단체에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



양성단체의 이수과정 수료자와 양성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의 검정문제 출제과정 이외에 다음 〈그림 II-4〉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II -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정



여기서는 양성단체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연수생 모집 및 선발

연수생의 모집공고는 등록신청 마감일 20일전에 공고문게시, 신문공고, 공문, 기자회견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원하는 사람 중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여 등록신청(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등) 서류를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제출한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는 지원서류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양성연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자 개인별 경력, 직업, 학력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종합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이수과정 연수생을 선발한다. 이 때 지원자별 산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 직업, 학력 순으로 선발한다. 연수생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의 연수생 양성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급별 등록요건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 -4>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 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급 청소년 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4년이상인 자. 4.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교원(2급정교사 이상), 사회복지사(2급이상), 사회교육전문 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자(2급이상), 청소년상담원(3급이상)의 자격소지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급 청소년 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금별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구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은 다음 <표 II -5>와 같으며, 세부 교과목은 <표 II -6>과 같다.

<표 II -5>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

구 분	1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2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3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교양영역	교양특강	16시간이상	교양특강	8시간 이상	교양특강	4시간 이상
전공영역	18과목	9과목, 144시간이상 (1과목당16시간이상)	20과목	6과목, 96시간이상 (1과목당16시간이상)	7과목	7과목 총 38시간 이상
실습영역			현장실습	16시간이상	현장실습	8시간이상
합계		10과목 160시간이상		8과목 120시간이상		9과목, 50시간이상

<표 II -6>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구분	1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2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3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과목명	이수시간	과목명	이수시간	과목명	이수시간
교양영역	교양특강	16시간 이상	교양특강	8시간 이상	교양특강	4시간이상
전공영역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집단지도* 청소년과 역사 청소년정신건강 청소년심리검사 청소년과지역사회 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연구실습 지도자의 리더쉽 지도방법연구 청소년진로지도 청소년건강지도 청소년활동세미나 활동지도사례연구	9과목, 144시간 이상 (1과목당 16시간 이상)	청소년심리*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성교육 청소년상담연습 현대사회와청소년 청소년의 사회화 청소년의 시민생활 청소년지도자론 프로그램작성연습 지도방법연습 놀이와 레크레이 션지도 전통문화활동지도 인간관계활동지도 야외활동지도 스포츠활동지도 문예활동지도 봉사활동지도 예절활동지도	6과목, 98시간 이상 (1과목당 16시간 이상)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관계 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론*	4시간이상 4시간이상 6시간이상 4시간이상 6시간이상 4시간이상 4시간이상 10시간이상 (총38시간 이상)
			현장실습	16시간 이상	현장실습	8시간 이상
		10과목, 160시간 이상		8과목, 120시간 이상		9과목, 50시간 이상
합계						

* 표시과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양성단체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에 등록한 연수생은 청소년지도사양성 연수운영규정에 따라 총 연수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수강하고, 이수과목별 이수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이수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수료생만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양성대학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재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지도사 이수과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또는 수료한 자(1급청소년지도사 과정),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수료한 자(2급청소년지도사 과정),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 자(3급청소년지도사 과정)는 각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청소년(지도)학 전공자의 검정 응시자격은 본인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교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다.

다. 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동조항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제1항),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는 시행일 1개월 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항).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

격점정원서에 해당 지도사 이수과정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과 자격점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격점정의 과목과 방법은 동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점정은 점정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1급 청소년지도사 : 5과목, 2급 청소년지도사 : 4과목, 3급 청소년지도사: 7과목 종합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점정 과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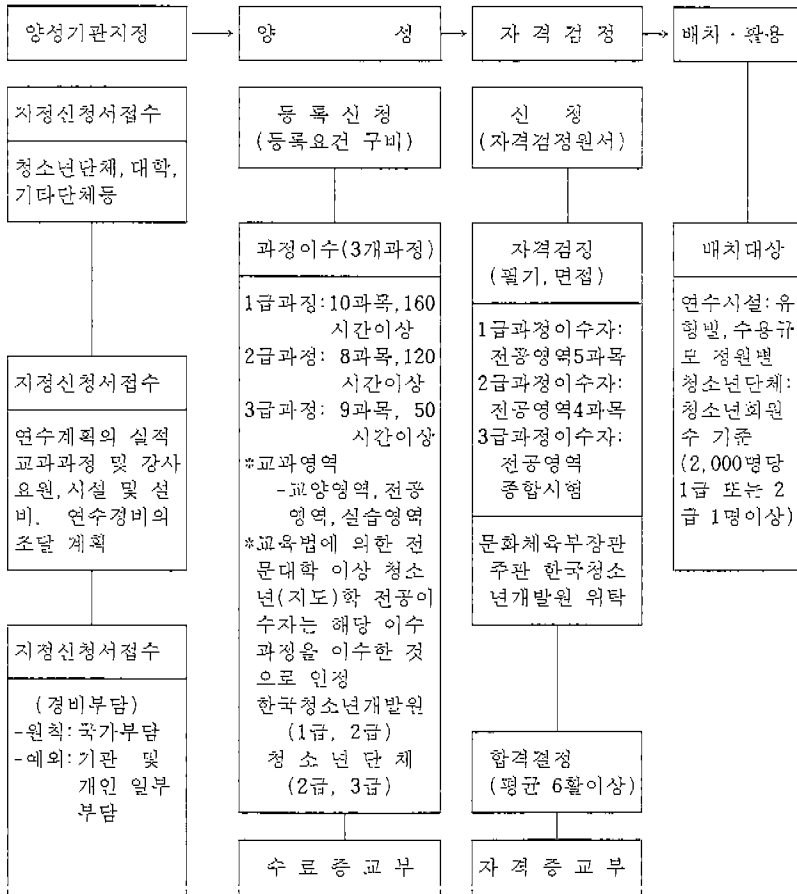
구 분	검 정 과 목	비 고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집단지도	5과목
2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심리,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론	4과목
3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론	7과목 종합시험

청소년지도사 자격점정의 합격자 결정은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점정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정과목 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 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회차의 시험에 한하여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양성·선발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배치기준은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제1종 유스호스텔, 제2종 유스호스텔, 제3종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실 및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수료)한 후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청소년지도사가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 배치·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개요라고 하겠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주요내용과 양성 및 배치·활동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 -5>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Ⅲ.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양성 현황

1) 양성기관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은 1, 2, 3급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일정 기준의 심사를 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 지정기관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등으로 1급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급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그리고 3급은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양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청소년(지도)학 전공을 개설한 학교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학교의 전공자들도 양성인원의 범주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관련학과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밖에도 경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주성전문대학 등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8학년도에도 한국체육대학교, 한서대학교, 천안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 등에서 청소년(지도)학과 전공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다.

<표 Ⅲ-1> 각급 대학 청소년관련학과 현황

학 급 별	과 정	인 원	비 고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학사)	35	1996년도 졸업 예정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10	1995년도 졸업
카톨릭대학교	청소년학과(석사)	15	1998년도 졸업 예정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40	1998년도 졸업 예정
경산대학교	청소년학과	40	1998년도 졸업 예정
순천향대학교	청소년학과	40(예정)	2000년도 졸업 예정
계	매년 졸업예정 인원	석사 20-25명 학사 150명 내외	

2) 양성인원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1·2·3급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점정을 실시하고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4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총 2,574명에 이르고 있다.

<표 III-2> 청소년지도사 양성인원

연도별	급 별	기 관 별	양성인원	자격취득인원
92년도	총 계		2,801	2,574
	소 계		352	
	2급	청소년연맹	352	
93년도	소 계		439	713
	2급	개 발 원	199	485
	3급	청소년연맹	240	228
94년도	소 계		758	708
	1급	개 발 원	99	96
	2급	개 발 원	194	375
		보이스카우트	96	
		걸스카우트	100	
	3급	청소년연맹	269	237
95년도	소 계		837	715
	1급	개 발 원	100	98
		대 학	7	3
	2급	개 발 원	201	337
		보이스카우트	103	
		걸스카우트	100	
	3급	대 학	26	24
		청소년연맹	300	253
96년도	소 계		321	341
	1급	개 발 원	48	47
		대 학	2	-
	2급	개 발 원	49	172
		보이스카우트	49	
		걸스카우트	50	
	3급	대 학	23	21
		청소년연맹	100	101
97년도 (1차)	소 계		94	97
	1급	개 발 원	38	37
	2급	개 발 원	56	58
	3급			2
97년도 연수 선발자	총 계		500	
	1급	개 발 원	100	
	2급	개 발 원	60	
		보이스카우트	70	
		걸스카우트	70	
	3급	청소년연맹	200	

3) 배치현황

<표 Ⅲ-3>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구 분		총괄현황						공공시설						민간시설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자화율(%)	미배치인원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자화율(%)	미배치인원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자화율(%)	미배치인원
총 계		470	357	564	452	80	112	342	230	322	168	52	154	128	127	242	284	117	0
생활환경	소 계	194	174	246	140	57	106	180	161	229	123	54	106	14	13	17	17	100	0
	수련원	8	8	34	20	59	14	8	8	34	20	59	14	0	0	0	0	0	0
	수련관	31	23	67	65	97	2	28	21	64	59	92	5	3	2	3	6	200	0
	수련실	155	143	145	55	38	90	144	132	131	44	34	87	11	11	14	11	79	3
자연환경	소 계	241	148	266	259	97	7	156	63	87	42	48	45	85	85	179	217	121	0
	수련마을	22	22	63	82	130	0	9	9	18	15	83	3	13	13	45	67	149	0
	수련의집	97	92	155	170	110	0	33	28	30	24	80	6	64	64	125	146	117	0
	야영장	122	34	48	7	15	41	114	26	39	3	8	36	8	8	9	4	44	5
유스호스텔		35	35	52	53	102	0	6	6	6	3	50	3	29	29	46	50	109	0

4) 향후 수급 계획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1998-2002년) 동안 소요되는 청소년지도사 수요인원을 예측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정한 인원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육성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등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정신적 소양을 갖춘 양질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양성 수급인원 산정 기준

① 수급인원 산출 요인 및 양성인원 산정 기준

첫째,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 수급인원은 향후 증설될 수련시설을 89-9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1, 2, 3급수별·시설별 법적 배치인원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단체 근무 지도사 및 자원지도사의 유자격화 인원을 산출한다. 현재 청소년단체별 가입 청소년수를 산정하여 법적 배치인원을 산출하고, 아울러 2002년까지 청소년단체 가입율이 현재 16.7%에서 30%로 증대되었을 때 소요되는 법적 배치인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 지도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단계별 유자격화 인원을 산출한다. 현재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2급 지도사 1명, 3급 지도사 1명 등 시·군·구별로 2명의 유자격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산출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육성 관련 지도자(청소년선도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청소년이용시설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일반교사 및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유자격화하기 위한 인원을 산출한다.

다섯째, 2, 3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의 일정비율 상위 등급 지원자를 산출한다. 2급 청소년지도사가 1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며, 3급 청소년지도사가 2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후 2년 이상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소요인원 산정 내역

A.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 산정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할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의 향후 변동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89년~1996년간의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생활권시설이 17.8%, 자연권시설은 10.8%, 유스호스텔은 17.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련시설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수를 추산하였다. 단,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시설별 과부족을 고려하여 향후 6년간 생활권시설은 16%, 자연권시설은 4%, 유스호스텔은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새로이 증설될 시설별 수를 추산하면 생활권시설 283개소, 자연권시설 58개소, 유스호스텔 26개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1996년말 현재 432개 수련시설의 법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이 532명인 점과 시설별로 1, 2, 3급수별 법적 기준 배치 지도사 인원을 고려하여 향후 6년간 증가할 367개의 수련시설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는 총 451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1997-2002)

시설유형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계
시설수	283	58	26	367
지도사 수	340	64	47	451

B. 청소년단체 근무 청소년지도사 등의 유자격화 인원 산정

청소년단체 근무자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로 양성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양성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단체 가입 청소년회원수는 2,167,899명이며, 이는 전체 청소년 1,300만명의 약 16.7% 수준이다. 청소년기본법상 단체의 법적 배치 지도사 인원은 회원 2천명을 단위로 청소년지도사 1명씩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현재 단체가입 회원수에 적정한 지도사 필요 인원은 1,084명이나 현재는 396명에 불과하다.

2002년까지 현재 청소년의 단체가입을 16.7%를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할 때 법적 배치인원 기준으로 필요한 청소년지도사는 1,950명이며, 기존 자격자 396명을 제외한 1,554명이 향후 양성해야 할 인원으로 판단된다.

C. 청소년지도위원의 유자격화 인원 산정

청소년지도위원은 전국의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각종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도인력 자원으로서, 청소년육성의 지방화와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사명감 고취, 정신적 자세의 확립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단계별 유자격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국의 청소년지도위원 현황은<표 III-5>와 같다.

<표 III-5> 시·도별 청소년지도위원 현황('96 현재)

시·도	읍·면·동 수	협의회 수	지도위원 수
서울	528	523	5,169
부산	239	239	2,606
대구	159	159	1,575
인천	148	148	1,397
광주	102	102	994
대전	87	87	848
경기	481	481	4,665
강원	226	226	2,259
충북	164	168	1,610
충남	212	217	2,008
전북	272	272	2,702
전남	326	326	3,051
경북	374	374	3,541
경제	413	413	4,072
제주	43	43	418
계	3,774	3,778	36,915

자료 : 문화체육부(1996)

1996년 현재 전국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36,915명으로 매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인원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여기서는 2002년까지 전국의 시·군·구 당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청소년지도사 1명씩으로 배치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시·군·구 255 곳에 2급 255명, 3급 255명 총 510명이 청소년지도사로 양성해야 할 인원으로 산정되었다.

D. 기타 청소년육성 관련지도자의 유자격화 산정내역

법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이외에도 청소년육성 관련 지도자의 존재유형은 매우 다양하다(표 III-6 참조).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인력을 청소년지도사로 양성하여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보다 심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유자격화할 필요가 있다. '96년 현재 124,078명으로 추산되는 각종 청소년지도자들 중 약 0.1%를 단계적으로 유자격화할 경우 유자격화 대상인원은 약124명으로 산정된다.

<표 III-6> 청소년지도자의 유형별 분류

대 상 청 소 년	담 당 업 무	수준/기능	참여정도	자격유무
학생청소년지도자 근로청소년지도자 농어촌청소년지도자 장애청소년지도자 비행청소년지도자 복무청소년지도자 무직·미진학청소년지도자	수련활동지도자 고유영역별고유 업무담당지도자 상담지도자 교정담당지도자 청소년행정공무원	관리자급 지도자 활동지도자 보조지도자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	유자격지도자 무자격지도자

E. 상위등급 지원자 산정

1993년도에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 중 약 15%가 1996년도에 2급 청소년지도사에 지원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상위등급지원자 비율을 3급에서 2급 지원자는 매년 15%, 2급에서 1급 지원자는 매년 20%로 산정하였다.

③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의 급별 배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의 급별 배분인원은 현재 급별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법적 배치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 및 기타 청소년육성 관련 지도자의 급별 배분비율은 시·군·구 배치인원

과 비율 등을 고려하여 1급 10%, 2급 30%, 3급 60%로 하였다. 이 때 산정된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의 급별 배분 기준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청소년지도사 소요인원의 급별 배분 기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기 타
1급	25%	40%	10%
2급	42%	40%	30%
3급	33%	20%	60%

나. 연도별 · 급별 · 영역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수급인원 추정

① 연도별 · 급별 양성인원

앞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수급계획의 산출요인과 내역에 따라 자체양성인원과 각 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졸업생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도별 · 급별 양성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1997년 4월 현재까지 양성된 인원은 총 2,801명(양성단체 2,743명, 양성대학 58명)이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양성 수급예정 인원은 총 4,487명(양성단체 3,135명, 양성대학 1,352명)으로 2002년까지 총 7,288명의 청소년지도사양성과정 이수자를 배출하게 된다. 전체 양성인원 중 양성기관과 양성대학의 양성인원 비율은 80.7% : 19.3%이다. 1997년 ~ 2002년간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인원 세부내역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청소년지도사 양성인원 (1997년 ~ 2002년) 추정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총인원		607	766	778	784	773	779	4,487
자체 양성 인원	소계	500	567	539	515	504	510	3,135
	1급	100	204	207	167	166	172	1,016
	2급	200	231	200	215	205	205	1,256
	3급	200	132	132	133	133	133	865
대학 양성 인원	소계	107	199	239	269	269	269	1,352
	1급	24	24	24	24	24	24	144
	2급	83	133	173	203	203	203	999
	3급		42	42	42	42	42	210

②연도별·급별·영역별 양성인원(자체 양성인원)

<표 Ⅲ-9> 양성단체 양성인원 추정

		합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전체 양성인원		3,135	500	100	200	200	567	204	231	132	539	207	200	132	515	167	215	133	504	166	205	133	510	172	205	133
시설 소요 인원		451	75	19	31	25	76	19	32	25	75	19	31	25	75	19	31	25	75	19	31	25	75	19	31	25
청소년 단체		1,554	239	39	80	120	263	105	105	53	263	105	105	53	263	105	105	53	263	105	105	53	263	105	105	53
청소년 지도위원 및 기타	소계	634	106	2	49	55	105	2	49	54	105	2	49	54	106	2	49	55	106	2	49	55	106	2	49	55
	지도위원	510	85	-	43	42	85	-	43	42	85	-	43	42	85	-	43	42	85	-	43	42	85	-	43	42
	기타	124	21	2	6	13	20	2	6	12	20	2	6	12	21	2	6	13	21	2	6	13	21	2	6	13
상위등급 지원자	소계	496	80	40	40	-	123	78	45	-	96	81	15	-	71	41	30	-	60	40	20	-	66	46	20	-
	2급→1급	326	40	40	-	-	78	78	-	-	81	81	-	-	41	41	-	-	40	40	-	-	46	46	-	-
	3급→2급	170	40	-	40	-	45	-	45	-	15	-	15	-	30	-	30	-	20	-	20	-	20	-	20	-

2. 문제점 분석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1·2·3급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4월말 현재 자격검정을 거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급 281명, 2급 1,472명, 3급 821명 등 총 2,574명이다. 현재 이들 청소년지도사들은 수련활동의 중추적 지도인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양성체계를 놓고 볼 때 21세기 청소년상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앞서 <표 Ⅱ-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규정은 “전과정의 운영관리”(1급), “구체적 개별적 수련활동 운영관리”(2급), “구체적 수련활동이나 교육을 직접 담당” 등으로 급별 위계만 설정되어 있다. 또한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표 Ⅱ-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시설 또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급별 인원수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인력,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한 청소년지도사는 욕구수준과 활동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그들과 함께 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전공영역이 있어 그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이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지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미흡하여 지역사회나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행정분야에서 종사할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교과편성이 이론중심 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나 업무에 관해 미흡하며 각 과정별 이수과목이나 각 과목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전문기능과 현장활동기능에 대한 과목도 부족하다. 또한 교과과정이 교양, 전공, 실습영역별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습득 및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세와 사명감 확립의 기회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있게 편성되거나 실습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Ⅲ-10>은 1994년부터 1996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전체 응답자 중 53.6%가 실습위주로, 24.9%가 실습과 이론을 반반씩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지도를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2급 연수생의 경우 실습위주의 교과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3%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Ⅲ-10> 바람직한 교과내용 구성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이론위주	150	21.6	69	28.2	81	18
반반씩	173	24.9	80	32.7	93	20.7
실습위주	372	53.6	96	39.2	276	61.3
무 응 답	7	1.0	.	.	7	1.5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임.

그러나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의 교과편성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러한 연수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이론 중심의 교과로 편성되어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수생들이 판단하는 연수과정 중 습득한 교과내용의 현장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회의적이다. 연수 교과과정 내용의 현장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중’ 또는 ‘하’라고 응답함으로써 현행 교과내용이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연수과정 교과내용의 현장활용 가능성

구분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상	113	6.1	31	12.7	82	17.9
중	421	60.0	139	56.7	282	61.7
하	158	22.5	71	29.0	87	19.0
무응답	10	1.4	4	1.6	6	1.3
계	702	100.0	245	34.9	457	65.1

*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임.

<표 III-12>는 1997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여기서 전체 응답자들 중 96.7%가 전문기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과정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기능 제고를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2>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전문기능 필요 정도

구 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느끼지 않는다	0	0.0	0	0.0	1	0.5	1	0.2
별로 느끼지 않는다	2	2.7	4	2.5	6	3.2	12	2.8
모르겠다	0	0.0	1	0.6	0	0.0	1	0.2
약간 느끼는 편이다	16	21.6	36	22.1	44	23.7	96	22.7
많이 느낀다	56	75.7	122	74.8	135	72.6	313	74.0
합 계	74	17.5	163	38.5	186	44	423	100

넷째, 청소년지도사의 급별 역할 규정이 명확치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도 학력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따른 문제이다. 청소년지도사는 현장에서의 지도능력이 어떤 자격보다 중요한 데 비해,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지원요건은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등급화 되어 있어 현장지도 능력의 질적 차이를 자격등급 구분에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등 등급 구분 자체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연수생 선발시 경력사항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임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현장활동 경력자와 경력이 전무한 양성대학의 이수자간의 문제에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현재 교직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지원자의 여성 편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지도 역시 학교교육 못지 않게 균형있는 인성교육과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대학 학생수의 성별 구성비가 나타내는 여초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13> 청소년관련학과 설치대학 학생수 성별 구성비 현황

학 교 별	남 자		여 자		합 계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 대 학 원 >	26	44	33	56	59	10
A대 일반대학원	2	22	7	78	9	2
A대 사회교육대학원	11	50	11	50	22	4
C대 사회복지대학원	13	46	15	54	28	5
< 대 학 >	147	31	332	69	479	83
A 대	26	14	163	86	189	33
B 대	40	40	60	60	100	17
D 대	60	50	60	50	120	21
E 대	6	15	34	85	40	7
F 대	15	50	15	50	30	5
<전문대>	3	8	35	92	38	7
J전문대	3	8	35	92	38	7
합 계	176	31	400	69	576	100

이러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1세기 청소년상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수과정 교과목의 영역화 및 단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을 사명감과 소명의식,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발달단계별 특성 등 청소년일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관한 영역과, 전공영역에서의 전문적 지도기법 등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영역으로 구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립 시행하여야 한다.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8%가 청소년이해와 청소년지도를 위한 기본적 기법의 습득이 청소년지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인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III-14>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에 가장 필요한 것

구 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정책 및 관계법규	9	12.2	7	6.0	18	9.6	34	9.0
청소년이해를 위한 일반적 지식 (심리,문화,의식,문제 등)	22	29.7	31	26.5	48	25.5	101	26.6
청소년활동지도를 위한 기본 (레크리에이션, 집단지도,상담,생활지도등)	26	35.1	53	45.3	100	53.2	179	47.2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관련 전문기능	14	18.9	24	20.5	20	10.6	58	15.3
기 타	3	4.1	2	1.7	2	1.1	7	1.8
합 계	74	19.5	117	30.9	188	49.6	379	100.0

* 1997년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임

또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연수생들은 전체 응답자 중 49.3%가 전문적 기능습득 기회부족과 이론중심의 교과편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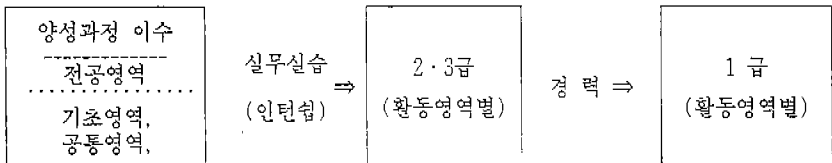
<표 Ⅲ-15> 연수과정 중 아쉬운 점

구 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전문적 기능습득 기회 부족	8	10.8	47	27.5	49	26.5	104	24.2
이론 중심의 교과편성	26	35.1	36	21.1	46	24.9	108	25.1
강의내용 중복이 많음	19	25.7	23	13.5	17	9.2	59	13.7
현대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 이해를 위한 기회제공 미흡	9	12.2	25	14.6	24	13.0	58	13.5
연수생 자체토론 및 세미나 등의 기회 부족	6	8.1	22	12.9	48	25.9	76	17.7
기 타	6	8.1	18	10.5	1	0.5	25	5.8
합 계	74	17.2	171	39.8	185	43	430	100.0

* 1997년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영역별 전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프로그램을 전문으로하는 지도자는 음악대학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지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Ⅲ-1>과 같은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영역별-등급별 구분 방안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영역별-등급별 구분(안)



※양성과정은 기초·공통영역과 전공영역을 단계별로 개설 운영

둘째, 지도영역과 현장에서의 지도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사와 같이 청소년지도사도 지도영역을 분명히 하여 양성과정에서부터 현장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지도사의 경력을 관리하여 전문분야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 지도경력을 바탕으로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지도사 등급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III-1 참조).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분명히 정립될 수 있으며, 상위 등급 자격취득이 고도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청소년지도에 따른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수과정의 실습을 실무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로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는 새로 양성된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자격 취득 후 즉각적으로 청소년활동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승인체제의 시행이다. 영국의 경우 국립청소년기구(NYA : National Youth Agency)의 주관하에 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력, 직업 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지도자를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영역은 지역사회활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승인체제의 시행도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 즉,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양성기관을 승인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승인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양성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영국의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승인체제(세부내용 첨부자료 참조)의 개요를 정리하면 크게 양성기관 최초 승인 단계와 일정 기간 후의 기승인된 양성기관에 대한 재승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양성기관 최초 승인 단계에서는 먼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NYA에 관련자료를 첨부한 승인의뢰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NYA의 주무부서인 'ETS 분과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Standard Subcommittee) 주관하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때 분과위원회는 실무그룹에 의뢰서의 세부사항 조사 의뢰하고, NYA 자문진이 실무그룹에 세부사항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하게 된다. 실무그룹은 방문조사 등 자료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TS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검토한 분과위원회에서 양성기관 지정 승인여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 내용은 다시 JNC(Joint Negotiating Committee)에 통보되어 양성기관으로 기

재되게 된다.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기승인 양성기관에 대한 재승인 단계에서는 승인을 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승인 이후 5년 또는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승인단계와 상응한 심사절차를 거쳐 양성기관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승인체제의 시행은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청소년지도 인력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양성되는 예체능, 정보통신, 환경 및 우주과학 등의 전공자들이 일정한 추가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분야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설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른 영역의 지도사 자격을 복수로 취득하여 지도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다.

IV.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발전방안의 모색

1. 청소년지도사 양성목표의 재검토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련거리는 수련활동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나 기타 관련기관 등을 통한 중앙에서 개발하여 현장에 개발 보급하거나, 현장에서 지도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수련활동의 발전 확장 단계를 맞이하여 중앙단위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한 일부 특수한 활동영역으로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즉, 문체부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련거리들을 공모하고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수련거리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받아 현장 적용을 거치고 평가한 후에 보급하는 현장중심의 개발 보급형태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련활동 인정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두어 현장의 많은 수련거리와 새로이 개발 보급되는 수련거리들을 인정하는 일정 업무를 수행한다면, 수련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청소년지도사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련활동 운영체제와 수련거리 개선의 과제들은 기존의 수련활동 현장이나 운영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기존의 수련시설이나 단체 및 사업형 수련활동들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이며 새로운 수련활동 수요(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련활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비조직적·능동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에딘버러 활동프로그램’은 하나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에딘버러 활동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델을 한국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맞도록 운영체제상으로 변형 채택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사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진 외국의 각종 제도들이 그대로 도입되어졌을 때, 우리의 문화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결합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차세대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거리와 수련활동의 운영은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와 문화적 맥락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양성제도 운영의 합리화

수련활동 운영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수련활동을 실천적으로 영역화하고 세분화시켜가는 정책적 방향은 수련활동과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지도를 담당해야 할 청소년지도사의 영역별 양성과 전문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은 발표자도 지적인 바와 같이, 초기 정착단계에서 1, 2, 3 등급 지도사간의 역할 구분이 다소 미흡하여 활동 영역과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이수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며 등록요건이 학력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과정 자체에서부터 이수과정을 영역화하고 단계화하는 동시에 수직적 3등급 구분을 축소 조정하고, 현장지도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실무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화와 관련한 양성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자질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우선 현장실습 영역 강화를 통한 현장활동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즉, 양성과정 이수시 실무실습(인턴쉽) 이수를 자격취득 필수요건화하고 아울러 현장 활동경력을 토대로 상위등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강화한다.

셋째, 청소년 이해의 심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생활문화, 대화 및 상담 기법, 발달단계별 특성 등에 대한 일반지식을 심화한다.

넷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기본적 지도 기법의 숙지·숙련 및 문화예술, 체력단련, 자연체험, 전통민속, 자기계발, 봉사활동 등 영역별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지도능력을 배양하는 일종의 자기 전공영역의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에서의 양성과 일반 양성과정의 상호 연계 강화 및 자격점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에서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경우 청소년(지도)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수련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이 경우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한 청소년지도사의 수급 조절 문제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청소년(지도)학과의 역할과 위상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득사항과 경력을 누적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인정사항 및 활동경력 기록부제'(quality & career record book)의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록부제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자격점정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교과영역과 자격요건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개략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교과영역과 자격요건(안)

수 준	교과영역 및 자격요건	
양성과정 이수	전공영역	
	기초영역 공통영역	
실무실습 (인턴십)★	실습과정(4주)	
지도사	3 급	양성과정 이수 + 인턴십
	2 급	양성과정 이수 + (인턴십) + (보수교육)
	1 급	2급 + 경력 + (보수교육)

★ 실무실습(인턴십) : 청소년지도 관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공인된 실습과정 이수

○ 교과영역

- 기초영역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세, 사명감 등
- 공통영역 : 청소년 이해 심화(심리, 생활, 문화, 의식, 문제 등)
지도기법 (집단지도, 개별지도, 연령별 지도 등)

· 전공영역(활동지도 영역)

： 영역별 전문적인 활동지도 기능 습득

- ①문화 및 취미 ②모험, 탐사 ③지역사회봉사 ④정보과학활동
⑤국제교류활동 ⑥자기계발활동 ⑦보호선도활동

○ 교과과정 운영

- 각 교과 영역별 단계별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전공·공통영역은 가능한 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선택 과목을 활성화

○ 승인체제 (양성기관의 승인 및 지정)

- 문화체육부에서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 작성·제시
-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기관 또는 대학은 이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적합한 교육여건을 구비하여 문화체육부(또는 이의 대행기관)에 양성기관 지정 신청
- 문화체육부(또는 이의 대행기관)는 관련자료 심사 및 실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

○ 영역별 지도사 자격의 복수 취득

-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공히 기초영역과 공통영역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특정 세부활동영역 자격취득자는 대학 또는 문화체육부 지정 기관·단체에서 개설하는 세부활동영역을 추가 선택하여 이수한 후 기취득 자격 이외의 세부활동영역 지도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청소년지도사 양성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자격취득자와 수료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3. 보수교육과정 개발

1) 개념 및 관련근거

가. 청소년지도사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대상 교육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이수과정 연수와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교육)에 의거하여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는 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함)과 동 시행규칙 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함)이 있다.

①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수련시설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으로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와 동 시행령 제73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이다.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에서는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의 장,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제2항) 하는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청소년지도사 이외에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교육)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여기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을 말하며, 동조항에서는 또한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이러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서 규정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동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항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수련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즉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7.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8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8. 제7호외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에서는 동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그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집 및 청소년야영장
2.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동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상기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4(결격사유)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 제2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책임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표자 내지 운영책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직접 지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그리고 또다른 결격사유의 하나인 청소년기본법 제31조(허가취소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동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동법 제31조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의 명령을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상기 제2호에서 말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라 함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영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청소년기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육)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수련시설에 소속된 날(운영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에 기본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 수련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게 된 공무원과 그밖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그 직을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부칙(1996. 7. 30) 제4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 중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당해 수련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도록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보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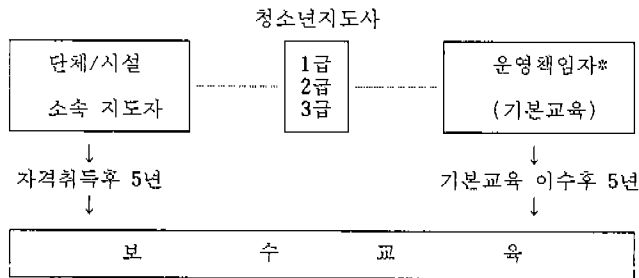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책임자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운영책임자 등에 대한 기본교육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대상 등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육)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이다. 동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3항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책임자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5년마다
 2. 청소년지도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자격취득후 5년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대상은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경우 자

격취득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수련시설 운영책임자로서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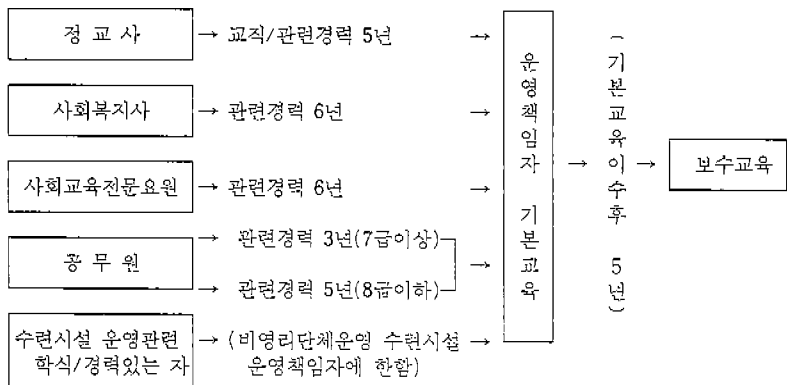
<그림 IV-1>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지도사



* 2급청소년지도사는 3년, 3급청소년지도사는 5년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이외에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경우에는 기본교육 이수후부터 매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이외의 사람이 수련시설 운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유형과 보수교육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청소년지도사 이외의 보수교육 대상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로서
 - 각 청소년단체에 상근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93년 이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에 상근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93년 이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국·공립시설 포함)
 -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이 아닌 청소년지도사에 한함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국·공립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3.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한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항에서는 이러한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문화체육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교육대상 파악 및 교육대상 특성 분석

청소년기본법 43조의2 1항의 '전년도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차 보수교육은 1998년도에 시행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각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중 시설 및 단체 근무자로 파악된 인원 산출하고, 청소년단체 비상근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근무인원의 50%를 보수교육 대상으로 추정하여 교육대상 인원을 파악하였다. 연도별 보수교육 대상자 추정 인원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보수교육 대상 인원(추정)

연도별 급 별	1998 ('93취득)	1999 ('94취득)	2000 ('95취득)	2001 ('96취득)	총 계
1 급		43(85)	25(49)	23(45)	91
2 급	237(474)	106(212)	106(212)	45(89)	494
3 급	65(130)	38(75)	42(84)	42(84)	187
계	302(604)	187(372)	173(345)	110(218)	772

3)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수립

청소년지도사 및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첫째, 구체적인 보수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즉, 공공 수련시설에 소속되어 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 등의 실태와 운영책임자 등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들의 기본교육 이수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보수교육의 목적 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일종의 직무교육(in-service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수련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직무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당한 교육목적의 설정과 교육내용의 편성이 가능하다.

셋째, 보수교육의 대상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실제 역할이나 역할 기대가 상이하다면 보수교육도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이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수련활동은 초기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련활동의 4대요소인 수련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시설, 단체 등의 양적인 증가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수련활동 정책의 발전·확장단계를 맞이하여 새로운 실천적 기준을 가지고 수련활동의 영역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곧 다가올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제시한 '21세기 청소년상'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확장을 위해서는 '21세기 청소년상'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1세기 청소년상'을 적용하여 수련활동의 영역을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분류한 뒤, 이에 상응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화 시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수련활동 영역

수련활동의 초기정착단계동안에 그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상의 수련활동 영역분류가 덕목 중심으로 작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이러한 영역분류상의 문제점 때문에 수련활동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련활동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행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기도 하지만, 수련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표 V-1>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수련활동 영역 분류(안)

지표		활동내용 (소재활동)	활동영역	
청소년상	세부지표		1안	2안
1.문화적 감성	·감성계발 ·정서함양 ·예술감각 고양 ·문화이해 증진 ·취미활동 장려 ·전인교육 완성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사진, 전통무예, 감수성 훈련, 공예, 수집, 가치관 정립	○문화감성활동	○취미특기활동
2.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창조능력 함양 ·탐구성 고양 ·논리적 사고훈련 ·정보지식 습득 ·미래사회 적응훈련 ·사회, 경제발전 기여	논리교실, 천체 관측, 정보사냥, 인터넷, PC통신, 가상현실 체험, 모형 조립	○과학정보활동	○취미특기활동 ○자기계발활동
3.봉사와 협력정신	·인간존중 ·공동체의식 함양 ·이웃사랑 실천 ·상부상조 정신함양 ·정의감 구현	일손돕기, 자선위문, 지역행사지원, 결연,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4.모험심과 개척정신	·강건한 신체 ·정신력 강화 ·용기 및 인내심 고양 ·탐험정신과 도전의식 함양 ·진취성 개발	동굴탐사, 극토탐사, 자연관찰, 무인도탐험, 철인경기, 번지점프, 오리엔티어링,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 산악캠프, 레프팅,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더	○모험개척활동	○모험개척활동
5.전문적 직업능력	·전문성 확보 ·다양성 추구 ·개성 개발 ·직업의식 함양 ·현실적응 능력개발	직업관훈련, 적성개발, 기능연마	○자기계발활동	○자기계발활동
6.국제감각	·진취적 기상고양 ·세계문화 이해 ·외국인과의 교류체험 ·한민족 정체성 확립 ·인류공영 건설	전통예술, 민속놀이, 역사연극, 세계문화 체험, 문화유산답사, 민족문화비교, 국제예절, 국제교류, 해외배낭여행	○국제교류활동	○자기계발활동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들은 '21세기 청소년상'에 대한 실천적 구현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며, 결국 수련활동의 질적인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청소년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감성, 둘째,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셋째, 봉사과 협력정신, 넷째, 모험심과 개척정신, 다섯째, 전문적 직업능력, 여섯째, 국제감각이다.

이상 여섯 가지 청소년상에 따라 구체적인 소재활동을 분류하고 수련 활동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실천력을 고려하여 수련활동의 영역 분류안을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안은 수련활동 영역을 '21세기 청소년상'의 지표와 일치되도록 문화감성활동, 과학정보활동, 사회봉사활동, 모험개척활동, 자기계발활동, 국제교류활동으로 설정한 것이다. 1안은 '21세기 청소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반면, 활동영역의 수가 너무 많다. 2안은 수련활동 영역을 취미특기활동, 자기계발활동, 사회봉사활동, 모험개척활동의 4개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2안은 수련활동 현장의 실천력에 보다 중점을 두고 '21세기 청소년상'에서 제시된 자질과 능력을 보다 복합적이고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한 반면, '21세기 청소년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한계가 있다(표 V-1 참조)

3. 수련활동 발전방안의 모색

이상과 같이 '21세기 청소년상'을 준거로 한 수련활동 영역 분류에 기초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확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영역별 분류에 상응하는 수련활동 제요소들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21세기 청소년상에 따른 영역별 수련프로그램의 균형적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개발·보급된 수련거리 90종을 새로운 수련활동 영역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영역별 균형을 이루면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활동을 개발·제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포괄적, 조각적 형태의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구체화, 단순화, 전문화된 형태의 소재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련거리 개발 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련활동 영역별 거점화 시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입지 조건 및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시설 유형 분류를 탈피하여 시설의 영역 특성화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시설 유형 분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 중점시설의 프로그램 특성화와 설치시설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을 확고히 한 후 각 시설간의 연계성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수련활동에 청소년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감성 영역의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점시설로 육성하고 각종 문화예술관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체제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정보활동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프로그램 특성화와 제반여건의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역별 중점시설의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의 활동영역별 특성화를 기초로 영역별 중점시설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영역별 활동에 고루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활동기록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97년 10월에 '개인활동기록부에 의한 다양한 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초·중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73%가 개인활동기록부 도입을 찬성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활동 체험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이에 반대한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음 등을 들고 있어 개인활동기록부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표 V-2 참조).

<표 V-2> 개인활동기록부에 의한 다양한 활동의 참여 여부

	찬성	73%	반대	27%
이 유	다양한 활동체험 가능	54%	시간부족	38%
	자유로운 활동 및 성취	20%	이유 없음	35%
	자유로운 시간활용	19%	활동부담 많음	15%
	개인 및 친구와 참여가능	6.3%	비용부족	9.8%

넷째, 청소년지도사의 영역별 전문화 및 실무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직적으로만 등급을 구분하여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영역별로 양성하여 영역별 전문지도 인력화하는 한편 양성과정에 실무실습(인턴쉽) 이수 필수화함으로써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영역별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활동영역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이수과정의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을 기초영역(사명감 고취), 공통영역(청소년이해 심화, 지도기법), 전공영역(다양한 활동영역별 전문기능 습득)으로 단계적으로 구분, 이수하게 할 경우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사명감 등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영역별 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도능력을 겸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별 이수과정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이 영역별 복수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하여 지도영역을 확장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영역별 중점시설 및 시범시설을 중심으로 한 '순환 청소년지도사 배치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련활동의 영역별 특성화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상승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안

1) 현 양성 체제상 문제점

가.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 양성 미흡 (비전문화)

- 21세기를 대비하는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기능별 특성을 살리지 못함
- 양성된 청소년지도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함
- 청소년시설, 단체의 전문분야별 지도영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심화

나. 이론 중심의 교과 운영

- 전문기능과 현장활동기능 습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현장에서 청소년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함
- 과정별 이수과목 및 과목별 내용이 중복됨

다. 교과운영의 비탄력성

- 이수과정,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사회변화에 따른 신속적 대응이 곤란함

라. 경력보다 학력위주의 등급 구분

- 현장지도 능력의 질적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2)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방안

가. 목적

- 지도사를 영역별로 전문화하여 21세기 선진형 청소년 지도
- 청소년 지도 직무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개편
- 정보사회,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형 양성제도 마련

나. 개선 방향

-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의 특성화와 연계 추진
- 활동영역을 '21세기 청소년상'을 근거로 6-7개로 구분하고, 전문 지도기능을 갖춘 영영별 지도사 양성

※ 참조

- 영국 에던버러 프로그램 : 봉사, 탐험, 취미개발, 사회체육
- 프랑스 :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교육적 여가, 사회활동, 지역 사회봉사

- 영역별 전문지도사는 복수 취득을 가능토록 함
- 국가공인지도자는 전문적 상근지도자를 기본으로 운영
 - 비상근, 자원지도자는 관련단체에서 양성, 운영하고 전문 양성기관에서 필요시 지원
 - 비상근, 자원지도자 양성 확대
 - 비상근, 자원지도자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의한 공인지도사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함
- 양성된 지도사가 제대로 배치되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 강구
- 양성과정에 실무 경력 요건 강화

다. 지도사 영역 구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취미활동 ○ 모험, 탐사 활동 ○ 지역사회봉사 활동 ○ 정보, 과학 활동 ○ 국제교류 활동 ○ 자기개발 활동 ○ 보호선도활동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px; height: 10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 <p>'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활동 지도</p> <p>—— 청소년 생활현장 지도</p> |
|--|--|---|

※참조 : 21세기 청소년상

- 문화감성을 지닌 청소년
- 과학능력과 정보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
- 모험·개척 정신을 가진 청소년
- 봉사와 협력정신을 가진 청소년
- 국제 감각을 가진 청소년
- 전문적 직업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등급 구분

- 1, 2, 3급으로 구분
- 등급에 따라 이수과정 및 활동영역에 차이를 둠

라. 지도사 양성기관

- 양성기관 : 활동영역별로 다원화
- 대학 : 전공영역별
- 청소년단체 : 설립목적 및 활동특성별
- 청소년단체 중 양성기관 지정
 - 대학 양성과정 이수자 이외의 자격취득 희망자 대상
 - 기초, 공통 및 전공 영역 과정 개설, 운영
 - 과정 이수 후 자격검정
 - 실무수습(인턴쉽) 과정 개설, 운영
(일정기준 이상 현장활동경력자는 실무수습 면제)
 - 전문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를 위한 기초 및 공통영역 과정 운영
- 대학 중 양성기관 지정
 - 청소년(지도)학과 개설 대학 및 대학원
 - 일반대학의 전문지도사 영역 관련학과 출신자를 위한 일반 및 공통영역 교과과정 개설 운영
 - 활동영역별 특성화 추진정도 및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필요시 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에서 일반 및 공통 영역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과정 이수 후 자격 검정

· 이 경우 전공영역 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참조 : 연수기관 세부화 방안

- 기초, 공통영역 이수과정 개설 기관
- 전공영역 세부 활동영역별 이수과정 개설기관
- 종합 이수과정 개설 기관

마. 지도사 이수과정

○기초, 공통, 전공영역으로 구분

- 기초영역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세, 사명감 위주
- 공통영역 : 청소년이해(심리, 생활, 문화, 의식, 문제 등)
지도기법(상담, 집단 및 개별지도, 연령별 지도 등)

· 전공영역 : 영역별 전문적 활동지도 기능

○실무수습(인턴쉽)을 필수과정으로 운영

- 대학은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운영
- 지도사 양성단체에서는 과정수료 후 인턴쉽 과정 이수
- 실무수습은 각급 청소년시설, 단체, 사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도록 함

○단계별 과정 이수 및 상위 등급 자격의 취득

- 이수과정을 2, 3급으로 구분·개설하여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2급 자격 소지자가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 취득후 일정 경력을 요함

※ 참조 : 청소년지도사 경력기록부제

- 최초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시 개별 경력 기록부 발급
- 청소년지도활동 종사 경력을 누적 기록·관리
- 인턴쉽 적용 판단 및 상위등급(2급→1급) 지원을 위한 자격 부여자료로 활용
- 활동영역별 전문인력 파악 자료로 활용

참고문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1996),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운영 설문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199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과보고서”.
- 이윤구 외(1990),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승희 외(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체육부(1993~1996), 『청소년백서』(서울 :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기본법령집』(서울 : 문화체육부).
- 최윤진 외(1991),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외(1992),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개발 연구』(서울 : 한국청소년
연구원)
- Muuss, R. E(1981), 송종두 역, 『청소년이론』(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 National Youth Agency(1993), *Guidelines to Endorsement for Youth Worker
Education in England* (Leicester : NYA).
- _____ (1996), *What is the Youth Service* (Leicester : NYA)

부 록

I. 설문조사

II. 청소년지도자 배치 현황

III. 외국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

I. 설문조사

1. 설문지

- 1) '97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지
- 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설문지

2. 설문조사 결과

- 1) '94~'96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조사결과 종합
- 2) '97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1-3급)
-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지

1) '97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지

1997년 1급 청소년지도사연수에 관한 설문조사

1997년 1급 청소년지도사연수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번 연수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지도사연수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질문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 직접 기입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성의껏 적어주세요.

1. 선생님의 성별은?

- (1) 남 (2)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선생님의 학력은?

-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4년제) (4) 대학원졸

-> 위에서 (2)번, (3)번, (4)번에 답하신 분에게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의 전공은? (대학원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전공도 함께 적어주세요)

(1) 전문대졸 : _____

(2) 대 졸 : _____

(3) 대학원졸 : _____

4. 선생님의 근무지는?

-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대구 (5) 대전
(6) 광주 (7) 경기 (8) 강원 (9) 충북 (10) 충남
(11) 경북 (12) 경남 (13) 전북 (14) 전남 (15) 제주

5.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떠한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 (1) 청소년생활권수련시설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 (2) 청소년자연권수련시설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 (3) 유스호스텔
- (4) 청소년단체
- (5) 청소년복지시설
- (6) 학교

(7) 기타 (_____)

→ 위에서 (1)번, (2)번에 답하신 분에게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수련시설의 운영형태는 어떠한지요?

- (1) 국공립 (2) 민간 (3) 위탁

6. 선생님께서 청소년지도현장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꼭 한가지만 골라주세요)

- (1) 활동지도 (2) 운영책임 (3) 일반행정
- (4) 시설관리 (5) 상담 (6) 기타 (_____)

7. 선생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의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청소년지도자로서 활동하신 경력은 모두 몇 년 몇 개월인지요? (자원봉사경력포함)

(_____) 년 (_____) 개월

8. 선생님께서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 (1) 경제적 비용 (2) 직장상사 및 동료의 이해부족
- (3)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 (4) 연수에 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5) 기타 (_____)

9.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수의 교과편성(커리큘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1-----2-----3-----4-----5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만족스럽다

10.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수과목의 교재에 대해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목별로 평가하여 보기에서 해당내용을 나타내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 보기 >

1-----	2-----	3-----	4-----	5-----
아주 좋지 않았다	별로 좋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았다	아주 좋았다

- (1) 청소년문화 -----> 1-----2-----3-----4-----5
 (2) 청소년문제 -----> 1-----2-----3-----4-----5
 (3) 청소년복지 -----> 1-----2-----3-----4-----5
 (4)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1-----2-----3-----4-----5
 (5) 집단지도 -----> 1-----2-----3-----4-----5

11.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한 점은?

- (1) 전문적인 기능습득기회의 부족
 (2) 이론중심의 교과편성
 (3) 강의내용의 중복이 많다
 (4) 현대 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이해를 위한 기회제공 미흡
 (5) 연수생 자체토론 및 세미나 등의 기회부족

(6) 기타 (_____)

12. 다음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지요?

- (1) 수련장 등 야외에서 단기간 동안 행하는 청소년들의 집단활동
 (2) 학교교육이나 직장근무 시간이 아닐 때 청소년들이 하는 모든 활동
 (3) 청소년단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4)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5) 청소년들이 남는 시간에 휴식을 겸해 하는 활동

(6) 기타 (_____)

13. 선생님께서는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한가지만 골라주세요)

- (1) 정책 및 관계법규
 (2) 청소년 이해를 위한 일반적 지식(심리, 문화, 의식, 문제 등)
 (3) 청소년활동 지도를 위한 기본(테크닉레이션, 집단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기능(탈춤, 민요 등)

(5) 기타 : _____

14. 선생님께서는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지도에서 전문기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1-----	2-----	3-----	4-----	5-----
전혀 느끼지	별로 느끼지	모르겠다	약간	많이
않는다	않는다		느끼는 편이다	느낀다

15.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활동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중 현행 지도사 연수과정에 꼭 포함시켰으면 하는 기능이 있으면 아래 표안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두 가지만 골라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번호 옆에 있는 괄호 안에 구체적인기능명을 꼭 한가지만 적어주세요. 해당되는 기능이 아래의 보기에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적어주세요. (예: 탈춤, 민요, 양궁 등)

- | |
|--|
| (1) 문화예술<독서, 글짓기, 연극, 영화감상, 음악감상, 미술 등> -() |
| (2) 체력단련<축구, 야구, 수상, 산악, 항공활동, 체조, 성교육,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 |
| (3) 자연체험<동굴탐사, 천체관측, 동·식물관찰,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농작물재배등> -() |
| (4) 전통민속<탈춤, 농악, 국궁, 문화유적지답사, 고궁탐방, 박물관 견학, 생활예절 등> -() |
| (5) 자기계발<심성훈련, 감수성훈련, 참선, 마인드컨트롤, 정보마인드, 과학능력 등> -() |
| (6) 봉사<공공시설물청소, 농번기일손돕기, 토래상담, 불우이웃 돕기, 지역사회가꾸기 등> -() |
| (7) 기타 _____-() |

16.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전문기능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을 아래 표안에서 한 가지만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그 번호 옆에 있는 괄호 안에 구체적인 기능명을 꼭 적어주세요. 해당되는 기능이 아래의 보기에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적어주세요. (예: 탈춤, 민요, 양궁 등)

(1) 문화예술(독서, 글짓기, 연극, 영화감상, 음악감상, 미술 등) -(	)
(2) 체력단련(축구, 야구, 수상? 산악? 항공활동, 체조, 성교육,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	)
(3) 자연체험(동물탐사, 천체관측, 등? 식물관찰,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농작물재배 등) -(	)
(4) 전통민속(탈춤, 농악, 국궁, 문화유적지답사, 고궁탐방, 박물관 관견학, 생활예절 등) -(	)
(5) 자기계발(심성훈련, 감수성훈련, 참선, 마인드컨트롤, 정보마 인드, 과학능력 등) -(	)
(6) 봉사(공공시설물청소, 농번기일손돕기, 또래상담, 불우이웃돕 기, 지역사회가꾸기 등) -(	)
(7) 기타 -----	()

17.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이 선생님의 앞으로의 종사업무에 어느 정도의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1-----2-----3-----4-----5
전혀 아무런 별로 도움을 잘 모르겠다 약간의 도움을 아주 큰 도움을
도움도 주지 주지 못할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것이다

18. 청소년지도사 자격 1급, 2급, 3급과 같은 등급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1-----2-----3-----4-----5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잘모르겠다 대체로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19.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직업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1-----2-----3-----4-----5
전혀 만족스럽지 별로 만족스럽지 보통이다 대체로 아주
않다 않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 위 19번에서 (1)번과 (2)번에 답하신 분에게만 여쭙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 | | |
|----------------|-------------------------|
| (1) 낮은 급여 | (2) 근무환경열악 (근무시간, 시설 등) |
| (3) 과중한 업무 | (4) 경영자이해부족 |
| (5) 기타 : _____ | |

<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로서 '93년 이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수련시설 운영책임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1)에 해당자는 자격취득 후 5년마다, (2)에 해당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 선생님께서 보수교육을 받으신다면, 보수교육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꼭 한가지만 골라주세요)

- (1) 정책 및 관계법규
(2) 청소년 이해를 위한 일반적 지식 (심리, 문화, 의식, 문제 등)
(3) 활동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전문기능 습득
(4) 레크리에이션, 집단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지도기법 습득
(5) 기타 : _____

21. 선생님께서는 보수교육 기간이 몇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 () 일

〈 소감문 〉

1. 연수시설에 대하여

2. 연수운영에 대하여

3. 강사진구성에 대하여

4. 교과과정(커리큘럼)구성에 대하여

5. 총평

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한국청소년개발
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될 뿐, 그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
라도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21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연수수련실 Tel : (02) 576-2893

- ◆ 다음의 질문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 ◆ 직접 기입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1. 선생님의 성별은?

(1) 남

(2)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선생님의 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4. 선생님의 근무지는?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대구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16) 제주

5.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유형을 골라주세요.

(1) 청소년수련원

(2)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수련실

- (4) 청소년수련마을 (5) 청소년수련의집 (6) 청소년야영장
 (7) 유스호스텔 (8)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9) 기타 (_____)

6.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 (1) 프로그램기획 (2) 프로그램진행 (3)운영책임
 (4) 일반행정 (5) 상담 (6) 기타 (_____)

7. 다음의 보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직렬을 골라주세요.

- (1) 일반직 (2) 별정직 (3) 기타 (_____)

8.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보직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_____ 년 _____ 개월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수련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서는 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를 구분하니 유의하십시오)

9. 귀 수련시설에서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최대인원은 약 몇 명 정도인지요?

약 _____ 명

10. 귀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지도자는 몇 명이신지요?

_____ 명

11. 선생님께서는 귀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몇 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_____ 명

12. 귀 수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몇 명이신지요?

<1> 1급 : _____ 명 <2> 2급 : _____ 명 <3> 3급 : _____ 명
 -> 급별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신 분께서는 전체 인원만 적어주세요.

전체 : _____ 명

13. 귀 수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의 수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과 비교하여볼때 어떻습니까?

- (1) 배치기준보다 많다
(2) 배치기준과 같다
(3) 배치기준보다 적다
(4) 배치대상시설이 아니다

-> 위에서 (3)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배치기준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____)

14. 선생님께서는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수가 일반적으로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다고 보시나요?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너무 많다 약간 많은 적당하다 약간 부족한 너무 부족하다
편이다 편이다

15. 선생님께서 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6. 선생님께서는 수련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을 적어주세요.

(_____)
_____)

17. 선생님께서는 수련시설이용의 활성화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을 적어주세요.

(_____)
_____)

18. 선생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1〉 생활권의 경우

(1) - - - - (2) - - - - (3) - - - - (4) - - - - (5)
너무 많다 약간 많은 적당하다 약간 부족한 너무 부족하다
 편이다 편이다

〈2〉 자연권의 경우

(1) - - - - (2) - - - - (3) - - - - (4) - - - - (5)
너무 많다 약간 많은 적당하다 약간 부족한 너무 부족하다
 편이다 편이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9.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 (1) 1급 취득 (2) 2급 취득
(3) 3급 취득 (4) 아니오

-> 위에서 (4)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취득을 원하시나요?

- (1) 예 (2) 아니오

↳ ‘(1) 예’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1) 연수선발 혹은 자격검정에서 불합격해서
- (2) 업무가 과중해서
- (3) 연수기간 중 대체인력이 없어서
- (4)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알지 못해서

(5) 기타 ()

※ 다음 20번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혹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선생님께서만 여쭙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

20. 선생님께서는 왜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혹은 왜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 21-22번은 공공수련시설 운영책임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수련시설 운영책임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본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1. 선생님께서는 보수교육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꼭 한가지만 골라주세요.

- (1) 정책 및 관계법규
- (2) 청소년 이해를 위한 일반적 지식 (심리, 문화, 의식, 문제 등)
- (3) 활동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전문기능 습득
- (4) 레크리에이션, 집단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지도기법 습득
- (5) 기타 (_____)

22. 선생님께서는 보수교육 기간이 몇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_____ 일

다음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거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3. 현재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련거리중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에서 개발·보급한 수련거리를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 | |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많이 | 가끔 | 보통이다 | 별로 이용하지 | 전혀 이용하지 |
| 이용한다 | 이용한다 | | 않는다 | 않는다 |

24.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에서 개발·보급한 수련거리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네가지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를 적어주세요.

- (1) 예 (2) 아니오

→ '(1) 예'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향후 개발·보급되는 수련거리는 어떤 형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현재와 같은 책자 형태 (2) 매뉴얼식의 요약형태
(3) 백과식의 자료집형태 (4) 책자와 비디오의 혼합형태
(5) 기 타

27. 기본형 수련거리를 향후 계속적으로 개발할 때, 수련거리의 개발방법은 어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지금까지 시행된 것처럼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 등에서 개발·보급
(2) 각 시설·단체 등에서의 수련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3) 기존에 개발된 수련거리를 총체적으로 수집·분류하여 백과 형태로 정리 후 보급
(4) 수련거리 공모제를 실시하여 심사후 채택된 수련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보급

(5) 기 타 (_____)

28. 수련거리 개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수련활동 대상 (2) 장소
(3) 수련활동 단위(인원) (4) 비용 (5) 모르겠다

(6) 기타 (_____)

29.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련거리, 지도자, 시설 등을 전문화·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 위에서 (1) 혹은 (2)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1) 혹은 (2)라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_____)

30.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시책 차원에서 만약 귀 수련시설을 시범운영 시설로 지정하여 수련거리를 특성화 한다면 귀 수련시설에서는 아래의 영역 중 어느 영역을 특성화시키고 싶으신지요?

- (1) 문화예술(독서, 글짓기, 연극, 영화감상, 음악감상, 미술 등)
- (2) 체력단련(축구, 야구, 수상·산악·항공활동, 체조, 성교육,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 (3) 자연체험(등굴탐사, 천체관측, 동·식물관찰,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농작물재 등)
- (4) 전통민속(탈춤, 농악, 국궁, 문화유적지답사, 고궁탐방, 박물관견학, 생활예절 등)
- (5) 자기계발(심성훈련, 감수성훈련, 참선, 마인드컨트롤, 정보마인드, 과학능력 등)
- (6) 봉사(공공시설물청소, 농번기일손돕기, 또래상담,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가꾸기 등)
- (7) 기 타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시설·단체의 수련활동이 개인보다는 단체(집단)중심으로, 프로그램보다는 시설중심으로, 연속성보다는 일회성중심인 현행의 수련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련활동 형태를 요약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각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가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탐험탐사, 봉사, 취미특기의 각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하나씩 선택하여 필요한 최소비용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역별 활동지도자와 함께 꾸준히 활동하여 활동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자신이 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권장하는 활동

31.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은 프로그램 중심의 수련활동을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3) 모르겠다

32. 현행의 수련활동 실정에 위와 같은 포상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기존 시설 및 단체와의 마찰
- (2) 문화적·사회적 차이에서 오는 제도 인식의 어려움
-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 (4) 프로그램 중심의 수련활동을 담당할 주체 기관의 확보 문제
- (5) 기존 시설과 단체의 수련활동 시간에 비하여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됨
- (6) 모르겠다
- (7) 기 타 (_____)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33. 선생님께서서는 현재의 보직(담당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 |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전혀 | 별로 | 보통이다 | 대체로 | 아주 |
| 만족스럽지 | 만족스럽지 | | 만족스러운 | 만족스럽다 |
| 않다 | 않다 | | 편이다 | |

-> 위에서 (1) 과 (2) 에 답하신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 | | |
|-------------------|------------------------|
| (1) 낮은 급여 | (2) 근무환경열악(근무시간, 시설 등) |
| (3) 과중한 업무 | (4) 승진의 어려움 |
| (5) 기 타 (_____) | |

2. 설문조사 결과

1) '94~'96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조사결과 종합

가. 조사대상자의 성격

1) 성별 분포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 자	454	64.7	195	79.6	259	56.7
여 자	245	34.9	50	20.4	195	42.7
무응답	3	0.4			3	0.7
계	702	100	245	34.9	457	65.1

2) 연령별 분포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대	162	23.1	3	1.2	159	34.8
30대	322	45.9	121	49.4	201	44.0
40대	164	23.4	86	35.1	78	17.1
50대	46	6.6	31	12.7	15	3.3
60대이상	5	0.7	4	1.6	1	0.2
무응답	3	0.4			3	0.7
계	702	100	245	34.9	457	65.1

3) 학력별 분포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 졸	53	7.5			53	11.6
전문대졸	56	8.0	14	5.7	42	9.2
대 졸	426	60.7	145	59.2	281	61.5
대학원졸	160	22.8	85	34.7	75	16.4
무응답	7	1.0	1	0.4	6	1.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4) 경력별 분포

경 력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2년이하	169	24.1	6	2.4	163	35.7
3 - 4년	156	22.2	23	9.4	133	29.1
5 - 7년	85	12.1	30	12.2	55	12.0
8 -10년	109	15.5	64	26.1	45	9.8
11년이상	167	23.8	121	49.4	46	10.1
무 응 답	16	2.3	1	0.4	15	3.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5) 연도별 분포

연 도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94년	245	34.9	72	29.4	173	37.9
95년	279	39.7	93	38	186	40.7
96년	178	25.4	80	32.7	98	21.4
계	702	100	245	34.9	457	65.1

6) 기관별 분포

직 종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단 체	161	22.9	79	32.2	82	17.9
수련시설	149	21.2	51	20.8	98	21.4
학 교	104	14.8	49	20.0	55	12.0
상 담 실	49	7.0	11	4.5	38	8.3
복지시설	92	13.1	25	10.2	67	14.7
기 타	127	18.1	28	11.4	99	21.7
무 응 답	20	2.8	2	0.8	18	3.9
계	702	100	245	34.9	457	65.1

7) 업무별 분포

담당업무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프로그램개발 및 지도	216	30.8	100	40.8	116	25.4
행 정	90	12.8	26	10.6	64	14.0
상 담	52	7.4	11	4.5	41	9.0
기관운영	48	6.8	32	13.1	16	3.5
기 타	40	5.7	4	1.6	36	7.9
무 응 답	256	36.5	72	29.4	184	40.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나. 청소년지도사연수에 관한 인식

1) 연수참여 목적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지도능력의 습득을 위하여	461	65.7	151	61.6	310	67.8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149	21.2	52	21.2	97	21.2
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로	32	4.6	7	2.9	25	5.5
기 타	58	8.3	35	14.3	23	5.0
무 응 답	2	0.3			2	0.4
계	702	100	245	34.9	457	65.1

2) 연수참여시 어려운 점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적인 비용	121	17.2	35	14.3	86	18.8
직장상사 및 동료의 이해부족	101	14.4	42	17.1	59	12.9
담당업무의 대체요원 부족	253	36.0	118	48.2	135	29.5
연수에 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136	19.4	27	11.0	109	23.9
기 타	68	9.7	20	8.2	48	10.5
무응답	23	3.3	3	1.2	20	4.4
계	702	100	245	34.9	457	65.1

○기관별

	경제적 비용		직장상사 및 동료 이해 부족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		연수정보 획득 어려움		기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청소년단체	26	16.5	21	13.3	70	44.3	26	16.5	15	9.5	158	23.8
수련시설	28	19.4	11	7.6	65	45.1	23	16	17	11.8	144	21.7
학 교	26	25.5	35	34.3	26	25.5	13	12.7	2	2	102	15.4
상 담 실	14	29.8	5	10.6	11	23.4	12	25.5	5	10.6	47	7.1
복지시설	8	8.9	6	6.7	43	47.8	26	28.9	7	7.8	90	13.6
기 타	16	13.1	21	17.2	35	28.7	31	25.4	19	15.6	122	18.4
계	118	17.8	99	14.9	250	37.7	131	19.8	65	9.8	663	100

○ 업무별

	경제적 비용		직장상사 및 동료 이해 부족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		연수정보 획득 어려움		기 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40	18.6	42	19.5	83	38.6	37	17.2	13	6	215	49.2
행 정	11	12.2	18	20	34	37.8	13	14.4	14	15.6	90	20.6
상 담	5	10.4	5	10.4	20	41.7	16	33.3	2	4.2	48	11
기관운영	5	10.6	1	2.1	29	61.7	8	17	4	8.5	47	10.8
기 타	3	8.1	8	21.6	5	13.5	16	43.2	5	13.5	37	8.5
계	64	14.6	74	16.9	171	39.1	90	20.6	38	8.7	437	100

3) 연수비용의 자비부담시 참여여부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참 여	375	53.4	106	43.3	269	58.9
불 참	165	23.5	48	19.6	117	25.6
기 타	79	11.3	16	6.5	63	13.8
무 응 답	83	11.8	75	30.6	8	1.8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학 교		상담실		복지시설		기 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참여	82	59.4	84	65.6	55	59.8	23	54.8	59	64.8	61	56	364	60.7
불참	41	29.7	31	24.2	27	29.3	11	26.2	19	20.9	31	28.4	160	26.7
기타	15	10.8	13	10.2	10	10.9	8	19	13	14.3	17	15.6	76	12.7
계	138	23	128	21.3	92	15.3	42	7	91	15.2	109	18.2	600	100

4) 소속기관에서 겪는 곤란한 점

	전 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자료의 부족	137	19.5	53	21.6	84	18.4
기관자의 이해부족	94	13.4	36	14.7	58	12.7
재정의 부족	216	30.8	85	34.7	131	28.7
활동준비시간의 부족	57	8.1	24	9.8	33	7.2
지도기법습득미흡	72	10.3	13	5.3	59	12.9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	74	10.5	19	7.8	55	12.0
기 타	19	2.7	9	3.7	10	2.2
무 응 답	33	4.7	6	2.4	27	5.9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프로그램 자료부족		기관장의 이해부족		재정 부족		활동준비 시간부족		지도기법 습득미흡		청소년 이해부족		기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청소년 단체	27	17	14	8.8	86	54.1	11	6.9	6	3.8	13	8.2	2	1.3	159	24.1
수련 시설	31	20.9	20	13.5	48	32.4	15	10.1	14	9.5	14	9.5	6	4.1	148	22.4
학 교	22	21.2	27	26	16	15.4	13	12.5	14	13.5	9	8.7	3	2.9	104	15.7
상담 실	9	18.4	8	16.3	15	30.6	4	8.2	7	14.3	4	8.2	2	4.1	49	7.4
복지 시설	22	23.9	8	8.7	19	20.7	11	12	12	13	18	19.6	2	2.2	92	13.9
기타	23	21.1	16	14.7	28	25.7	3	2.8	19	17.4	16	14.7	4	3.7	109	16.5
계	134	20.3	93	14.1	212	32.1	57	8.6	72	10.9	74	11.2	19	2.9	661	100

다. 청소년지도사 교과과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평가

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시간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교과목 강의	151	21.5	72	29.4	79	17.3
교과실습(토의, 실습, 시청각)	282	40.2	58	23.6	224	49.0
연수생자체모임	175	24.9	61	24.9	14	24.9
특강(교양/발표/현장전문가)	80	11.4	52	21.2	28	6.1
기 타	8	1.1	2	0.8	6	1.3
무 응 답	6	0.9	.	.	6	1.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교과목 강의		교과 실습		연수생 자체 모임		특강		기능 실습		현장 답사		분임 토의		세 미 나		자유 토론		기타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청소년 단체	39	24.4	38	23.8	46	28.8	20	12.5	4	2.5	2	1.3	8	5	1	0.6	2	1.3			160	24
수련 시설	37	25.3	29	19.9	35	24	21	14.4	8	5.5	3	2.1	8	5.5	1	0.7			4	2.7	146	22
학교	21	20.4	36	35	18	17.5	19	18.4	5	4.9			2	1.9			1	1	1	1	103	15
상담 실	5	10.2	15	30.6	17	34.7	4	8.2	6	12.2	1	2							1	2	49	7.2
복지 시설	24	26.1	20	21.7	14	15.2	4	4.3	6	6.5	5	5.4	18	19.6	1	1.1					92	14
기타	21	16.7	39	31	37	29.4	12	9.5	13	10.3	1	0.8	1	0.8					2	1.6	126	19
계	147	21.7	177	26.2	167	24.7	80	11.8	42	6.2	12	1.8	37	5.5	3	0.4	3	0.4	8	1.2	676	

○ 업무별

	교과목 강의		교과 실습		연수생 자체 모임		특 강		기능 실습		현장 답사		분임 토의		세 미 나		자유 토론		기 타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프로 그램 개발 및 지도	48	22.3	44	20.5	52	24.2	29	13.5	13	6	6	2.8	20	9.3	1	0.5	1	0.5	1	0.5	215	49
행정	24	27	31	34.8	15	16.9	5	5.6	3	3.4	3	3.4	4	4.5	1	1.1	2	2.2	1	1.1	89	20
상담	12	23.1	16	30.8	15	28.8			6	11.5	1	1.9	2	3.8							52	12
기관 운영	8	16.7	6	12.5	15	31.3	5	10.4	1	2.1	1	2.1	10	20.8	1	2.1			1	2.1	48	11
기타	9	23.1	14	35.9	11	28.2			3	7.7			1	2.6					1	2.6	39	8.8
계	101	22.8	111	25.1	108	24.4	39	8.8	26	5.9	11	2.5	37	8.4	3	0.7	3	0.7	4	0.9	443	

2)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점

	전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의욕고취	125	17.8	47	19.2	78	17.1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지식습득	146	20.8	60	24.5	86	18.8
활동자료의 습득	22	3.1	5	2.0	17	3.7
많은 지도자와의 인간관계	256	36.5	89	36.3	167	36.5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	143	20.4	39	15.9	104	22.8
기 타	8	1.1	4	1.6	4	0.9
무 응 답	2	0.3	1	0.4	1	0.2
계	702	100	245	34.9	457	65.1

3)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의	48	6.8	30	12.2	18	3.9
토의와 세미나	154	21.9	52	21.2	102	22.3
사례발표	65	9.3	32	13.1	33	7.2
시청각수업	11	1.6	2	0.8	9	2.0
현장실습	39	5.6	27	11.0	12	2.6
개인별과제연구	2	0.3	1	0.4	1	0.2
조별과제연구	63	9.0	8	3.3	55	12.0
워크샵	31	4.4	9	3.7	22	4.8
실기기능실습	33	4.7	8	3.3	25	5.5
기타	5	0.7	2	0.8	3	0.7
무응답	251	35.8	74	30.2	177	38.7
계	702	100	245	34.9	457	65.1

4) 바람직한 교과내용의 구성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론위주	150	21.6	69	28.2	81	18
반반씩	173	24.9	80	32.7	93	20.7
실습위주	372	53.6	96	39.2	276	61.3
무응답	7	1.0	.	.	7	1.5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이론위주		반반씩		실습위주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청소년단체	35	22.2	47	29.7	76	48.1	158	23.4
수련시설	36	24.1	33	22.1	80	53.7	149	22.1
학교	27	25.9	25	24	52	50	104	15.4
상담실	11	22.9	8	16.7	29	60.4	48	7.1
복지시설	30	33	22	24.2	39	42.9	91	13.5
기타	9	7.2	30	24	86	68.8	125	18.5
계	148	21.9	165	24.4	362	53.6	675	100

○ 업무별

	프로그램개발 및 지 도		행 정		상 담		기관운영		기 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론 위주	59	27.5	34	39	15	29.4	15	31.9	8	20.5	131	29.8
반반 씩	63	29.3	25	28.7	13	25.5	10	21.3	8	20.5	119	27.1
실습 위주	93	43.2	2	32.1	23	45.1	22	46.8	23	59.0	189	43.1
계	215	49.0	87	19.8	51	11.6	47	10.7	39	8.9	439	

5) 전반적 도움의 정도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크게 도움	307	43.7	105	42.9	202	44.2
다소 도움	294	41.9	105	42.9	189	41.4
보 통	79	11.3	32	13.1	47	10.3
별로 도움 안됨	20	2.8	2	0.8	18	3.9
전혀 도움 안됨	2	0.3	1	0.4	1	0.2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학교		상담실		복지시설		기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크 게 도움	48	29.8	73	49	55	52.9	21	42.9	45	48.9	56	44.1	298	43.7
다 소 도움	88	54.7	53	35.6	36	34.6	25	51	37	40.2	48	37.8	287	42.1
보 통	22	13.7	18	12.1	9	8.7	2	4.1	9	9.8	16	12.6	76	11.1
별 로 도움안됨	2	1.2	4	2.7	4	3.8	1	2	1	1.1	7	5.5	19	2.8
전 혀 도움안됨	1	0.6	1	0.7									2	0.3
계	161	23.6	149	39.0	104	15.2	49	7.2	92	13.5	127	18.6	682	

○ 업무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행 정		상 담		기관 운영		기 타		계	
	빈 도	백분 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크게 도움	86	39.8	41	45.6	21	40.4	25	52.1	21	52.5	194	43.5
다소 도움	99	45.8	37	41.1	24	46.2	17	35.4	15	37.5	192	43
보 통	27	12.5	11	12.2	6	11.5	4	8.3	1	2.5	49	11
별 로 도움안됨	4	1.9	1	1.1	1	1.9	1	2.1	3	7.5	10	2.2
전 히 도움안됨							1	2.1			1	0.2
계	216	48.4	90	20.2	52	11.7	48	10.8	40	9.0	446	

7) 교과내용의 체계성

	전 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	159	22.6	52	21.2	107	23.4
중	464	66.1	161	65.7	303	66.3
하	71	10.1	30	12.2	41	9.0
무 응 답	8	1.1	2	0.8	6	1.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8) 현장활용 가능성

	전 체		1급		2급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상	113	16.1	31	12.7	82	17.9
중	421	60.0	139	56.7	282	61.7
하	158	22.5	71	29.0	87	19.0
무 응 답	10	1.4	4	1.6	6	1.3
계	702	100	245	34.9	457	65.1

○ 기관별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학 교		상담실		복지시설		기 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	25	15.9	26	17.6	16	16	8	16.3	7	7.6	27	21.4	109	16.2
중	86	54.8	86	58.1	61	61	36	73.5	59	64.1	77	61.1	405	60.3
하	46	29.3	36	24.3	23	23	5	10.2	26	28.3	22	17.5	158	23.5
계	157	23.4	148	22.0	100	14.9	49	7.3	92	13.7	126	18.8	672	

○ 업무별

	프로그램개발및 지도		행정		상담		기관운영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	17	8	9	10.2	5	10	1	2.1	5	13.2
중	109	51.4	54	61.4	32	64	32	66.7	22	57.9
하	86	40.6	25	28.4	13	26	15	31.3	11	28.9
계	212		88		50		48		150	

9) 개선해야 할 사항

	전체		1급		2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의 편성체계	184	26.2	69	28.2	115	25.2
프로그램의 운영	67	9.5	17	6.9	50	10.9
교수요원자질	220	31.3	63	25.7	157	34.4
연수시설	84	12.0	44	18.0	40	8.8
교육기자재 및 자료	42	6.0	13	5.3	29	6.3
연수생의 선발방법	44	6.3	19	7.8	25	5.5
연수생의 자질과 연수태도	30	4.3	9	3.7	21	4.6
기 타	19	2.7	8	3.3	11	2.4
무응답	12	1.7	3	1.2	9	2.0
계	702	100	245	34.9	457	65.1

2) '97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1-3급)

○ 성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 자	57	77.0	106	62.0	110	58.5	273	63.0
여 자	17	23.0	65	38.0	78	41.5	160	37.0
합 계	74	17.1	171	39.5	188	43.4	433	100.0

○ 연령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대	3	4.1	54	32.0	106	56.4	163	37.8
30대	37	50.0	79	46.7	43	22.9	159	36.9
40대	20	27.0	23	13.6	30	16.0	73	16.9
50대	14	18.9	12	36.4	7	3.7	33	7.7
60대이상	0	0.0	1	33.3	2	1.1	3	0.7
합 계	74	17.2	169	39.2	188	43.6	431	100.0

○ 학력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 졸	1	1.4	20	11.8	56	30.3	77	18.0
전문대졸	5	6.8	18	10.7	42	22.7	65	15.2
대 졸	37	50.0	99	58.6	67	36.2	203	47.4
대학원졸	31	41.9	32	18.9	20	10.8	83	19.4
합 계	74	17.3	169	39.5	185	43.2	428	100.0

○ 전공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 문	1	1.4	9	7.2	5	4.0	15	4.7
사 회	14	19.4	26	20.8	24	19.2	64	19.9
상 경	10	13.9	15	12.0	6	4.8	31	9.6
어 문	7	9.7	6	4.8	8	6.4	21	6.5
교 육	16	22.2	23	18.4	32	25.6	71	22.0
예체능	5	6.9	9	7.2	11	8.8	25	7.8
종 교	5	6.9	12	9.6	6	4.8	23	7.1
이 학	8	11.1	11	8.8	11	8.8	30	9.3
공 학	4	5.6	5	4.0	12	9.6	21	6.5
의 학	0	0.0	0	0.0	3	2.4	3	0.9
가 정	2	2.8	9	50.0	7	5.6	18	5.6
합 계	72	22.4	125	38.8	125	38.8	322	100.0

○ 근무지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 울	27	36.5	35	21.0	30	16.0	92	21.5
부 산	3	4.1	11	6.6	11	5.9	25	5.8
인 천	0	0.0	6	3.6	5	2.7	11	2.6
대 구	0	0.0	9	5.4	9	4.8	21	4.9
대 전	0	0.0	7	4.2	10	5.3	17	4.0
광 주	2	2.7	10	6.0	11	5.9	23	5.4
경 기	13	17.6	28	15.8	34	18.2	75	17.5
강 원	6	8.0	11	6.6	10	5.3	27	6.3
충 북	7	9.5	9	5.4	14	7.5	30	7.0
충 남	2	2.7	1	0.6	4	2.1	7	1.6
경 북	2	2.7	10	6.0	9	4.8	21	4.9
경 남	2	2.7	10	6.0	22	11.8	34	7.9
전 북	5	6.8	11	6.6	10	5.3	26	6.1
전 남	1	1.4	6	3.6	2	1.1	9	2.1
제 주	1	1.4	3	1.8	6	3.2	10	2.3
합 계	74	17.3	167	39.0	187	43.7	428	100.0

○ 소속기관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생활권	7	9.5	25	14.9	42	22.6	74	17.3
자연권	21	28.4	44	26.2	38	20.4	103	24.1
유스호스텔	9	12.2	13	7.7	14	7.5	36	8.4
청소년단체	29	39.2	52	31.0	37	19.9	118	27.6
공공기관, 학교 및 기타	8	10.8	34	20.2	55	29.6	97	22.7
합 계	74	17.3	168	39.3	186	43.5	428	100.0

○ 수련시설운영형태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공립	4	13.8	9	18.8	15	18.5	28	17.7
민 간	16	55.2	25	52.1	48	59.3	89	56.3
위 탁	9	31.0	14	29.2	18	22.2	41	25.9
합 계	29	18.4	48	30.4	81	51.3	158	100.0

○ 담당업무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활동지도	16	21.6	61	36.7	94	50.3	171	40.0
운영책임	36	48.6	36	21.7	18	9.6	90	21.1
일반행정	12	16.2	34	20.5	39	20.9	85	19.9
상 담	7	9.5	11	6.6	19	10.2	37	8.7
기 타	3	4.1	24	14.5	17	9.1	44	10.3
합 계	74	17.3	166	38.9	187	43.8	427	100.0

○ 경력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미만	0	0.0	11	6.4	20	10.6	31	7.2
1년-3년	2	2.7	56	32.7	80	42.6	138	31.9
4년-6년	13	17.6	52	30.4	44	23.4	109	25.2
7년-9년	22	29.7	26	15.2	18	9.6	66	15.2
10년이상	37	50.0	26	15.2	26	13.8	89	20.6
합 계	74	17.1	171	39.5	188	43.4	433	100.0

○ 연수참여 어려운 점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적 비용	6	8.5	32	20.0	5	2.8	43	10.6
직장상사 및 동료의 이해부족	5	7.0	16	10.0	27	15.3	48	11.8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	42	59.2	70	43.8	81	46.0	193	47.4
연수에 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8	11.3	23	14.4	46	26.1	77	18.9
기 타	10	14.1	19	11.9	17	9.7	46	11.3
합 계	71	17.4	160	39.3	176	43.2	407	100.0

○ 교과과정 만족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	0.0	10	5.8	1	0.5	11	2.5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11	14.9	62	36.3	22	11.7	95	21.9
보통이다	31	41.9	67	39.2	90	47.9	188	43.4
대체로 만족스럽다	29	39.2	30	17.5	67	35.6	126	29.1
아주 만족스럽다	3	4.1	2	1.2	8	4.3	13	3.0
합 계	74	17.1	171	39.5	188	43.4	433	100.0

- 교재평가 -

○ 청소년문화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1	1.4			0	0.0	1	0.4
별로 좋지 않았다	17	23.3			11	6.0	28	10.9
보통이다	25	34.2			72	39.1	97	37.7
대체로 좋았다	28	38.4			90	48.9	118	45.9
아주 좋았다	2	2.7			11	6.0	13	5.1
합 계	73	28.4			184	71.6	257	100.0

○ 청소년문제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0	0.0			5	2.7	5	1.9
별로 좋지 않았다	17	23.3			8	4.3	25	9.7
보통이다	27	37.0			62	33.7	89	34.6
대체로 좋았다	25	34.2			87	47.3	112	43.6
아주 좋았다	4	5.5			22	12.0	26	10.1
합 계	73	28.4			184	71.6	257	100.0

○ 청소년복지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0	0.0					0	0.0
별로 좋지 않았다	11	15.3					11	15.3
보통이다	27	37.5					27	37.5
대체로 좋았다	32	44.4					32	44.4
아주 좋았다	2	2.8					2	2.8
합 계	72	100.0					72	100.0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3	4.1					3	4.1
별로 좋지 않았다	11	15.1					11	15.1
보통이다	35	47.9					35	47.6
대체로 좋았다	21	28.8					21	28.5
아주 좋았다	3	4.1					3	4.1
합 계	73	100.0					73	100.0

○ 집단지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3	4.1					3	4.1
별로 좋지 않았다	12	16.4					12	16.4
보통이다	25	34.2					25	34.2
대체로 좋았다	32	43.8					32	43.8
아주 좋았다	1	1.4					1	1.4
합 계	73	100.0					73	100.0

○ 청소년심리론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2	1.2	2	1.1	4	1.1
별로 좋지 않았다			29	17.0	17	9.2	46	12.9
보통이다			86	50.3	63	34.1	149	41.9
대체로 좋았다			46	26.9	82	44.3	128	36.0
아주 좋았다			8	4.7	21	11.4	29	8.1
합 계			171	48.0	185	52.0	356	100.0

○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9	5.3	6	3.2	15	4.2
별로 좋지 않았다			39	22.8	29	15.7	68	19.1
보통이다			78	45.6	88	47.6	166	46.6
대체로 좋았다			38	22.2	49	26.5	87	24.4
아주 좋았다			7	4.1	13	7.0	20	5.6
합 계			171	48.0	185	52.0	356	100.0

○ 청소년활동론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3	1.8	4	2.2	7	2.0
별로 좋지 않았다			29	17.0	24	13.1	53	15.0
보통이다			89	52.0	66	36.1	155	43.8
대체로 좋았다			43	25.1	76	41.5	119	33.6
아주 좋았다			7	4.1	13	7.1	20	5.6
합 계			171	48.3	183	51.7	354	100.0

○ 청소년지도론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2	1.2	1	0.5	3	0.8
별로 좋지 않았다			30	17.5	16	8.7	46	13.0
보통이다			96	56.1	70	38.3	166	46.9
대체로 좋았다			38	22.2	81	44.3	119	33.6
아주 좋았다			5	2.9	15	8.2	20	5.6
합 계			171	48.3	183	51.7	354	100.0

○ 전통문화활동지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2	3.6			2	3.6
별로 좋지 않았다			8	14.3			8	14.3
보통이다			19	33.9			19	33.9
대체로 좋았다			14	25.0			14	25.0
아주 좋았다			13	23.2			13	23.2
합 계			56	100.0			56	100.0

○ 청소년상담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좋지 않았다					4	2.2	4	2.2
별로 좋지 않았다					19	10.3	19	10.3
보통이다					63	34.2	63	34.2
대체로 좋았다					71	38.6	71	38.6
아주 좋았다					27	14.7	27	14.7
합 계					184	100.0	184	100.0

○ 연수과정 중 아쉬운 점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문적인 기능습득 기회의 부족	8	10.8	47	27.5	49	26.5	104	24.2
이론중심의 교과편성	26	35.1	36	21.1	46	24.9	108	25.1
강의내용이 중복이 많다	19	25.7	23	13.5	17	9.2	59	13.7
현대청소년들의 문화적특성 이해를 위한 기회제공미흡	9	12.2	25	14.6	24	13.0	58	13.5
연수생 자체토론 및 세미나 등의 기회부족	6	8.1	22	12.9	48	25.9	76	17.7
기 타	6	8.1	18	10.5	1	0.5	25	5.8
합 계	74	17.2	171	39.8	185	43.0	430	100.0

○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수련장등 야외에서 단기간동안 행하는 청소년들의 집단활동	8	10.8	23	13.5	30	16.0	61	14.1
학교교육이나 직장근무시간 외 청소년들이 하는 모든활동	3	4.1	15	8.8	17	9.0	35	8.1
청소년단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16	21.6	31	18.1	27	14.4	74	17.1
청소년들이여가선용, 자질함양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활동	46	62.2	91	53.2	112	59.6	249	57.5
청소년들이 남는 시간에 휴식을 곁해 하는 활동	1	1.4	0	0.0	1	0.5	2	0.5
기 타	0	0.0	11	6.4	1	0.5	12	2.8
합 계	74	17.1	171	39.5	188	43.4	433	100.0

○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에 가장 필요한 것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정책 및 관계법규	9	12.2	7	6.0	18	9.6	34	9.0
청소년이해를 위한 일반적 지식 (심리,문화,의식,문제 등)	22	29.7	31	26.5	48	25.5	101	26.6
청소년활동지도를 위한 기본 (레크리에이션, 집단지도,상담,생활지도등)	26	35.1	53	45.3	100	53.2	179	47.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기능	14	18.9	24	20.5	20	10.6	58	15.3
기 타	3	4.1	2	1.7	2	1.1	7	1.8
합 계	74	19.5	117	30.9	188	49.6	379	100.0

○ 소속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도시 전문기능 필요정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전혀 느끼지 않는다	0	0.0	0	0.0	1	0.5	1	0.2
별로 느끼지 않는다	2	2.7	4	2.5	6	3.2	12	2.8
모르겠다	0	0.0	1	0.6	0	0.0	1	0.2
약간 느끼는 편이다	16	21.6	36	22.1	44	23.7	96	22.7
많이 느낀다	56	75.7	122	74.8	135	72.6	313	74.0
합 계	74	17.5	163	38.5	186	44.0	423	100.0

○ 청소년 자격취득이 종사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1	1.4	1	0.6	2	1.1	4	0.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4	5.4	7	4.1	4	2.1	15	3.5
잘 모르겠다	2	2.7	16	9.5	13	6.9	31	7.2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이다	36	48.6	88	52.1	99	52.7	223	51.7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1	41.9	57	33.7	70	37.2	158	36.7
합 계	74	17.2	169	39.2	188	43.6	431	100.0

○ 지도사 자격 필요성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전혀 필요없다	1	1.4	4	2.4	6	3.2	11	2.6
별로 필요없다	3	4.1	40	23.7	30	16.0	73	16.9
잘 모르겠다	8	10.8	25	14.8	33	17.6	66	15.3
대체로 필요하다	45	60.8	84	49.7	102	54.3	231	53.6
아주 필요하다	17	23.0	16	9.5	17	9.0	50	11.6
합 계	74	17.2	169	39.2	188	43.6	431	100.0

○ 직업 만족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	0.0	0	0.0	1	0.5	1	0.2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5	6.8	14	8.3	6	3.2	25	5.8
보통 이다	7	9.5	30	17.8	36	19.1	73	16.9
대체로 만족스럽다	39	52.7	86	50.9	104	55.3	229	53.1
아주 만족스럽다	23	31.1	39	23.1	41	21.8	103	23.9
합 계	74	17.2	169	39.2	188	43.6	431	100.0

○ 직업불만족 이유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낮은 급여	2	40.0	7	38.9	1	11.1	10	31.3
근무환경열악	3	60.0	4	22.2	5	55.6	12	37.5
과중한 업무	0	0.0	1	5.6	1	11.1	2	6.3
경영자 이해부족	0	0.0	2	11.1	1	11.1	3	9.4
기 타	0	0.0	4	22.2	1	11.1	5	15.6
합 계	5	15.6	18	56.3	9	28.1	32	100.0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교육내용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정책 및 관제법규	20	27.4	21	14.4	11	6.9	52	13.7
청소년이해를 위한 일반적지식 (심리,문화,의식,문제등)	17	23.3	22	15.1	30	18.8	69	18.2
활동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전문기능 습득	19	26.0	49	33.6	69	43.1	137	36.1
레크리에이션,집단지도체,상담 및 생활지도 등 지도기법 습득	13	17.8	39	26.7	49	30.6	101	26.6
기 타	4	5.5	15	10.3	1	0.6	20	5.3
합 계	73	19.3	146	38.5	160	42.2	379	100.0

○ 적당한 보수교육기간

	1급		2급		3급		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1일	5	7.2	2	1.8	2	1.3	9	2.7
2일 - 3일	39	56.5	39	35.8	35	22.2	113	33.6
4일 - 5일	17	24.6	36	33.0	58	36.7	111	33.0
6일 - 7일	3	4.3	12	11.0	49	31.0	64	19.0
8일 이상	5	7.2	20	18.3	14	8.9	39	11.6
합 계	69	20.5	109	32.5	158	47.0	336	100.0

○ 소속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가장 필요한 것

		정책 및 관계법규		청소년 이해를위한 일반적지식		청소년활동 지도의 기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전문기능		기 타		계		χ^2	자유 도	유의 도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29	12.4	57	24.4	102	43.6	41	17.5	5	2.1	234	61.7	13.14812	4	.01057
	여	5	3.4	44	30.3	77	53.1	17	11.7	2	1.4	145	38.3			
	계	34	9.0	101	26.6	179	47.2	58	15.3	7	1.8	379	100			
전공	인문	2	15.4	6	46.2	5	38.5					13	4.6	58.06554	40	.03221
	사회	6	11.5	14	26.9	24	46.2	8	15.4			52	18.4			
	상경	1	3.7	6	22.2	13	48.1	6	22.2	1	3.7	27	9.5			
	어문	2	11.1	5	27.8	6	33.3	5	27.8			18	6.4			
	교육	1	1.5	13	19.7	46	69.7	5	7.6	1	1.5	66	23.3			
	예체능	5	23.8	6	28.6	7	33.3	2	9.5	1	4.8	21	7.4			
	종교	4	21.1	6	31.6	7	36.8	2	10.5			19	6.7			
	이학	2	7.1	10	35.7	11	39.3	5	17.9			28	9.9			
	공학	1	5.3	2	10.5	8	42.1	7	36.8	1	5.3	19	6.7			
	의학					3	100.0					3	1.1			
	가정	1	5.9	3	17.6	12	70.6	1	5.9			17	6.0			
	계	25	8.8	71	25.1	142	50.2	41	14.5	4	1.4	283	100			
급	1급	9	12.2	22	29.7	26	35.1	14	18.9	3	4.1	74	19.5	14.20091	8	.07668
	2급	7	6.0	31	26.5	53	45.3	24	20.5	2	1.7	117	30.9			
	3급	18	9.6	48	25.5	100	53.2	20	10.6	2	1.1	188	49.6			
	계	34	9.0	101	26.6	179	47.2	58	15.3	7	1.8	379	100			
소속기관	생활권	4	5.7	19	27.1	33	47.1	13	18.6	1	1.4	70	18.6	22.38856	16	.13108
	자연권	11	13.1	23	27.4	33	39.3	16	19.0	1	1.2	84	22.3			
	유스호스텔	1	3.3	8	26.7	10	33.3	9	30.0	2	6.7	30	8.0			
	청소년단체	9	8.8	29	28.4	49	48.0	14	13.7	1	1.0	102	27.1			
	공공 기관, 학교 및 기타	9	10.0	22	24.4	51	56.7	6	6.7	2	2.2	90	23.9			
	계	34	9.0	101	26.9	176	46.8	53	15.4	7	1.9	376	100			
담당업무	활동지도	8	5.4	46	30.9	67	45.0	24	16.1	4	2.7	149	39.8	18.22883	16	.31067
	운영책임	10	13.0	14	18.2	34	44.2	18	23.4	1	1.3	77	20.6			
	일반행정	10	13.2	21	27.6	35	46.1	9	11.8	1	1.3	76	20.3			
	상 담	2	5.6	11	30.6	21	58.3	2	5.6			36	9.6			
	기 타	4	11.1	8	22.2	18	50.0	5	13.9	1	2.8	36	9.6			
	계	34	9.1	100	26.7	175	46.8	53	15.5	7	1.9	374	100			

○ 연수과정에 포함시켜야할 영역

- 기관별

	문화 예술		체력 단련		자연 체험		전통 민속		자기 개발		봉사		계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생 활 권	11	11.1	14	14.1	11	11.1	13	13.1	32	32.3	18	18.2	99	18.5
자 연 권	13	10.2	10	7.8	17	13.3	29	22.7	36	28.1	23	18.0	128	23.9
유스호스텔	4	10.3	7	17.9	6	15.4	5	12.8	10	25.6	7	17.9	39	7.3
청소년단체	11	8.5	13	10.0	18	13.8	17	13.1	44	33.8	27	20.8	130	24.3
공공기관, 학교 및 기타	13	9.3	14	10.0	18	12.9	32	22.9	36	25.7	27	19.3	140	26.1
계	52	9.7	58	10.8	70	13.1	96	17.9	158	29.5	102	19.0	536	100.0

- 전공별

	문화 예술		체력 단련		자연 체험		전통 민속		자기 개발		봉사		계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인 문	2	11.1	1	5.6	1	5.6	4	22.2	8	44.4	2	11.1	18	4.6
사 회	4	5.7	11	15.7	11	15.7	10	14.3	20	28.6	14	20.0	70	18.0
상 경	3	9.4	5	15.6	6	18.8	5	15.6	6	18.8	7	21.9	32	8.2
어 문	2	9.5	0	0.0	4	19.0	2	9.5	9	42.9	4	19.0	21	5.4
교 육	7	7.3	12	12.5	10	10.4	20	20.8	27	28.1	20	20.8	96	24.7
예체능	2	6.9	4	13.8	3	10.3	5	17.2	7	24.1	8	27.6	29	7.5
종 교	3	11.5	1	3.8	5	19.2	4	15.4	10	38.5	3	11.5	26	6.7
이 학	7	15.9	4	9.1	8	18.2	5	11.4	10	22.7	10	22.7	44	11.3
공 학	3	11.5	0	0.0	1	3.8	7	26.9	10	38.5	5	19.2	26	6.7
의 학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3	0.8
가 정	0	0.0	0	0.0	4	17.4	5	21.7	11	47.8	3	13.0	23	5.9
계	33	8.5	40	10.3	53	13.7	67	17.3	119	30.7	76	19.6	388	100.0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성별

	빈 도	백분율(%)
남	67	80.7
여	16	19.3
합계	83	100.0

○ 연령

	빈 도	백분율(%)
20대	14	16.9
30대	39	47.0
40대이상	29	34.9
무응답	1	1.2
합 계	83	100.0

○ 학력

	빈 도	백분율(%)
고 졸	35	42.2
전문대졸	13	15.7
대 졸	33	39.8
대학원졸	2	2.4
합 계	83	100.0

○ 근무지

	빈 도	백분율(%)
부 산	11	13.3
인 천	2	2.4
대 구	1	1.2
대 전	4	4.8
광 주	3	3.6
울 산	2	2.4
경 기	1	1.2
강 원	10	12.0
충 북	8	9.6
충 남	7	8.4
경 북	9	10.8
경 남	10	12.0
전 북	2	2.4
전 남	7	8.4
제 주	3	3.6
무 응 답	3	3.6
합 계	83	100.0

○ 근무 시설유형

	빈 도	백분율(%)
청소년수련원	7	8.4
청소년수련관	7	8.4
청소년수련실	8	9.6
청소년수련마을	5	6.0
청소년수련의 집	4	4.8
청소년야영장	3	3.6
유스호스텔	3	3.6
청소년관련행정기관	43	51.8
기 타	3	3.6
합 계	83	100.0

○ 담당업무

	빈 도	백분율(%)
프로그램기획	4	4.8
프로그램진행	2	2.4
운영책임	4	4.8
일반행정	68	81.9
상 답	1	1.2
기 타	1	1.2
무 응 답	3	3.6
합 계	83	100.0

○ 직렬

	빈 도	백분율(%)
일반직	67	80.7
별정직	7	8.4
기 타	5	6.0
무응답	4	4.8
합 계	83	100.0

○ 근무기간

	빈 도	백분율(%)
1년미만	40	48.2
1년이상 2년미만	23	27.7
2년이상	19	22.9
무응답	1	1.2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에서 한 번에 수용가능한 최대인원

	빈 도	백분율(%)
100명이하	10	12.0
100명-500명이하	25	30.1
500명-1000명이하	4	4.8
1000명초과	2	2.4
무응답	42	50.6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 수

	빈 도	백분율(%)
없다	6	7.2
1명	16	19.3
2명	9	10.8
4명	3	3.6
5명	3	3.6
6명	1	1.2
무응답	45	54.2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지도자 수

	빈 도	백분율(%)
1명	5	6.0
2명	11	13.3
3명	13	15.7
4명	5	6.0
5명	4	4.8
6명	1	1.2
8명	2	2.4
무응답	42	50.6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1급

	빈 도	백분율(%)
1명	2	2.4
3명	1	1.2
무응답	80	96.4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2급

	빈 도	백분율(%)
1명	13	15.7
2명	3	3.6
무응답	67	80.7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3급

	빈 도	백분율(%)
1명	5	6.0
2명	2	2.4
3명	1	1.2
무응답	75	90.4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급별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전체 인원)

	빈 도	백분율(%)
1명	4	4.8
2명	1	1.2
4명	1	1.2
8명	1	1.2
11명	1	1.2
무응답	75	90.4
합 계	83	100.0

○ 귀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수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빈 도	백분율(%)
배치기준과 같다	11	13.3
배치기준보다 적다	16	19.3
배치대상시설이 아니다	7	8.4
무응답	49	59.0
합 계	83	100.0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수가 현실과 비교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빈 도	백분율(%)
너무 많다	1	1.2
약간 많은 편이다	2	2.4
적당하다	6	7.2
약간 부족한 편이다	18	21.8
너무 부족하다	11	13.3
무응답	45	54.2
합 계	83	100.0

○ 전국적으로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빈 도	백분율(%)
너무 많다	2	2.4
약간 많은 편이다	3	3.6
적당하다	14	16.9
약간 부족한 편이다	22	26.5
너무 부족하다	13	15.7
무응답	29	34.9
합 계	83	100.0

○ 전국적으로 자연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빈 도	백분율(%)
너무 많다	3	3.6
약간 많은 편이다	2	2.4
적당하다	15	18.1
약간 부족한 편이다	23	27.7
너무 부족하다	11	13.3
무응답	29	34.9
합 계	83	100.0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여부

	빈 도	백분율(%)
2급 취득	3	3.6
아니오	68	81.9
무응답	12	14.5
합 계	83	100.0

○ (20에서 '아니오'인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희망 여부

	빈 도	백분율(%)
예	40	48.2
아니오	22	26.5
무응답	21	25.3
합 계	83	100.0

○ (21에서 '예'인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

	빈도	백분율(%)
연수선발 혹은 자격검정에 불합격해서	3	3.6
업무가 과중해서	11	13.3
연수기간 중대체인력이 없어서	9	10.8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알지 못해서	11	13.3
기타	5	6.0
무응답	44	53.0
합계	83	100.0

○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보수교육내용

	빈도	백분율(%)
정책 및 관계법규	5	6.0
청소년이해를 위한 일반적지식	4	4.8
활동프로그램 실습을 통한 전문기능 습득	7	8.4
레크리에이션, 집단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지도기법 습득	3	3.6
무응답	64	77.1
합계	83	100.0

○ 적당하다고 보는 보수교육기간

	빈도	백분율(%)
3일	2	2.4
4일	3	3.6
5일	3	3.6
6일	4	4.8
7일	2	2.4
10일	1	1.2
30일	1	1.2
무응답	67	80.7
합계	83	100.0

- 현재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련거리 중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에서 개발·보급한 수련거리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빈 도	백분율(%)
많이 이용한다	4	4.8
가끔 이용한다	10	12.0
보통이다	13	15.7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19	22.9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0	12.0
무응답	27	32.5
합 계	83	100.0

- (25에서 '이용하는' 경우) 만족 정도 - 수련거리의 내용

	빈 도	백분율(%)
아주 만족한다	3	3.6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8	9.6
보통이다	24	28.9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	3.6
무응답	45	54.2
합 계	83	100.0

- (25에서 '이용하는' 경우) 만족 정도 - 수련거리의 구성 형태

	빈 도	백분율(%)
아주 만족한다	2	2.4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10	12.0
보통이다	25	30.1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	3.6
무응답	43	51.8
합 계	83	100.0

- (25에서 '이용하는' 경우) 만족 정도 - 수련거리의 현장 적용성

	빈 도	백분율(%)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8	9.6
보통이다	26	31.3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6	7.2
무응답	43	51.8
합계	83	100.0

- (25에서 '이용하는' 경우) 만족 정도 - 청소년들의 수련거리에 대한 만족도

	빈 도	백분율 (%)
아주 만족한다	1	1.2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11	13.3
보통이다	24	28.9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	3.6
무응답	44	53.0
합 계	83	100.0

- 가장 필요로 하는 수련거리 영역

	빈 도	백분율 (%)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 영역	11	13.3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는 영역	9	10.8
봉사정신을 고양하는 영역	8	9.6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갖게 하는 영역	13	15.7
전문적 직업능력을 키우게 하는 영역	4	4.8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역	4	4.8
무응답	34	41.0
합 계	83	100.0

- 가장 보유하고 싶은 수련거리 영역

	빈 도	백분율 (%)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 영역	5	6.0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는 영역	13	15.7
봉사정신을 고양하는 영역	7	8.4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갖게 하는 영역	6	7.2
전문적 직업능력을 키우게 하는 영역	8	9.6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역	10	12.0
무응답	34	41.0
합 계	83	100.0

-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수련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 도	백분율(%)
예	48	57.8
아니오	2	2.4
무응답	33	39.8
합계	83	100.0

- (32에서 '예'인 경우) 향후 개발, 보급되는 수련거리의 타당하다고 보는 형태

	빈 도	백분율(%)
현재와 같은 책자 형태	1	1.2
매뉴얼식의 요약형태	7	8.4
백과식의 자료집형태	6	7.2
책자와 비디오의 혼합형태	34	41.0
무응답	35	42.2
합 계	83	100.0

- 기본형 수련거리를 향후 계속적으로 개발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련거리의 개발방법

	빈 도	백분율(%)
현행처럼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문화체육부등에서 개발,보급	12	14.5
각 시설,단체 등에서의 수련거리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	16	19.3
기존개발된 수련거리를 종체적수집,분류해 백과형태로 정리,보급	13	15.7
수련거리공모제 실시,심사후 채택된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지원,보급	11	13.3
무응답	31	37.3
합 계	83	100.0

○ 수련거리 개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빈 도	백분율(%)
수련활동 대상	27	32.5
장 소	11	13.3
수련활동단위(인원)	7	8.4
비 용	7	8.4
모르겠다	1	1.2
기 타	2	2.4
무응답	28	33.7
합 계	83	100.0

○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련련거리, 지도자, 시설 등을 전문화,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빈 도	백분율(%)
있 다	42	50.6
없 다	1	1.2
모르겠다	11	13.3
무 응 답	29	34.9
합 계	83	100.0

○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시책 차원에서 귀 수련시설을 시범운영시설로 지정하여 수련거리를 특성화한다면 특성화시키고 싶은 영역

	빈 도	백분율(%)
문화예술	7	8.4
체력단련	10	12.0
자연체험	4	4.8
전통민속	8	9.6
자기개발	13	15.7
봉 사	6	7.2
무 응 답	35	42.2
합 계	83	100.0

○ 프로그램 중심의 수련활동을 도입,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빈 도	백분율(%)
필요하다	54	65.1
필요하지 않다	2	2.4
모르겠다	1	1.2
무응답	26	31.3
합 계	83	100.0

- 현행의 수련활동 실정에 포상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빈 도	백분율(%)
기존 시설 및 단체와의 마찰	4	4.8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서 오는 제도인식의 어려움	9	10.8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13	15.7
프로그램중심의 수련활동담당 주체기관 확보문제	25	30.1
기존시설, 단체수련활동에 비해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	4	4.8
모르겠다	3	3.6
무응답	25	30.1
합 계	83	100.0

- 현재 보직(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

	빈 도	백분율(%)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3	3.6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20	24.1
보통이다	31	37.3
대체로만족스러운 편이다	11	13.3
아주 만족스럽다	2	2.4
무응답	16	19.3
합 계	83	100.0

- 40에서 불만족이유

	빈 도	백분율(%)
근무환경열악	5	6.0
과중한 업무	8	9.6
승진의 어려움	8	9.6
기 타	2	2.4
무응답	60	72.3
합 계	93	100.0

○ 가장 필요로 하는 수련거리 영역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행정기관			계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열 (%)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 영역	4	40.0	25.0	1	10.0	10.0				5	50.0	25.0	10	21.3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는 영역	3	33.3	18.8	1	11.1	10.0	1	11.1	100.0	4	44.4	20.0	9	19.1
봉사정신을 고양하는 영역	2	28.6	12.5	3	42.9	30.0				2	28.6	10.0	7	14.9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갖게 하는 영역	5	38.5	31.3	5	38.5	50.0				3	23.1	15.0	13	27.7
전문적 직업능력을 키우게 하는 영역	1	25.0	6.3							3	75.0	15.0	4	8.5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역	1	25.0	6.3							3	75.0	15.0	4	8.5
합 계	16	34.0		10	21.3		1	2.1		20	42.6	42.6	47	100.0

○ 가장 보유하고 싶은 수련거리 영역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행정기관			계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행 (%)	열 (%)	빈 도	열 (%)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 영역		40.0	12.5	1	20.0	10.0				2	40.0	10.0	5	10.6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하는 영역		25.0	18.8	3	25.0	30.0				6	50.0	30.0	12	25.5
봉사정신을 고양하는 영역				3	42.9	30.0				4	57.1	20.0	7	14.9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갖게 하는 영역		66.7	25.0							2	33.3	10.0	6	12.8
전문적 직업능력을 키우게 하는 영역		50.0	25.0	1	12.5	10.0	1	12.5	100.0	2	25.0	10.0	8	17.0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역		33.3	18.8	2	22.2	20.0				4	44.4	20.0	9	19.1
합 계		34.0		10	21.3		1	2.1		20	42.6		47	100.0

-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시책 차원에서 귀 수련시설을 시범운영시설로 지정하여 수련거리를 특성화한다면 특성화시키고 싶은 영역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행정기관			계	
	빈도	행 (%)	열 (%)	빈도	행 (%)	열 (%)	빈도	행 (%)	열 (%)	빈도	행 (%)	열 (%)	빈도	열 (%)
문화예술	3	42.9	18.8				1	14.3	50.0	3	42.9	16.7	7	15.2
체력단련	4	40.0	25.0	4	40.0	40.0				2	20.0	11.1	10	21.7
자연체험				1	25.0	10.0				3	75.0	16.7	4	8.7
전통민속	4	57.1	25.0	2	28.6	20.0				1	14.3	5.6	7	15.2
자기계발	3	25.0	18.8	1	8.3	10.0				8	66.7	44.4	12	26.1
봉사	2	33.3	12.5	2	33.3	20.0	1	16.7	50.0	1	16.7	5.6	6	13.0
합계	16	34.8		10	21.7		2	4.3		18	39.1		46	100.0

II. 청소년지도자 배치 현황

1. 수련시설별 청소년 지도자 배치 현황
2. 청소년수련시설 상근인력 현황
3. 시설별·직종별 운영 인력
4.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

1. 수련시설별 청소년지도자 배치 현황

구 분		총괄현황					공공시설					민간시설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도자확보율 (%)	미배치인원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도자확보율 (%)	미배치인원	시설수	배치대상시설	배치기준합계	실배치인원	지도자확보율 (%)	미배치인원
총 계		470	357	564	452	80	112	342	230	322	168	52	154	128	127	242	284	117	0
생활권	소 계	194	174	246	140	57	106	180	161	229	123	54	106	14	13	17	17	100	0
	수련원	8	8	34	20	59	14	8	8	34	20	59	14	0	0	0	0	0	0
	수련관	31	23	67	65	97	2	28	21	64	59	92	5	3	2	3	6	200	0
	수련실	155	143	145	55	38	90	144	132	131	44	34	87	11	11	14	11	79	3
자연권	소 계	241	148	266	259	97	7	156	63	87	42	48	45	85	85	179	217	121	0
	수련마을	22	22	63	82	130	0	9	9	18	15	83	3	13	13	45	67	149	0
	수련의집	97	92	155	170	110	0	33	28	30	24	80	6	64	64	125	146	117	0
	야영장	122	34	48	7	15	41	114	26	39	3	8	36	8	8	9	4	44	5
유스호스텔		35	35	52	53	102	0	6	6	6	3	50	3	29	29	46	50	109	0

2. 청소년수련시설 상근인력 현황

구분	합계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소계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소계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총괄	4,531	1,254	202	555	497	2,286	456	1,169	661	991
공립시설	2,189	1,122	202	519	401	977	126	210	641	90
민간시설	2,342	132	0	36	96	1,309	330	959	20	901

3. 시설종류별 · 직종별 운영인력

종류	합 계							국 · 공 · 립 시 설							민 간 시 설						
	계	지 도 직		관 리 행 정		시 설 관 리		계	지 도 직		관 리 행 정		시 설 관 리		계	지 도 직		관 리 행 정		시 설 관 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4,531	1,132	25	1,796	40	1,603	35	2,189	468	21	837	38	884	40	2,342	664	28	959	41	719	31
수련원	202	35	17	77	38	90	45	202	35	17	77	38	90	45	0	0	0	0	0	0	0
수련관	555	118	21	234	42	203	37	519	112	22	2,520	42	187	36	36	6	17	14	39	16	44
수련실	497	175	35	159	32	163	33	401	119	30	131	33	151	38	96	56	58	28	29	12	13
수련마을	456	111	24	158	35	187	41	126	9	7	42	33	75	60	330	102	31	116	35	112	34
수련의집	1,169	405	35	345	30	419	36	210	49	23	74	35	87	41	959	356	37	271	28	332	35
야영장	661	146	22	255	39	260	39	641	139	22	247	39	255	40	20	7	35	8	40	5	25
유스호스텔	991	142	14	568	57	281	28	90	5	6	46	51	39	43	901	137	15	522	58	242	27

4.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

단 체 명	청 소 년 회 원 수	청 소 년 지 도 사 수			
		배치기준 수	배치현황 수	배치율	미배치인원수
총 계	2,020,751	347	168	48%	179
대한가족계획협회	14,470		50		-50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7,5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00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85,877	100	28	28%	7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659,936	169	26	15%	143
한국복지재단	104,240				
한국우주정보소년단	92,838				
한국유스호스텔연맹	44,630				
한국청소년연맹	830,932	19	28	147%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63,328	59	36	61%	23

Ⅲ. 외국의 청소년 지도자 양성제도

1.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 승인제도 사례(영국, NYA)
2. 외국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과 자격요건
3. 청소년 활동 (Youth Work)

1.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 승인제도 사례(영국, NYA)

1) 원 칙

정 의

청소년·지역 활동은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들, 사회와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질은 기회 균등과 선택의 교육적인 중요성, 자유, 책임 그리고 정의의 분명을 이해하고 그런 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동년배들 및 타인들과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교제하고 개인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흥미를 고취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 세계관을 개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역 활동자의 임무는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이들을 활용할 적절한 경험을 계획하고 제공하며, 상담, 고취, 그룹 활동 같은 대인 기술의 사용과 보건, 복지, 정치와 같은 적절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근본 원칙

이 정의는 청소년·지역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질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자질은 다음과 같다.

- ◆ 청소년·지역 활동에서 핵심 과정으로서의 사회 교육
- ◆ 문제 해결 능력 및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능력과 그들을 통제하는 것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과 및 그 둘 사이의 구분
- ◆ 사람들의 가치, 능력, 자격
- ◆ 결정 권한
- ◆ 단체 행동 및 단체 활동 관계의 중요성
- ◆ 협력과 충돌의 평가

이러한 자질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띤다.

- ◆ 개인에 대한 존중
- ◆ 사회의 다양한 민족 문화에 대한 존경과 가치 존중
- ◆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것
- ◆ 활동자의 영향과 자질의 인식
- ◆ 자신과 타인을 변화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

따라서

- ◆ 청소년·지역 활동자들은 불평등, 권력과 비권력 등의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 ◆ 개인은 자신들의 자질과 수행력이 어느 정도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사회 그룹(가족, 동년배, 인종, 계급 및 성(性) 등)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그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자신들과 타인들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 청소년·지역 활동의 효과 및 가치는 다양한 사회 배경과 인력 기술에 있다.

교육 과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다음 사항들을 승인해야 한다

- ◆ 청소년·지역 활동에서는 활동자들을 위한 창조적인 교육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활동자들은 관찰, 경청,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 교육의 기저가 되는 모든 훈련은 이전에 교육받은 것과 경험한 것을 유효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넓혀 주어 참가자 자신들이 미래에 학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 ◆ 모든 청소년·지역 활동 자격 취득 코스나 제도는 참가자들이 이수 과정, 조직 구성 및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제도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청소년·지역 활동에 필요한 자질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 성과

등급

등급이란 것이 훈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까다로운 문제인 만큼, JNC의 기본 평가 기준이 하나의 지침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세 등급으로 구별하고 있다:

- ◆ 1단계: 다른 동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자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위한 입문단계. 2단계는 청소년·지역 활동에 있어서 주요 실행자 등급이기 때문에 활동자들은 업무와 책임이 1등급인 이들에 국한되는 1단계 근무지로 발령받아야 한다
- ◆ 2단계: 청소년·지역 활동의 주요 단계
- ◆ 3단계: 청소년·지역 활동의 고참 단계

청소년·지역 활동자 자격 부여 문제에는 이 단계 구별 기준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자격자들은 반드시 1단계 자격 기준은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즉시, 혹은 경험을 좀 쌓은 뒤 2단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결과

청소년·지역 활동자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7가지 주요 분야의 수행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① 자신 및 타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② 분석 능력
- ③ 중재 능력
- ④ 교육 및 학습
- ⑤ 의사 소통
- ⑥ 계획 및 평가
- ⑦ 관리 및 조직 구성 능력

이런 능력들은 다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 ◆ 개인, 단체, 지역 관련 업무
- ◆ 적절한 자원을 식별하고 동원하는 정도
- ◆ 개인, 단체, 지역에 대한 존중

- ◆ 정치적 간섭에 대한 이해.

자질

교육 성과는 청소년·지역 활동에 중요한 자질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활동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 ◆ 청소년·지역 활동에 있어서 핵심 과정으로서의 사회 교육
- ◆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사람의 자질, 능력, 권리
- ◆ 독자적 결정권
- ◆ 단체 행동 및 단체 활동에서의 인간관계 중요성
- ◆ 협동과 충돌의 가치

평가

A. 자신과 타인의 활용

- ◆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
- ◆ 자신과 타인들을 평가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력
- ◆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넓혀 가는 능력
- ◆ 자신의 독창성에 입각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일할 수 있는 능력
- ◆ 자신과 타인들을 잘 판단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능력

B. 분석

- ◆ 기회 균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
- ◆ 자신이 속해 온 그룹(가족, 동년배, 인종, 계급, 성(性) 등)에 의해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능력
- ◆ 위의 사항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지역 활동자의 역할, 특히 교육적인 역할을 분석하는 능력
- ◆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 단체의 정치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

C. 중재

개인과의 활동

- ◆ 사회 교육의 원칙과 실행에 대한 이해
- ◆ 청소년들과 성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조성하는 능력
- ◆ 개인의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일정한 역할들을 담당할 능력에 대한 이해(고취, 충고, 상담, 원조, 조력, 구성)

그룹 및 지역과의 활동

- ◆ 그룹 활동의 기본적 원칙 및 실행에 대한 이해
- ◆ 지역활동 및 지역 교육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행에 대한 이해
- ◆ 청소년들 및 성인들과의 발전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
- ◆ 그룹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 ◆ 지역 그룹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돕는 능력
- ◆ 그 지역과 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능력

D. 교육 및 학습

- ◆ 청소년들 및 성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지적 성장에 대한 이해
- ◆ 사람들의 단체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이해
- ◆ 사춘기 및 성인기로의 성장(정상적인 성장 및 탈선)에 대한 이해
- ◆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활동자와 그 활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청소년, 성인들의 행동을 보고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분석할 기회를 조성하는 능력

E. 커뮤니케이션

- ◆ 타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능력
- ◆ 타인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한 그룹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 소통하는 능력
- ◆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능력
- ◆ 구두 발표를 하게 하는 능력
- ◆ 명료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편지, 허가 신청서, 소식지) 작성 능력
- ◆ 개인 및 그룹들과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을 책으로 출

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F. 입안 및 평가

- ◆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
- ◆ 정책에 관해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능력
- ◆ 정해진 목표에 관해 활동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
- ◆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하는 능력
- ◆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D. 관리 및 조직 구성

- ◆ 자신과 그날 그날의 일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자원을 관리할 기본 자질
- ◆ 청소년·지역 활동의 원칙 및 실행과 일관되게 관리를 이해하는 능력

학습 결과의 사용

청소년·지역 활동의 필요에 부응하고 각 참가자 개인에게 적절한 훈련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사용을 통해 핵심 자질을 포함한 학습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학습 결과는 교육과정(구성, 내용, 수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은 현장 활동 수행에 학습 목표를 볼 수 있다. 학습 결과는 또한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코스와 기구는 내부적인 통합성을 가지게 된다.

3) 자격 취득 과정

과정의 종류 : 총 13과정

- ◆ 풀타임 코스: 자격증 혹은 Dip HE를 취득 -기간은 보통 2년;
- ◆ 파트타임 코스: 자격증 혹은 Dip HE를 취득하는 원거리 교육 (distance learning)을 포함함 -기간은 보통 3년;
- ◆ 풀타임 학위 코스: 3년 내지 4년 -청소년·지역 훈련기간은 풀타임 코스 2년이어야 한다.

- ◆ **대학원 코스:** 대학원 자격증, 학위, 혹은 MA를 취득 - 보통 1년 풀타임, 2년 파트타임;
- ◆ **수련생 제도:** 최소한 2년;
- ◆ **인정 제도:**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

구성, 내용 및 방법

교육 성과는 공통적이며 자격 취득자들은 모두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11페이지 참조)는 점에서 모든 코스나 제도의 내용은 각각 특징적인 성격을 띠기는 해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 코스나 제도의 구성과 교육 방법은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의 지망자들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똑같은 자격에 대한 다양한 과정의 발전은 전국 청소년청의 기회 균등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장 실습

현장 실습에는 두 가지 형태의 훈련이 있다

- ◆ **풀타임 훈련:** 현장 실습은 배치를 통해 실시되며 감독과 평가를 받는다.
- ◆ **파트타임 훈련:** 현장 실습의 대부분은 참가자의 그날 그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감독과 평가를 받는다 - 예를 들면, 수련생 제도가 그렇다.

풀타임 훈련에서는 참가자가 적어도 교육 과정의 40퍼센트를 현장 실습에 보내야 한다. 파트타임 훈련에서는 참가자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된다. 파트타임 고용에서는 참가자가 적어도 1주일에 5번 활동을 하고 이에 더하여, 근무 이외의 훈련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1주일에 2번 이상 활동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파트타임 훈련자들은 1주일에 적어도 5번 보수를 지급 받게 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청소년·지역 활동 코스나 제도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 청소년들과 성인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을 통해, 비정규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 청소년 봉사 활동 및 지역 기관
- ◆ 건물에 근거지를 둔 활동 제공(buiding-based provision)

대학 주도 차원 혹은 고용주 주도의 교육과정

전통적인 2년 풀타임 코스는 대학에 근거를 둔 혹은 대학 주도의 교육 과정이었다. 파트타임 훈련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이나 제도가 대학 주도 혹은 고용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파트타임 코스와 원거리 교육의 초기 형태는 원래, 1주일에 5번 이상을 일하는 파트타임 고용인들이라 하더라도, 파트타임 고용인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풀타임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주도 훈련 중 한 형태들이었다.

고용주가 완전히 주도하는 훈련으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수련생 제도였으며 비록 이런 제도가 훈련기구나 대학과 긴밀한 유대 속에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전형적인 고용주 주도의 수련생 기구로 남아 있다.

고용주들

2년 과정 풀타임 코스는 적절한 현장 활동 실습 기회를 얻기 위해 전통적으로 고용주들에 의지해 왔다. 파트타임 훈련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대학 주도의 훈련인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 적절한 현장 실습을 제공해야 한다.
- ◆ 실습 감독과 평가에 조력한다.
- ◆ 훈련 활동을 할 시간을 제공한다 - 일부 활동은 대학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고용주 주도 훈련인 경우, 고용주는 위의 사항 말고도, 별도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현장 실습만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근무 이외의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자신이 관리하거나 고용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협의

이 모든 것에 있어, 관련 부서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관해 일일이 의

논을 하고 일련의 협의나 계약을 이끌어 내는데, 가능하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훈련과 수련생 제도에 있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의 계약이 필요하다

- ◆ 고용주와 훈련 기관이나 혹은 근무 이외의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이들 사이에
- ◆ 고용주와 참가자 사이에
- ◆ 참가자와 훈련 기관(위의 내용 참조) 사이에
- ◆ 현장 실습 감독관들(각 생산부 감독관)과 훈련 코스나 제도 사이에
- ◆ 입회인들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는 외부 시험관과 훈련 코스나 기구 사이

계약서에 관한 권고 사항은 문의시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4) 승인을 위한 자료 및 승인 자격요건

승인 의뢰서는 그 코스나 제도가 다음 사항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 ◆ 기회 균등이나 인종 평등 같은 문제에 대한 참여 등을 포함한, 변화하는 사회의 주요 특징
- ◆ 오늘날, 혹은 미래에 청소년·지역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 지역 사회, 실제적·잠재적 사용자들, 동료들과 고용주의 필요를 인식하는 참가자들의 중요성
- ◆ 참가자 교육과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발전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 훈련 코스의 역할
- ◆ 이론과 실습 사이의 내부 관계
- ◆ 파트타임 훈련의 경우, 전문적인 인식 및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근무 경험에서 영향을 받고 자신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참가자들의 중요성

제출된 자료는 아래에 나오는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부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제출 의뢰서 자료의 순서나 배열이 달라도 되며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은 이런 다른 배열이나 순서가 용인된다. 그 훈련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자격 요건들은 볼드체로, 자료 다음에 게

재되어 있다.

▣ 상의 성격

<자료>

- ◆ 포상 기관의 이름
- ◆ 상의 명칭과 자격의 성격 - 평가 기준
- ◆ 포상에 관련된 내부 절차(조직구성에 관한 내용 참조)
- ◆ 다른 자격(예를 들면, Dip HE, Dip SW) 수여 기관에 의한 학문 인정이나 전문적인 승인과의 연계

▣ 목적 및 이론적 근거

<자료>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전체 목적 및 목표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개요(특정 강조점이나 성격)
- ◆ 특히, 참가자 모집과 참가자들이 준비하여 특정한 집수 지역이나 시장을 반영하는 활동의 특징
- ◆ 코스나 제도 내에서 실행되는 기회 균등 정책

▣ 참가자들

<자료>

- ◆ 모집안
- ◆ 특히, 입회 단계들 - 이 코스나 제도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입학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나이, 자격, 학습 능력, 경험)
- ◆ 선발 기준 -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 만한 사항이 있는가? (성, 인종, 장애 등의 문제에 관해)
- ◆ 선발 절차 -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되는가(선발 절차에 누가 관여하는가? 선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선발 장소는 어디인가? 절차는 무엇이며, 선발 정책과 실행은 누가 결정하는가?)
- ◆ 특별 전형 - 특별 전형에 관한 정책과 실행은 무엇인가?

- ◆ 그룹마다 최소, 최적, 최대 참가자 인원수는 몇 명인가?
- ◆ 현재와 미래에 이 코스나 제도에 필요한 점을 평가하는 절차 - 어떻게 예측 평가를 하는가?
- ◆ 풀타임 훈련의 경우, 미래의 참가자가 적절한 자격증과 상을 획득하도록 충고하고 돕는 절차

☞ 자격요건

- ◆ 입학 요건과 절차 및 특별 전형 기준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광범위하게 공포되어야 한다.
- ◆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훈련 코스나 제도의 목적 및 원리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입학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 특별 전형의 비율은 2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 입학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제한 연령 (최하 22세)
 - 참가자들이 그 코스나 제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능력과 그 훈련 내용에 적당한 학문 능력: 이런 능력들은 GCSE나 A등급 혹은 다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
 - 일관되고 다양하고 적절한 경험
 - 파트타임 훈련의 경우, 청소년·지역 활동에 있어 적당한 근무

☐ 파트타임 훈련 참가자들의 근무 사정

<자료>

- ◆ 파트타임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의 승인
- ◆ 참가자들이 현장 실습 등, 이 코스나 제도 참가를 위해 적당하고 적절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절차
- ◆ 훈련 기관, 고용주, 참가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관한 기술로 여기에는 직원 보험의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자격요건

- ◆ 훈련 기관, 고용주, 참가자들간에는 계약이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적절한 교육 시간, 직원 보험과 경비(예를 들면, 교통

비, 생활비, 도서비)에 대한 협정이 있어야 한다.

☐ 수련생 제도 참가자들의 고용

<자료>

- ◆ 모집 방법 -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되는가? 모집에 누가 관여하고 모집 장소는 어디인가? 절차는 어떠한가? 누가 결정하는가? (예를 들면, 고용주나 그 제도의 직원)
- ◆ 참가자들의 직업을 기술할 수 있는 샘플과 종사 부서에 대한 표시
- ◆ 맡을 일과 근무 환경을 고안하고 선택하기 위한 합의 및 기준
- ◆ 고용주와 참가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의 예
- ◆ 현장 실습의 감독자를 선정하는 협정 및 기준
- ◆ 고용주들과 훈련 실시자들의 참가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에 관한 승인
- ◆ 훈련 제도를 마친 후의 참가자들의 근무 신분.

☞ 자격요건

- ◆ 근무와 훈련에서 할 일과 책임에 대해 약속하는 직업 소개가 있어야 한다.
- ◆ 고용주와 참가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서(여기에는 근무시 활동 및 근무 외 활동을 할 때 제공될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언급을 포함되어야 한다)

☐ 기간

<자료>

- ◆ 일별, 월별로 나타낸 참가자들의 근무 내역, 교육 기간 및 개인 학습 시간을 포함한 전체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 현장 실습의 비율 및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자격요건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기간은 자격제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구성, 내용, 훈련 방법

<자료>

- ◆ 훈련 코스나 훈련 제도에 있어 각 사항들의 관계를 포함한 구성
- ◆ 내용의 순서와 수업 시간 배당이 기재된 자세한 강의 계획서
- ◆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 과목들 및 이 선택 과목의 과정
- ◆ 훈련 코스나 제도와 참가자들의 이전 경험과의 관계
- ◆ 실습과 이론 학습 사이의 관계, 그리고 파트타임 훈련인 경우, 현장 실습과 근무의 훈련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관계
- ◆ 훈련 코스나 제도가 다민족, 다문화적인 사회로서의 영국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 ◆ 핵심 자격을 포함한 학습 결과가 어떻게 교과과정과 연관되어 있는가?
- ◆ 과제에 대한 개인의 학습 목표가 어떻게 현장 실습에서 달성되는가?
- ◆ 강의, 세미나, 개인 교습, 자습, 보고서 작성, 실습 및 현장 실습에 배당된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 ◆ 훈련 코스나 제도 동안에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학습에 있어서 반(反)성차별, 반(反)인종차별적 접근과 어떻게 맥락을 같이해 사용되는가?
- ◆ 배정과 근무 배정, 감독 및 평가 계획
- ◆ 작업 할당, 표준 작업량, 마감일 배정, 그리고 할당 단계에 대한 계획
- ◆ 참가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충고를 받고 도움을 받는가? - 예를 들어, 개인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인 교습을 통해 도움을 받는 과정
- ◆ 참가자들의 이전 학습 경험이 어떻게 고려되는가?
- ◆ 참가자들이 현장 실습을 포함한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평가에 있어 어떻게 참여하는가?
- ◆ 제공되는 부문 내역과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설명 - 예를 들면, 시청각 자료, 도서 목록, 공공 서비스 및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제공 부문들

☞ 자격요건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구성, 내용, 실행 방법은 참가자들의 문화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그들이 다인종적이며 다민족적 사회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어야 한다.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내용과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게 공포 되어야 한다; 의무 사항 및 선택 사항에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 학습 효과에는 다음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년들 및 지역 사회와의 활동
 - 직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활동
 - 봉사 활동 제공 과정
 - 경영 및 재정
- ◆ 훈련 코스나 제도는 훈련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에 관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청소년과 성인들과의 개인 혹은 그룹 차원의 비정규 교육 활동
 - 청소년 서비스와 지역 기관
 - 건물에 근거지를 둔 봉사활동 제공
- ◆ 적어도 훈련이나 제도의 40퍼센트는 현장 실습이어야 하며 이 현장 실습은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참가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근무 장소에서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 ◆ 풀타임 훈련에 있어서는 주요 근무지는 한 번 이상 건물에 배정되어야 하고 한 번 이상 코스의 하반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번은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기초 근무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 파트타임 훈련에서는 참가자들이 적어도 1년에 240 시간 동안은 근무해야 한다(18페이지 참조). 이들의 현장 실습은 근무 대신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성격이 다른 근무지에 한 번 배정받아야 한다.
- ◆ 훈련코스가 교육 성과를 거두게 하고 그것이 현재의 근무나 미래의 활동에 연관되게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 참가자들은 현장 실습을 포함한 자신들의 학습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에 참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실행할 계획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 교육 과정 참가자들에게 충고와 도움을 주는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널리 공포되어야 한다.

▣ 참가자 평가

<자료>

- ◆ 평가 및 시험 계획;
- ◆ 특히, 현장 실습 평가에 관한 평가 절차;
- ◆ 시험 위원회 및 장소 절차 및 이러한 것들이 기회균등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 ◆ 연기 및 재제출
- ◆ 학점 대체 계획

☞ 자격요건

- ◆ 평가 및 시험 절차는 장소 절차와 함께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수련생 제도의 경우에는 장소 절차가 근무 실적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 이 절차는 기본 수행력을 포함한 학습 효과가 평가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나타내어야 한다.
- ◆ 참가자들은 실습과 이론 활동에 있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근무지들 사이와 다른 이론 과목들 사이에는 상대 평가가 있으나 실습 및 이론 활동 사이에는 상대 평가가 없다.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참가자들, 직원들과 현장 실습의 감독관들은 전체 평가 절차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보통 감독관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권한을 발휘한다.
- ◆ 보통, 청소년·지역 활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론적, 실제적 자격을 갖춘 3명의 외부 시험관들과 평가자들이 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용주와 개업자의 관점이 이 임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임명 사항과 차후 변동 사항은 NYA에 보고되어야 한다.
- ◆ 외부 시험관들과 평가자들은 성과 인증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그 훈련 코스나 제도의 반인종적, 반(反)성차별 성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 상황 문제로 인한 시험 연기 및 재제출을 위한 대비책 그에 따른 정책이 있어야 한다.
- ◆ 학점 대체에 대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 조직 구성의 내용

<자료>

- ◆ 훈련 코스가 적절 부서나 교수진, 기관이나 단체 자체의 활동에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한 기술, 그리고 수련생 제도의 경우, 그 제도에 관여될 수 있는 고용주와 다른 훈련 기관의 구성에 그 훈련 제도가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한 기술
- ◆ 그 훈련 코스에 대한 기관의 공식 참여의 성격 및 범위, 수련생 제도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훈련 기관의 공식 참여의 성격과 범위가 재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 ◆ 포상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 ◆ 훈련 코스나 제도 위원회, 직원의 참여 그리고 참가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
- ◆ 훈련 코스나 제도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

▣ 훈련 코스나 제도의 통제, 관리 및 절차

<자료>

- ◆ 그 코스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며 발전되는지에 관한 기술
- ◆ 특히, 그 훈련 코스나 제도의 직원, 규정 분야 및 자원 분야의 고용주, 전문 협회 및 조합,
관련 청소년·지역 단체, 참가자들 자신, 수련생 제도의 경우에는 관여하는 훈련 기관 -그러한 대리인들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 ◆ 결정 절차 및 충돌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기술
- ◆ 그 훈련 코스나 제도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자문을 해줄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나 단체에 대해 그 역할과 구성을 포함한 내용 기술 -그것의 의견이 그 훈련 코스나 제도의 의견 결정 절차와 평가를 어떻게 알리는가.

☞ 자격요건

- ◆ 훈련 코스나 제도는 명확하게 규정지어진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의 관리와 발전은 그 코스나 제도의 직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정 분야 및 자원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앞으로 근무하게 될 근로자들
- 전문 연합 및 조합
- 적절한 청소년·지역 단체
- 참가자 자신들
- 수련생 제도의 경우 관련 모든 훈련 기관

- ◆ 결정 과정과 관계없이, 그 훈련 코스나 제도의 과정과 평가를 알리는 자문 위원회나 단체가 있어야 한다.

☐ 훈련 코스나 제도의 평가

<자료>

- ◆ 훈련 코스나 제도 시행시와 그 후에 있을 평가에 대한 계획 -누가 관여하며 자문은 누가 맡을 것이며 변화 사항은 어떻게 영향받는가?
- ◆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게 청구될 것인가? 외부 시험관과 외부 평가자들, 현재와 과거의 참가자들, 의무 부문과 자원 부문의 근무자들 및 현장 활동자들

☐ 직원

<자료>

- ◆ 훈련 코스나 제도의 직원에 대한 참가자의 비율
- ◆ 직원의 이름, 자격, 연구, 출판 및 청소년·지역 활동 분야에서의 현재 관여도 및 그 밖의 관련 경험
- ◆ 각 직원들이 봉사에 쏟는 시간과 그들이 맡는 각 역할의 표시
- ◆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현장 실습과 그 이상의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 직원 발전 정책, 기관 및 그들의 직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일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
- ◆ 현장 실습 감독자들에 관한 세부 사항 - 그들의 모집, 근무 훈련자들과로서의 책임과 역할과 평가에서의 참여, 그들의 훈련과 조력, 그리고 그 훈련 코스나 제도와의 계약
- ◆ 파트타임이나 전문가 차원으로 활용되는 다른 직원들에 관한 세부

사항

◆ 관리와 사무 조력

☞ 자격요건

- ◆ 코스의 직원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율은 훈련 코스의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직원 정책은 인종, 성, 육체적 장애, 혹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평등 정책을 실행한다는 그 기관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그 기관이나 코스팀 내부에서 여성, 흑인, 다른 소수 인종 그룹, 장애자들에 속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그 기관이 1976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의 37항과 38항 및 1975년과 1986년의 성차별법의 47항과 48항이 허용하고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자들의 경우에는 차별 관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법규 또한 없다.
- ◆ 직원 중에는 경험자들이 있어야 한다 - 보통 적어도 교육원들의 절반은 청소년·지역 활동에서 최근에 적절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직원 활동을 최근에 해본 사람들을 교육원으로 기용해야 한다.
- ◆ 현장 훈련은 모든 직원들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 현장 실습 감독관들은 주의를 기울여 모집해야 한다 - 청소년·지역 활동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어야 하며 감독관으로서 적당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조력을 적절히 받아야 한다. 그들의 임명에 있어서 교육원들, 고용주들,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현장 실습의 감독관들은 반(反)성차별적이고 반(反)인종적인 관행을 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의기를 불돋을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감독 및 사무 지원은 각 등급 활동에 필요한 점들을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그 밖의 외부 자원들

<자료>

- ◆ 그 훈련 코스나 제도에 필요한 인원 수용력(전용 면적 표시), تاک아·주차·인원 수송 준비;
- ◆ 미디어 자료, 도서관, 녹화 기술 및 다른 부서, 교수진, 기관, 단체들,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자료 사용 및 이용 가능 정도;
- ◆ 재정, 비용, 여행 경비 (예) 배정 비용), 현장 훈련 및 직원 교육에 드는 자금.

☞ 자격요건

- ◆ 그 훈련 코스나 제도에 드는 자금, 수용력 및 기타 자원들에 대한 준비가 각 참가자들에게 적절해야 한다.

■ 참가자들의 복지

<자료>

- ◆ 참가자들의 복지에 할당된 직원과 다른 인적 자원들;
- ◆ 훈련 코스나 제도가 기간 동안 보건, 복지, 주택 및 근무 조연 등의 참가자 개인에 대한 원조 준비;
- ◆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외부 자원과 기회(스포츠 홀, 극장 등);
- ◆ 풀타임 훈련의 경우, 참가자들을 위한 민박.

5) 승인 의뢰서 작성

새 훈련 코스나 제도

새 훈련 코스나 제도의 경우, 승인 신청서는 훈련 코스나 제도가 고안되는 동안에 보통 준비되며 제출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

승인 신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NYA의 교육 및 훈련 기준 분과 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실무 그룹에게 그 훈련 코스가 입안이 잘 되어 있는지, 성공을 거둘 것인지,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를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코스와는 달리 현재 참가자들과나 경험 있는 현장 실습 감독관들 및 모든 교수진들을 만나 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훈련 코스나 제도를 고안(이 고안 작업은 NYA나 그 실무 그룹의 직원들의 일이 아니라 스폰서들의 업무이다) 하는데 있어서 스폰서들은 그 지역에서 제공되는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지침서에서 NYA는 고안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의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NYA의 직원들은 구성, 내용, 실행 방법 보다는 제출 사항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출 사항 자체를 설명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때, 지역 자문인들, 지침서, NYA 직원들은 훌륭한 코스를 고안할 수 있고 성공적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층

승인 신청서를 읽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NYA에 있어서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이나, NYA는 다른 역할도 또한 맡고 있다.

우선, 이 승인 신청서는 관계자 모두(스폰서, 교수진 그리고 현장 실습 감독관, 고용주 및 자금 지원자들 그리고 참가자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관계자들(NYA도 여기에 포함된다)이 그 훈련 코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 그 의견(이것은 모니터나 평가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을 알릴 수 있다. 승인 의뢰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어려움 겪을 수 있다.

기간

모든 이를 위해서, 승인 의뢰서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지만 지침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출 의뢰서에서 기본 자료는 가급적 이 지침서의 6 부문에서 사용된 머리말 아래에 기재되어야(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용어도 기재된 것과 일치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50페이지나 6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실무 그룹 임원들은 업무가 복잡한 이유로 어느 모로 보든 의뢰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분명한 것이 좋다. 의뢰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5페이지나 6페이

지에 이르는 짧은 개요표가 같이 제출된다면 좋을 것이다; 다른 부분에 서처럼 여기에 도표가 이용된다면 좋을 것이다.

기본 자료

이 지침서의 6부분에 나와 있는 머리말들 각각 아래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재될 사항이 전혀 없다면 그 훈련 코스에 대한 고안이 부족한 것이다). 세부 사항은 부록(서류의 앞뒤 참조로)이나 첨부 자료(실무 그룹이 방문시에 볼 수 있도록)에 기재될 수 있다. 승인 의뢰서 자체는 지나치게 거창해서는 안된다; 인쇄비와 발송비 및 읽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완 및 첨부 자료

위에 기재된 것처럼, 세부 사항(시간표, 도서 목록, 교육과정 소개서, 등급 배정, 근무 내용을 하나 예로 들어 그에 대한 기술한 것, 현장 실습 감독관에 대한 사항)은 첨부 자료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료들 중 일부는 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도표와 작업 공정도

코스의 구성에 대한 도표 일람과 작업 공정도(예를 들면,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실습의 감독 및 평가, 그리고 참가자들의 현장 배치에 대한 평가까지, 현장 실습이 어떻게 계획 되는가에 대한 작업 공정도)는 의뢰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도표 및 공정도는 복잡한 구성 및 절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이런 도표 및 공정도는 의뢰서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구성 및 절차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구성 및 절차

마지막으로, 승인 의뢰서 작성시, 코스의 구성 내용과 절차 내용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어떤 특정한 훈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효과(그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면 쉽게 내릴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참가자 주도로 기초 훈련을 하라는 것이 것이 아니라 참가자에게 중심을 두어 의뢰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6) 절 차

NYA의 실무 방법

NYA에 승인의뢰서 접수 → NYA의 주무부서 : ETS 분과위원회로 일임
 → 실무그룹에 의뢰서의 세부사항 조사 의뢰
 → NYA 자문진이 실무그룹에 자료 제공
 → 실무그룹의 방문조사 등 자료 실사
 → 실사 결과를 ETS 분과위원회에 보고
 → 분과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
 → 결정 내용을 JNC에 통보 및 기재
 (→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요청)

7). 승인의 재검토

승인서는 보통 5년 동안 재검토될 것이며 가끔 그 재검토 과정이 7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자료

승인은 처음 제출된 의뢰서를 기준으로 내려진 것이고 그 코스는 승인된 대로 내용에 있어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NYA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NYA는 그것의 실무 그룹과 관련 문서와 함께 이전에 제출된 승인 의뢰서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ETS 분과 위원회 임원들은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새 자료들의 초점은 승인된 이래로 그 코스에 생긴 변화 사항에 맞춰져야 한다.

코스의 평가

처음 제출된 승인 의뢰서에는 그 코스가 시행되는 동안과 그것이 끝

난 후의 평가 준비 사항이 기재되었고 새 자료는 이러한 준비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처음 제출된 승인 의뢰서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언급해 가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코스의 결과가 견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NYA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승인 지침서에 기초한 새로운 승인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권리를 유보한다. 이것은 NYA가 그 변화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 기관이나 단체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협의해 보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들

처음 제출된 승인 의뢰서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새 자료에는 지난 5년간 그 코스에 참가한 이들의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

처음 제출된 승인 의뢰서에는 평가와 외부 시험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새 자료에는 평가의 결과와 지난 5년간 실시되었던 시험 결과가 매 기간 동안 올려진 시험관들의 보고와 함께 요약되어야 한다. 승인 이후 외부 시험관들과 외부 평가자들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새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직원

처음 제출된 승인 의뢰서에는 그 당시 직원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변화된 사항에 맞추어 새로 기재되어야 한다.

기준

처음 작성된 승인 지침서는 기초 훈련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다. NYA는 승인을 재검토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그 기관이나 단체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기준에 관심을 쏟도록 할 것이다.

절차

승인을 재검토하고 제출 서류를 검토할 때, NYA는 코스의 기초 승인에 관련된 절차 및 승인 지침서에 기재된 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2. 외국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자격요건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은 청소년수련활동 영역에 제한되어 매우 협소함. 반면, 외국의 경우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을 보면 매우 다양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구체화되어 있음.

* 외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다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함.

A. 영국의 청소년지도사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서비스의 전달과 지원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집행됨. 청소년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과 비공식적 사회교육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청소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와 자원단체와의 동반관계를 통해 이루어짐.

(1) 청소년지도사의 유형

① 청소년지도사의 명칭

○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은 일반적 의미로 「청소년지도사」라 부름.

○그러나 중점적인 활동과 역할에 따라 호칭이 다양함(NYA). 청소년지도사(Youth Worker),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사(Youth and Community Worker), 지역사회지도사(Community worker)등의 명칭이 사용되며 youth leader라는 명칭도 사용됨. 지역사회지도사들이 활동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과 활동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 발달의 특정한 요구에 초점을 맞춤.

② 근무형태별 청소년지도사의 유형

○ 영국의 청소년지도사는 상근지도사와 시간제 비상근지도사로 나눌 수 있음.

대부분 유급 또는 자원 시간제 비상근지도사(part-time woker)임.

③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형태별 현황

○ 청소년서비스요원에 관한 보고서에는 지역정부와 자원단체내의 4,898명의 상근지도자, 723명의 사무직원(각 지방의 청소년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무원)과 자문위원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상근지도사는 7,000명으로, 1/3은 전국 또는 지방의 자원청소년단체에 활동하고 있다고 추산함. 시간제지도사와 자원지도사의 수는 비상근지도사 약 31,500명, 자원지도사 500,000명으로 추산됨(NYA, 1994). 자생적 클럽활동에서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고 청소년개별활동은 주로 전문지도자가 담당하고 있음(최윤진외,1991).

(2) 청소년과 지역사회 지도사의 자질

○ 영국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 활동에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과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핵심과정으로서의 사회교육
-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인간의 자질, 능력, 권리
- 독자적인 결정권
- 단체 행동 및 단체활동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
- 협동과 충돌의 가치
- 개인 존중
- 다민족 문화 존중
-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
- 지도자의 영향과 자질을 인정
- 자신과 타인을 변화하는 존재로 인정

○ 청소년과 지역사회 활동가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다음 7분야의 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함.

- 자신과 타인의 활용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
 -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력
 -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넓혀가는 능력
 - 자신의 독창성에 입각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일할 수 있는 능력
 - 자신과 타인을 잘 판단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 분석
- 기회균등의 시각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
 - 자신이 속했던 집단(가족, 친구, 인종, 계급, 성 등)에 의해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는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위 사항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의 역할, 특히 교육적 역할을 분석 하는 능력
 - 청소년과 성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를 이해하는 능력
 - 단체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
- 중재
- 개인과의 활동
- 사회교육의 원칙과 실행에 대한 이해
 - 청소년과 성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능력
 - 개인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 집단 및 지역과의 활동
- 집단활동의 기본 원칙 및 실행에 대한 이해
 - 지역활동 및 지역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실행에 대한 이해
 - 청소년 및 성인들과의 발전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
 - 집단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능력

- 지역 집단들이 자신의 결점을 파악케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치하도록 돕는 능력

- 교육 및 학습

요구되는 자질

- 청소년과 성인의 정신적, 육체적, 지적 성장에 대한 이해
- 단체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
- 사춘기 및 성인기로의 성장(정상적인 성장 및 탈선)에 대한 이해
- 청소년과 성인이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분석할 기회를 조성하는 능력

요구되는 일반 지식

- 청소년 및 지역 활동의 역사 및 발전과정
- 1945년 이후의 사회발전과 정치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
- 청소년의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와 주요 쟁점(기회균등, 복지권리, 실업, 주택공급, 집없는 사람들,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설명

- 커뮤니케이션

- 타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능력
- 타인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이나 사회성원의 일원으로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능력
- 구두발표를 하게 하는 능력
- 명료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
- 개인 및 집단들과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입안 및 평가

-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현실적이 목표를 세우는 능력
- 정책에 관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
- 정해진 목표에 관해 활동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

-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하는 능력
-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관리 및 조직 구성

- 자신과 일상의 일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자원을 관리할 기본 자질
- 청소년과 지역 활동의 원칙 및 실행과 일관된 관리를 이해하는 능력

(3)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

① 청소년지도사의 활동목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집단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

②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센터, 거리현장 프로젝트, 학교 또는 후속 교육대학 (future education college)과 같은 다양한 환경이나 상담서비스, 개입치료자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활동함.

가. 청소년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 실업과 훈련, 무주택, 마약, 여자 청소년 지원활동, 다인종 공동사회의 형성, 장애청소년지원,

나. 야외중심의 활동

- 외향단(Outward Bound Trust), 에던버리 공작포상계획, Prince's Trust

다. 국제교류활동

- 청소년교류센터,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라. 상담과 정보의 제공

마. 거리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

바. 청소년의 여가활동

(4)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요건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학제 중심의 운영을 하고,

실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보다 깊게 연계시키고 있음.

교 육 과 정

○ 전임지도자 양성은 4년제 대학 및 단과대학에 설치된 2년 기본과정을 마치면 공인된 청소년 및 지역사회 전문가로 신분을 얻게 됨.

○ 시간제 및 자원지도자 훈련은 국가 혹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도력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고 있음. 청소년지도업무가 지역사회업무와 혼합되어 있어서 명칭도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로 불리우고 그 교육내용도 지역사회업무에 관련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기초가 되고 있는 Fletcher(1951)의 안에 제시된 기본골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Tong & Jeff, 1988).

< 표 1 > 영국 청소년지도자 훈련내용

기 본 과 정	특 별 과 정	실 습
○ 현대 영국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 인간관계론: 개인, 가족, 집단심리학, 건강, 성교육 ○ 서구 문명의 종교, 정치, 철학적 이념 ○ 청소년지도자가 직면하는 교육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 ○ 그 외 일반 선택 과목	○ 청소년서비스의 조직, 관계, 목적 ○ 집단지도의 방법과 문제 ○ 청소년 심리학 ○ 학교에서 직업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	○ 청소년서비스의 업무중 적어도 두 종류의 경험 ○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다해도 계속적 경험습득이 필요한 부분 활동 중 일부 기능 습득(예: 드라마, 체력단련, 공예, 음악 등)

○ 영국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내용은 크게 세 영역, 즉 필수과정, 현장실습, 그리고 개인발달 프로그램이며, 교육내용은 이론, 실습 및 개별 기능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표 2 > 영국의 청소년지도사 교과내용

필수과정	현장실습	개인발달 프로그램
○ 의사전달과 인간관계: 대상집단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 원리와 실제: 청소년 지역사회전문가의 전문적 역할의 성격과 수행검토 및 탐색 ○ 사회적 상황: 주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 이해	○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필수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실습 및 현장 연구 (예: 청소년회관, 청소년클럽, 청소년단체 등)	○ 기술, 취미, 개발 기회 부여-교내 혹은 지역의 가능한 시설에서 실시 (예: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 야외활동, 공예활동 등)

○ Menchester Polytechnic의 Youth and Community Work 교과과정 교수요목(예시)

- 인간성장과 발달

목적 :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성숙하는, 발달적 그리고 문화적 현상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확장시킴.

- 사회학적 이해(1)

목적 : 학생의 경험을 시험해 보고 더 충분하게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해의 영역을 소개시켜 줌. 이 과정의 강조점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관점과 개념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임

- 간여전략 : 카운셀링

목적 : 학생들이 인간성장과 발달의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하고 개발하도록 함.

적절한 상담전략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담기술을 획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과 지역사회사업의 원리와 실제1

목적 : 청소년과 지역사회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원리, 실습, 전략의 비판적 이해를 개발시키기 위한 사회적이고 윤리적 원리들을 포함하는 이론적이

고 개념적인 구도를 세움.

- 소집단의 사회심리학

목적 : 학생들에게 소집단에서의 행동의 기본적인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그 모형의 관련성을 제시함

- 사회학적 이해(2)

목적 : 사회학적 이해(1)에 소개되어진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며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을 명료화

- 간여전략 : 집단활동

목적 : 집단활동기능의 개발을 위한 적절한 개념적 기초를 습득시킴

- 청소년과 지역사회사업의 원리와 실제 2

- 사회정책과 사회문제

목적 :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들에게 관련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들중 하나의 범주를 선택하여 소개함. 문제의 명료화, 정책의 형성과 개선의 과정의 이해를 넓혀주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서비스분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

B.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사

*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됨.

- 1) 청소년을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것
- 2) 청소년에게 문화와 여가에 접근시키는 것
- 3)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임.

(1) 청소년지도사의 유형

○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취득과정에 따라 BAFA자격(활동지도자 자격증), BAFD자격(기관장직 자격증)과정과 B.A.S.E자격(사회교육 애니메이션자격증), B.E.A.T.E.P자격(대중교육 기술애니메이션자격증), D.E.-F.A자격(관리책임자 자격증)으로 분류될 수 있음.

○매년 약 100,000명의 Animateur와 10,000여명의 관리자가 연수를 받으며 이 중 35,000여명의 Animateur와 2,000여명의 바캉스센터의 관리자가 자격증을 받음.

○청소년지도사는 전문지도사, 기술적인 역량과 더불어 조직력을 갖춘 일반지도사, 사회문화기구의 관리자와 조정자 같은 책임자로 나뉠 수 있음.

○청소년지도사는 세 등급으로 나뉠 수 있음.

- 고급기술과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2.3급: 관리자, 조정자, 조직의 책임자, 과제책임자등이 포함됨
- 기술보유한 청소년지도사 4급
- 여가활동보조자, 모니터등의 5급(CAP, BEP, BEPC, BAPAAT 등)

(2)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

① 청소년지도사의 활동목적

○애니메이션(Animation)은 사회교육의 원리로 볼 수 있는데, 인간생활에 혼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로서 현대 기계문명에 의한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즉,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발달시키며 사회적인 협동심을 함양하여 인간성 회복과 신장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프랑스 정부는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지도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이들은 특히 실천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서 Animateur로 불리는 청소년지도사임. 의사소통과 사회적 변화의 적응과 문화공동체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적, 문화적, 사회복지적 활동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함.

②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

○청소년지도사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과 단체에 의해 Animateur로서의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능력에 따라 총원됨.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 청소년의 취업 프로그램 : 직업제공, 기업과 연계 연수과정

제시 등

-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에서의 여가활동, 여름휴가를 못한 청소년을 위한 여름대책활동, 장애청소년과 문맹청소년을 위한 특별활동 등
- 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 :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지도, 직업연수, 휴가·여행, 스포츠, 취업, 평생교육, 사회생활, 여가의 8가지 영역의 정보제공
- 국제교류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유럽심의회 조직, 유럽청소년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유럽망 구축, 청소년 근로자 교환 프로그램
-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바캉스 프로그램 : 단체수련, 다른 청소년과의 교제와 이해, 진취감과 책임감, 새로운 활동 등을 경험하게 함.
 - 여가활동 프로그램
 - 초급 - 어린이들의 생활과 활동에 초점을 맞춤.
 - 중급 - 초보적 기술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고급 -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화 과정에 초점을 둠.
- 4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함.
 - 관광과 여가활동 : 휴양지, 호텔, 클럽, 레저단지등
 - 교육적 여가 : 단체, 협회, 박물관, 전시회 개최나 문화전 개최
 - 사회활동 : 병원, 양로원, 사회단체, 예방본부, 직업청소년 기숙사
 - 지역사회 발달과 이웃에의 봉사 : 문화회관, 단체, 청소년회관, 봉사단체에서의 활동

(3)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소년활동지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 여가 및 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임.

○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은 학점제가 아닌 시간 단위로 되어 있음.
- 자격취득과정 내용은 영국과 유사하게 이론과 실습 두부분으로

구성되며, 특히 현장실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짐.

○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음. 청소년을 위한 휴양시설, 야영장등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위한 BAFA(활동지도자 자격증)와 그러한 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기관장을 위한 BAFD(기관장직 자격증)등 비전문 자격과정과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 자격취득과정(BASE:사회교육자격증, BEATEP:대중교육기술국가자격증, DEFA:기능관련국가자격증, CAPASE:)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교육부와 청소년체육부에서 주는 학위가 있음. 각 과정마다 입학자격과 소요되는 시간, 운영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

청소년체육부에 의한 자격

○ BAPAAT(기술지도자보조직능력증명서)

- 최소 16살이상의 연령조건
- 1,500시간에서 2,000시간의 교육시간을 포함
- 청소년과 아동/모든 대중을 위한 여가활동/자연에서의 여가활동 중에서 선택함.
- 신체적, 운동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지원 중에서 선택하게 함
- 18세 이상인 경우에 시험에 응할 수 있음.
- 이는 교육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활동의 지도자를 위한 국가학위로 5급에 해당함.
- 이 자격을 따면 고급 전문지도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음. BEATEP와 DEFA 준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BEATEP(대중교육기술 애니메이션자격)의 자격요건과 연수

- 18세이상의 연령조건,
- 최소한의 5급의 자격을 소유하고, 직업경험 또는 교육부문에서 최소 60일 이상 자원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자(BEP:중등교육초급학력증서, DEPC, CAP),
- BASE(사회교육자격증), BEES(스포츠교사 국가자격증)자격증, BAPAAT(기술지도자보조직자격증) 중 한가지 소유자,
- 애니메이션이나 선택된 전문분야에서 2년간의 경험,

- 연수과정

- 목 적 : animation직의 전문적 훈련을 위한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자격수준으로 이는 BASE와 DEFA 사이의 중간수준임. 훈련초기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특수사회나 계층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적 수단을 통해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
- 연수과정 : 최대한 3년 동안 650시간(120시간의 일반연수, 160시간의 기술연수, 160시간의 교육학 연수, 실습 210시간)
- 자격증 취득 : 연수 후 일반연수에 관한 필기시험, 기술시험 그리고 교육 자격시험이 끝난 후 자격증 부여함. 시험준비는 공공기관이나 사립단체에 의해 증명되고, 체육청소년부 지역국에 의해 공인됨. 4급으로 인정됨.

○ DEFA(관리책임자자격)의 자격요건과 연수과정

- 3년간의 전문활동을 한 자

- BASE 자격자(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함)

- 연수과정

- 목적 :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시설관리 능력배양

· 연수과정

- 사회교육활동의 행정, 관리 및 조직
- 교육학 및 인간관계
- 사회교육활동과 사회환경
- 초급지도기법
- 고급지도기법

— 일반연수 - 5개 연수단위 160시간 이상

* 애니메이션의 사회환경, 관리·행정·조직, 교육과 인간관계, 애니메이션 기술

— 위의 4가지 중 선택연수(심화과정)

- 4개월간의 full time 또는 8개월간 part time 실습(단, 만 3년 동안의 교육경험을 증명하는 참가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사회교육 경험은 18개월이나 그 이상 연장되며, 교육상황에 따른 12개월이 포함됨. 200시간에는 계획안의 방법론과 평가를 통해 완성되는 120시간과 80시간의 개별학습, 논문, 주제발표

등이 포함됨.

- 자격증 취득 : 지원자가 만든 서류에서 출발한 연수의 마지막
평가로 자격증을 획득함.
시험준비는 체육청소년부의 지역관리국에 의해 허가되고 실행됨.
3급에 해당됨.

○ BASE(사회교육자격증)의 자격요건

- 18세 이상의 연령조건
- 2년 동안의 만 120일 이상의 활동경력
- 하나의 학위과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
- 성인 또는 청소년단체의 전문적인 애니메이터들이나 자원봉사
애니메이터들에게 도위원회의 사회교육과에 의해 교부됨.
- 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BEATEP와 DEFA 준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교육부에 의해 교부되는 자격

○ DUT(공업기술대학자격)

-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위 소유자
- 대학입학자격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뛰어난 성적표가
제출되면 선발시험에 응할 수 있음.
- 개설대학 : 보르도 3대학, 그르노블2대학, 릴3대학, 파리5대학,
헨스1대학, 푸르대학
- 교육과정 : 2년

○ 대학교육

- 제1기

DEUST(전문이론대학학위)

대학입학자격획득 이후 2년동안 준비됨.

신체활동: 스트라스부르그2대학

집단내 신체적 체육활동교육 : 니스대학

신체적인 체육활동교육과 관리 : 파리10대학

스포츠와 여가활동의 기초교육과 관리시행 : 뽀, 보르도대학

신체적 체육활동의 관리와 개발 : 후영대학
 사회문화적 활동직업 : 엑스마르세이유1대학
 도시내 신체적활동지도: 릴르2대학
 - 제2기

▶ MST(전문이론석사)

MST(전문이론석사)는 DEUG과 예비증명서 획득 이후 2년간 준비.

MST <복지관여계획의 개념과 실현> : 메즈대학
 MST <사회복지문제 전개와 관리> : 릴르2,3대학
 MST <참여와 사회복지 개발> : 낭뜨대학
 MST <사회복지적 참여와 개발> : 캥대학
 MST <참여와 사회복지의 실제> : 베르사이유대학
 MST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 : 빠리 8대학

▶ 대학내 직업교육(IUP)에서 준비되는 교사학위

입학 : 대학입학자격 + 1년
 기간 : 3년
 사회복지기업 내에서의 관리자 : 르망대
 교육, 훈련, 문화경영관리자 : 더종대학
 - 제3기

DESS(전문고등교육학위)는 석사과정다음 1년 동안 준비됨.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문화계획국> : 그르노블대학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보건복지위생활동> <사회복지>중 택
 일: 레임즈대학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사회복지기업내 관리: 합명, 공제회,
 협회>: 르망대학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도회적사회복지> : 에브리대학
 DESS(전문고등교육학위) <가업기업의 관리>: 마론르라발레

평생교육

사회문화적지도자직업은 발전하는 학문과 또 그 필요성에 따라 끊임 없이 스스로를 연마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육적, 활동적인 새로운 실행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

불가결한 이유임.

○ DEFA

○ DUT(기술대학자격증)

사회문화적 지도부문에 적용되는 전문대학학위의 준비를 위한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직장생활 중에도 가능함.

준비과정은 15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함.

준비반: 보르도3대학 IUT B 그르노블2대학 IUT II, 릴르3대학, 빠리5대학, 투르대학

▶ 대학의 자격증

학생들이 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교육시간을 배분하는 등 계획을 세움.

-DHEPS(실용사회학고급교육자격증)

DHEPS는 다른 기관과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14개 프랑스대학에 의해 발급되는 대학의 제2기 증명서임. DHEPS는 같은 종류의 경험과 관계된 연구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 5년간의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 이 증명되는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임. 교육은 3년 정도 교대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DEA과정에 등록할 수도 있음. 한달에 2일간 전체시험이 있고 연구부장에 의한 개별 검사가 있음.

대학: 엑스마르세이유2대학, 앙제대학, 브장송대학, 디종대학, 르망대학, 리옹2대학, 밀우즈대학, 낭쾨2대학, 빠리3대학, 헨느2대학, 라헤위니옹대학, 스트라스부르그2대학, 툴루즈2대학, 투르대학

-DESA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고급교육자격증)과 DHEPS(실용사회학에 대한 고등교육자격증)

빠리3대학(소르본느누벨)의 시험을 거쳐, 청소년과 교육관련 국가기관은 다전공분야와 이중 자격을 인정하는 연수를 시행함. 특히, DESA는 체육청소년부 관할하에 있는 청소년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이 학위는 전문적 활동 그리고 연구와 교육 두 분야간의 장벽을 깨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의 활동을 인정함.

교육기간 : 교대로 2년간, 1년에 22주, 1320시간

등록조건 : DEFA 자격이 있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학학위 책임자 직책으로, 사회문화 활동분야에 최소한 5년간 전문적 실제 활동을 한 자 학비

-DUFRA(대인관계와 단체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연수자격증)

자격의 동등화에 따라 대학 박사과정으로 입학할 수가 있음.

교육과정은 두 수준으로 분류가능:

2년간 CUFRA(대인관계와 단체사회문화활동연수 자격증)획득을 위한 준비과정

제 1단계를 마친 수강생들의 DUFRA획득을 위한 제 2단계

7개 시험이 있고 1년에 350시간의 개별적 활동이 있음. 이 교육은 훈련이나 교육중에 있는 사회복지관련책임자에게 가능함.

-DUEPS(실용사회학교육에 대한 대학자격증)

사회교육은 지도자들의 2급 교육으로, 승인된 석사 수준의 학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줌.

1년에 2일씩의 6번의 시험과 하루 8시간 14일간 교육이 3년간 계속되며 1년에 350시간이라는 중요한 개별적 활동이 요구됨.

DUEPS는 학위 없이 회사나 조합체 단체에서 간부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음. DEUG나 학사 아니면 동등하게 자격이 인정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1년간의 교육과정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음. DUEPS는 특히 편입이나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의 향상을 완성시켜주는 학위임.

-DUA(사회문화활동관련격증)

DEFA의 교육종결을 위해 체육청소년부에 의해 승인된 새로운 자격임.

-DUESA(사회문화활동관련 고급교육자격증)

간부나 책임자 위치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해 온 전문인들에게 해당됨. 이 학위는 보르도2, 3대학의 6DESS에의 입학을 가능하게 함. DUA와 DUESA는 INFOREC(소속지역지도자고급기관)의 한 분야인 ISIAT내에서 준비됨.

▶IRTS에 의해 증명되는 교육과정

직업교육기관은 노동부와 사회복지부에 의해 인정된 공립, 사립기관임. 직업인들의 복수교육임무를 보장하고 사회복지활동직업들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기여함.

▶전문지도자 양성

-음악교육

- 기관: CEMEA
- 음악적능력증명서

연수과정: 구체적 상황 하의 최소 25시간씩을 포함한 216시간씩의 6단계의 실습교육. 교육과정은 DEFA를 준비하는 범위 내에서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인정됨.

- 문화예술적 교육

- 기관: ASSOCIATION INTERNATIONALE ART ET CULTURE (국제문화예술협회)

·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지도자에 대한 연수교육 대학수준의 교육임.

연구 종료시에 여러 분야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

기간: 1년에서 3년

수강료: 월 2,500F(수업시간에 소모되는 재료비 포함한 비용)

주요주제: 조형예술, 심리학, 철학, 교육학, 미술사, 문명사, 어린이를 위한 작업실.

입학조건: 최소 20세 이상, 일반 교양의 적정수준

분석 능력과 종합적 견해의 피력 능력

조형예술, 대인관계, 연구활동을 좋아할 것

- 관광관련 활동 기관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A L'ANIMATION (NCFA)

사회문화활동연수국립기관

휴양센터프랑스연합 UFCV

- 유럽관광학원 (EEAT)

입학조건: 18세에서 25세 대학입학 자격소유, 영어 능통통 자

기간: 풀타임으로 19개월 (매년 11월에서 5월까지)

연수내용: 3개월 스페인어 교육

자국 또는 유럽연합국에 소재한 관광관련 단체에서 3개월 실습

영국에서의 1개월간 체류

수 료: 바르셀로나의 CNFA/UFCV, CETT, 그리고 RED-RUTH의 CORNWALL COLLEGE에 의해 수여되는 관광교육에 대한 자격증명서

· INFAC

지중해 연안의 전문개발교육기관

· 관광활동의 지도 계획입안자

입학조건 : 최소 23세 이상, 일반 교양의 적정수준, 이 분야에서 원하는 경력을 갖춘 자

수 강 료 : 4,600F - 11,000F

취 업 : 문화관광개발, 구조적지도, 여행의 동반, 지도책임자

기 간 : 실습시간 3개월을 포함한 칸느에서의 1,700시간

· 국가 관광과 사회활동 기술자

입학조건 : 최소 20세 이상, 중등교육 수료, 이 분야에서 원하는 경력을 갖춘 자

기 간 : 칸느에서 풀타임으로 1500시간

- LUDOTHECAIRE

LUDOTHECAIRE는 놀이를 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LUDOTHECAIRE는 고객을 위해, 창조적·교육적 활동의 개발 차원에서 놀이를 선택함. 취업에 관련된 연수는 다음과 같음.

· CARAVANSERIAL

이론 수업 600시간

대학입학자격 + 전문경력 2년

· CULTURE ET BIBLIOTHEQUES POUR TOUS(교양 문화와 도서관학)

교육과정은 <교양 문화와 도서관학> 부문 내의 LUDOTHECAIRE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됨.

기 간: 1월- 11월 이론교육 + LUDOTHECAIRE에서의 40시간
실습

LUDOTHECAIRE에서 일을 하기 위한 CBPT국가증명서의 준비

-농촌사회문화활동

▶책임자 연수

다음에 기술된 조직의 대부분은 지역적 대표 단체이며 동시에 교육에 관계된 면에서도 대표적 기구임.

- 사회교육기관과 학교책임자

몇몇 CREPS(육체적 체육교육지도센터)안에서 보장되는 연수임. 교육내용은 관리, 경영, 인간관계문제에 중점을 두며, 주어진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실행에 옮기는 능력있는 전문인을 교육하고 구조적 면에 맞게 조리있고 영리하게 관리운영하는 전문인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이 교육을 통해 전문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자격획득을 통해 재정적 이윤을 보다 추구할 수 있음. 단,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음.

- 사회경제학계획지도자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A L'ANIMATION(CNFA) 지도교육과정국립센터

휴양센터프랑스연합(UFCV)

입학조건: 3급 수준의 학위 (BEUG, BTS, DUT, DEGA...)를 소유, 책임자위치에서 5년간 경력있는 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기 간: 1월 - 12월까지 한달에 1주일씩 총 400시간

2년안에 적절히 안배할 수 있다(1년 5분기)

교육과정인정: 3급으로 인정되는 <사회경제학계획지도자> 타이틀 획득

-청소년 문화회관책임자 (MJC)

· FEDERATION FRANCAISE DES MAISONS DES JEUNES ET DE LA CULTURE (FFMJC)

입학조건 : 최고 38세 이하, 직업은 무관함.

DEFA-DUT같은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되는 교육과
3년간 실제적인 전문경력이 있거나 자원이나 의무로
3년간 사회활동 경력을 가진 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교육과정의 인정 : 청소년문화회관책임자로 전문인자격인정
사회문화개발전문인자격인정
대학석사학위인정

기간: 헨느에서 교대로 2년간 국가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사회교육기구조정책임자

· INSTITUT DE FORMATION A L'ANIMATION (IFA)

입학조건: ANPE에 등록된 취업희망자와 개인적 교육기회를 갖
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21세 이상 대학입학자격소지
자

DEFA에의 입학조건을 갖춘 자 또는 BASE 학위를
소지한 자

3년간 지도분야나 그외의 직업활동 경력 소유자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인정 : 연수 수료증명서와 DEFA과정 4단계 수료증명서

· INSTITUT DE FORMATION DES PROFESSIONNELS DE
L'ECONOMIE SOCIALE (INFAC) 사회경제학전문가양성기관

사회적 기업의 책임자양성

입학조건: 기구나 연구의 책임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한
28세의 사회분야전문가. 서류와 면접시험에 의해 모집

교육기간: 23주 교육 단체수업 + 실습 + 개별 또는 집단활동

▶새로운 자격증 : DE-DPAD(개발과 사회문화활동과제의 책임자
국가자격증)

새롭게 생겨난 이 자격증은 자격증 부여에 대한 실제적 요구에 부응
하는 차원의 자격증임. 지역 개발과 사회적 단결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지도하고 구상하는 전문적 지도자 간부를 육성하고자 함. 이 자격증의 타이틀은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구조적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전략적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목적을 둬.

입학조건:체육, 사회문화분야와 사회개발 전문가.

3급 수준 또는 5년간 간부생활 경력

DEFA나 DECEP, CAPASE나 BTS, DUT 고등교육 제1기학위, 체육청소년부 자격, 3급 수준의 사회분야 자격과 최소 3년간의 간부경험

5년간 전문적 경험과 같은 기간동안 관리적 비행정적, 체육분야의 기관, 사회개발분야에서 일했던 지도경력등

이 자격증은 1998년까지 시험단계 중임. 현재 교육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음.

선발: 체육청소년부 지역담당국장,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소속원, 교육기관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결정됨.

대학학사과정에 따르는 자세한 서류구성을 바탕으로 한 면접 응시자들의 조직체 내에서의 활동방향과 각오에 대한 면접 교육 분야에 따라 총괄적 의견에 대한 논술시험

교육: 교육센터내에서의 750시간, 실습장소에서의 750시간 총 1,500시간임.

최대 2년에서 3년간 계속되고 실습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행해질 수 있음.

과정은 7단계로, 각각 200시간씩 6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300시간임.

C. 미국의 청소년지도사

①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단체 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 다종다양함. 따라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기준, 단체 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들,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하나로서

- 야외활동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지도·감독에 직접 종사하는 활동지도자의 경우,
청소년활동의 지도감독과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관리요원(캠프감독자, 보조감독자, 건강지도감독자),
- 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전개 및 활동참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요원(각 단위과정 감독자는 각 활동과정의 운용책임자이며, 활동전문가는 수영강사, 테니스코치, 무용강사등이 포함되며, 활동조정가는 각 활동의 시간, 장소, 순서, 전문가 배치, 참가자의 활동참가 조정 및 활동시행 계획을 수립, 조정함. 상담원)
- 장애자와 같은 특별히 고려하면서 활동을 지도하는 상담-지도요원(counselor)은 보조 지도자나 자원봉사자로 호칭.

○ 청소년활동자의 자질

- 성숙과 판단: 교육수준과 인정가능한 경력 및 연령을 고려함.
- 단체 내에서나 활동 집단 밖에서 분별력과 확고함, 예민한 감각을 갖고 도움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낮은 보수, 낮은 수요, 낮은 생산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질있는 청소년활동자 확보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② 청소년지도자 양성체제

○ 미국의 청소년지도자양성은 주로 전국 주요 단과대학과 종합캠퍼스에 있는 청소년기관 행정에 관한 경력 중심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음. 이들 대학 중에는 청소년연구, 청소년지도자교육, 청소년기관 행정 및 그 밖의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있음.

㉠ 청소년야외활동지도자(미국야영협회 전문검정프로그램과정)

- 목적 : 캠프철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정등 야외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 자격 : 학사학위 소유하고 과거 2년안에 현장훈련 유경험 운영자가 되기전 최소 16주간의 캠프행정 경험 유

연령, 교육, 전문경력, 승인, 캠프인가 표준, 윤리강령,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 특별기관 또는 과정 이수 등에 있어 각기 다른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있음.

- 과정 : 주간 캠프 공인운영자(3박4일-1주)

숙박 캠프 공인운영자

공인 회의운영자

공인 프로그램지도자

공인 부지관리자

- * [조지윌리엄스 칼리지 : 3개월 인턴십과정
Wheaton 대학교 : 1년 인턴십과정]

- 내용 :

- 단체생활을 통하여 아이디어와 정보교환
-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캠프조직과 직원 및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④ 자원봉사지도자

- 청소년회원에게 프로그램 전달자는 자원봉사자이며 청소년단체의 거의 전부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집단, 클럽, 분단(Group)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

D. 독일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관

(1)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현황

- 독일의 청소년지도자는 전임지도자와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임지도자는 국가 점정 필요성 유무와 급수를 기준으로 각기 두개의 하위그룹으로 구분된다
- 전임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청소년지도원(상급), 교육사, 보육사(하급)등 다양하며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음
-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에 따라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청소년단체 등에서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음

(2)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

독일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주로 고등전문학교에서 행해지다가 1969년부터 대학에서 정식으로 행해지기 시작함

㉔ 전문지도자

○ 사회교육가

-대상 : 실과학교의 졸업 또는 동등 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 경험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

교육자 또는 유치원교사

-과정 : 6학기(3년)의 고등전문학교를 수학한 후에 1년의 실습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 취득

2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4학기(2년)의 수학에 의해 자격 취득

○ 사회사업가

-대상 : 중간학교 내지 전문학교 수료와 2-3년의 직업 경험을 가진 19세 이상인 자

-과정 : 다시 3년의 수학과 국가시험 후 1년의 실습을 거쳐 자격 취득

○ 여성청소년지도원

-대상 : 교육자나 유치원 교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23세 이상인자

-과정 : 4학기의 고등전문학교 수학

○ 교육사 및 보육사

-대상 : 실과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이며, 1년 이상 관련 영역에서 일한 17-18세인 자

-과정 : 2년제 전문학교에서의 수학과 1년간의 실습에 의해 자격 취득

○ 청소년지도원

-역할 : 사회교육가나 사회사업가 중 청소년교육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칭함. 최근에는 청소년 지도과정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나 초등학교 교사 중 청소년사업

에 종사하는 자를 통틀어 호칭함.

-과정 : 지방자치제에서 주관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

1년, 일주일, 주말등 기간은 다양함.

교육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부터 전문적 특수지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룸

지도자 유형	대 상	자격취득과정
사회교육가 (Sozialpädagoge)	· 실과학교(Realschule)의 졸업 또는 동등의 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경험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	· 6학기(3년)의 고등전문학교를 수학한 후에 1년의 실습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취득
	· 교육자 또는 유치원 교사	· 2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4학기(2년)의 수학에 의해 자격취득
사회사업가 (Sozialarbeiter)	· 중간학교 내지 전문학교 수료와 2-3년의 직업경험을 가진 19세 이상인 자	· 3년의 수학과 국가시험후 1년의 실습을 거쳐 자격취득
교육사 (Erzieher) 보육사 (Kindergartnerin)	· 실과학교의 졸업 또는 동등학력이 있고 1년이상 관련 영역에서 일한 17-18세인 자.	· 2년제 전문학교에서의 수학과 1년간의 실습에 의해 자격취득.

㉞ 자원봉사자

○ 전임지도자 외에도 청소년지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자원봉사자가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해 통상의 유급 휴가 이외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교육은 지방자치제를 위시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며, 각 기관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에게 지방자치제 또는 연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자격증을 수여함.

E. 일본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관

(1) 청소년업무 주관부서

○ 일본의 청소년 업무는 문부성, 경찰청등을 비롯해 총무청, 외무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 노동성등 관계부처가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기관이외에 청소년문제심의회, 청소년대책본부 및 청소년대책추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갖고 있음.

(2) 청소년지도자의 유형과 역할

○ 일본에서는 청소년지도자가 행정양면에 다종다양하게 존재하며 민간인으로서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직업 이외에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행정관계의 비상근직원으로 위촉된 사람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와 유형

- 전문적인 행정직원 :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스포츠 시설등의 전문직원,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주사, 직업훈련지도원, 농업개량보급원, 소년보도관 등

- 청소년전전 육성시설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이용 청소년을 지도, 조언해 주는 직원,레크리에이션, 그룹활동의 지도, 생활 및 직업상담 아동위원, 가정상담원, 신체장애자상담원, 정신박약자상담원 모자상담원, 모자보건추진원, 사회교육지도원, 체육지도위원, 사회교육위원, 직업상담원, 부인소년실험조원, 부인소년실험특별조원, 지도농업사, 청소년지도원, 청소년상담원등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원, 소년경찰협조원, 소년보도위원(경찰제외)보호사

- 기업등의 유급지도자 :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 근로청소년복지원

- 행정기관등이 위촉한 지도자 : 아동위원, 사회교육지도원, 직업상담원 등

- 민간의 유지도자 (자원봉사자) : 추진지도원은 지사 또는 청

소년육성 원민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단체의 지도, 상담, 연락을 담당함.

○ 일본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호칭과 종류로 구분되나, 역할과 종사하고 있는 업무는 기능상 유사함.

-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관리 운영, 단체의 조직화, 연대강화 등
도 : 지도관계 행정직원이나 시설직원
- 환경이나 조건의 정비, 연락, 지도자 양성, 예산정비, 사업의 기획, 집행 : 사회교육주사, 사회복지주사 등
- 실제적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지도 감독 : 전문 특기를 갖고 강의, 조언, 프로그램 작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지도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상담, 진단, 보도등의 분야에 종사함. 학식, 경험자, 각종 시설 지도직원, 아동복지사, 청소년상담원, 소년보도위원등이 속함.
- 청소년사업을 후원 · 단체의 유지, 발전등을 위한 활동 : 민간독지가,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원 및 상근, 비상근지도 임직원 등이 포함됨.

(3)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의와 역할, 청소년단체의 조직, 재무, 홍보, 청소년단체의 학습활동의 기획, 전개, 평가, 그리고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 토의, 실기 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함

(4) 지도사양성상의 문제점

지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지도상의 전문성의 결여, 지도자 양성 연수의 미흡, 지도자의 처우나 사회평가의 문제, 각종 지도자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도에 있어서는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커뮤니케이션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지도자는 기술은 물론, 단체운영의 방법, 카운슬링, 집단작업 등의 청소년이해의 방법 등의 습득, 그것을 활용한 현장경험 등이 요구되므로 연수에 반영되어야 함.

F. 네덜란드의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정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시당국은 지역차원에서 예방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고, 주정부는 치료정책과 청소년 보호사업 서비스를 담당함.

○ 청소년정책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것임.

○ 청소년의 지위, 교육, 직업, 주거등은 청소년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제임.

○ 청소년교육은 다음의 역할을 해야 함. 특히 학교나 어떤 기구에도 속해 있지 않는 청소년에게 그 역할은 더 의미있음.

여가생활과 레크리에이션을 담당

사회적으로 행동과 재능을 격려함

청소년은 물론 부모에게도 교육과 정보 제공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성 고무시킴

실질적인 사회질서와 규율에 대한 적응력 주입

○ 청소년교육의 시도방법

-대상집단에 대한 정보수집

-접촉기회의 구상과 마련

-대상집단의 확정과 묘사

-대상집단의 요구 인식

-계획을 실행하는 활동의 체계화

-평가

-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계획 실시

○ 청소년지도사의 자질

대상집단에 관한 방법론과 태도를 알아야 하며, 전문적, 기본적 태도는 매우 중요함. 이러한 태도는 지도자 자신의 인성과 밀접함. 경험과 의견, 이념과 원칙과 방법론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아는 비평적 자세 그리고 청소년과의 신뢰성을 갖게 되는 능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청소년과의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2차대전 이전에는 청소년지도사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였으나 1960년대에 처음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고용되었음.

- 청소년지도사는 상담을 주로 함. 시당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청소년집단과의 상담을 통해 이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거나 취업을 도와 줌. 이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역할에 따라 간호, 수용, 보호, 예방, 상담 및 안내와 정보제공, 조언, 치료로 분리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의 목적

- 아동과 청소년에게 오락, 교육,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임.
-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은 지역센터나 청소년의 만남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 짐.

○ 청소년교육담당자 양성과정

특수 양성과정은 없으나, 직업적인 두 과정이 존재함. 전문중급교육과 전문고급교육임.

-전문중급과정

2년간 계속됨. 사회문화부서에서 이미 업무경험이 있거나 실습이나 연수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시간제로 이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전문고급과정

4년간 계속됨. 사회문화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파트타임 수강 가능. 다루어지는 과정은 4개 부분으로 문화와 사회교육, 사회복지교육, 자원봉사적 교육과 인간과 직업임.

3. 청소년활동(Youth Work) Tony Jeffs & Mark Smith eds.

군인(Redcoat)으로서의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서비스는 원래 산업화와 야기된 계급 양분화를 메우기 위해, 종교단체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참여자들은 조화된 권력과 충만한 열정 그리고 사회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이 향상됨에 따라 활동자체가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야기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야외활동은 사회교육의 한 영역이 되었고, 또한 성격형성에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 제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청소년사업에서는 점차 청소년서비스를 교육체계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근직 청소년지도사들은 훈련된 교사들이 담당했다.

○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이 중요한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청소년서비스는 상업조직과 청소년을 위한 레저산업에서 경쟁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쟁은 청소년서비스를 점차 군인스타일로 강화시켜 갔다. 이에 따라 청소년서비스와 군인스타일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 군인스타일은 청소년지도자와 양립할 수 없다. 군인스타일은 레저의 공급을 사회교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은 때우는 데 많은 오락을 공급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인스타일은 청소년에게 그들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군인스타일이 그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서비스 밖에 존재한다.

○ 청소년클럽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게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의하고, 계획하고, 논의하고, 정보를 모으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논제를 정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군인스타일의 청소년사업에서는 청소년을 레저공급의 소비자인 측면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청소년사업에서는 청소년을 능동적인 측면에서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 상황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만들고, 차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서비스가 요구된다.

사회사업가로서의 청소년지도자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지도자는 조직능력이나 열정, 활동능력이 아니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며, 청소년을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다. 때때로 청소년지도사들은 중립적인 상담 역할로부터 보다 명백하게 개인을 옹호하고 관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된다. 이 때,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클럽이나 이웃청소년의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복지이다. 청소년지도사에게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지도사에게는 낯선 영역에서 모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관여주의적 입장은 사회사업적 접근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식적 관여보다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접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여기서는 사회사업가로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무엇인지를 볼 것이며, 활동상의 문제, 한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자발적인 영역에서 사회사업적 접근을 사용할 것을 시사하고자 한다.

○ 여기서 소개되는 PYP(Pilton Youth Programme)계획은 스코틀랜드의 청소년사업으로, 자금은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출현되지만, 자발적 조직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개인상담과 가족사업 그리고 소집단사업에서 청소년클럽에 이르는 광범위한 청소년 서비스를 확립함으로써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12-18세의 지역청소년의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이 계획의 기본적 원칙은 낙인되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 법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남, 공동체 관여, 최소한의 관여, 협상과 참여이다.

○ PYP는 당국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사업과 사회사업을 조합한 방법, 즉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개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역 청소년지원 관계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업에서 가장 핵심은 청소년의 가정이나 PYP모임에서 개인 상담을 통한 면접적 접촉이다.

○ 이들은 이웃에서 어른과 청소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청소년사업의 실행과 PYP계획에 대한 논의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입지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의 계획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에 있어서 지역 청소년사업 담당부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계획이 되었다. 또한 지역 청소년의 실제로 겪은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참여와 그 절차는 여러 접근 방법을 만들어 냈고, 결국 스코트랜드 청소년 사법 및 복지 원리와 일치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사업가로서의 청소년지도사

○ 지역사회사업가와 청소년지도사는 그들의 하는 일이나 정의에서 서로 다르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의 구체적인 발달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혹은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잠재력의 실현 구현에 주된 관심이 있다면, 지역사회지도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집단행동을 촉진하거나 박탈과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은 주로 지역사회 조직이나 세입자 집단, 지역사회 행동집단등과 함께 한다. 최근까지도 청소년지도사들이 지역사회사업가로서 일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 지역사회사업가들이 현 상태에 도전하는 문화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정치와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들은 보수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역사회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간의 상호 학습과 공동작업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도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주민들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학교에 기초한 청소년사업의 확장과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의한 학교이용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 청소년지도사들이 지역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센터의 운영에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방법은 다양한데, 센터의 자금사정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센터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거나 역할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참여의 유도는 센터의 운영에 청소년들이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경제적 이유에 다른 집단에 의한 센터의 이용을 이해하게 되며,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이미 지역사회사업과 유사한 일을 해 오고 있다.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시설에

대한 일이 아닐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사업으로서 청소년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요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체 자체의 힘과 자원을 평가한 다음, 어떤 지역이 현재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지만 요구가 없는가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그 지역에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중 다른 역할보다 우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청소년지도사는 그들 자신과 고용인의 동기와 신념에 따라 청소년을 사회내 특정 지위에 걸맞게 사회화시킨다거나 사회내 자신의 입장을 개선시킨다거나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고, 도전, 비판, 분석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은 폐쇄적, 개방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방적 교육 현장에서는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격려한다.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와 학습자간의 지속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학습자 중 누가 위에서지 않으며,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관계는 공평성, 신뢰, 상호존중에 기초한다. 이들은 서로 역할로 보다는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하며 때로는 친구 이상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이러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직면한 문제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생활이 무엇이고 어떤지에 대해 알며,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것 자체가 교육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느낌,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식적 시도이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인식, 변화에 대한 개방성,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목표가 될 수 있다.

○ 사회교육은 청소년활동의 역사적으로 주요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자의식과 개인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은 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형태의 활동에는 부적절하다. 정치교육은 사회교육과는 극단적인 것으로 이 교육의 접근은 사회내 계층이나 성별, 인종등에 관한 청소년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결국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에게 역할모델이 되어 지도사의 사고와 행동을 학습한다.

○ 청소년서비스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습은 경험적이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대화부터 보다 큰 지역사회내의 사건과 활동등 광범위하다.

○ 청소년기부터 성년기로의 전이를 하면서 이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과 장애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 청소년 스스로 삶의 정치적 차원에 대한 인식,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연령, 성별등에 따른 사회적 입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청소년지도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해 인식할 때,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원하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원하게 된다. 청년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조치를 취할 때, 비판적 관여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피상적 수준이 아닌 깊게 이해하고, 지지적이며 상담자로서 활동, 정보의 제공도 청소년지도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 교육자로서의 청소년지도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해 요인은 잘못 설정된 정책, 자원부족, 그릇된 자원관리이다. 청소년지도사는 그간 교육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며, 클럽을 운영하고, 어린아이들과 1년에 2번 캠핑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철학과 실습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관리인으로서의 청소년지도사

○ 혁신적이며 교육적이고 정치적으로 의식적인 면에 청소년서비스 요구가 있는 시기에 청소년지도사가 많은 시간을 관리인 역할을 하는데 보내는 것이 사소한 처럼 보인다. 정치, 사회교육이 이상적이며 전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다양한 종류의 실질적이며

때로는 정규적 업무에 매우 천한 잡일까지 행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사가 일하고 있는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청소년지도사에게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 관리인이라는 용어는 건물의 보호인이라는 의미이다. 아동돌보는 이, 사회사업가, 간호사와 경찰은 모두 돌보는 사람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혼돈이 된다.

○ 초기에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제공하고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놀아주는 것을 기대해 왔다. 특히 연령에 따라 어린 청소년의 경우는 놀아주기 보다는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이 보다 효율적이기도 했다. 오늘날 청소년의 사기, 여가, 복지 및 돌봄을 포함하는 초기 서비스를 하는 많은 기관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이 잊혀졌으나 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서비스의 본질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청소년서비스의 교육적 /정치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거부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와 관리 집단간에 의견의 양극화가 존재한다. 위원회와 지도사간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는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교과과정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에서는 갈등이 야기되었다. 어떤 제도권 내에서는 지도사는 여전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로 기대되었고, 제도권의 초기 목표와 일치되게 구조화된 여가를 제공하고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초기에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제공하고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놀아주는 것을 기대해 왔다. 특히 연령에 따라 어린 청소년의 경우는 놀아주기 보다는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이 보다 효율적이기도 했다.

○ 서비스에 대한 초점이 사회복지모델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교육과 인간발달쪽으로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기관간의 연결을 극대화하며 얽혀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학교, 청소년과 지역사회센터와 대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지도사가 지역사회내 청소년과 활동하는 추세는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경향을 보인다.

○ 청소년활동과 목표에 대한 공감부족과 지식부족은 지도사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사의 역할이 유급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불충분한 재원과 전문적, 실질적인 지원부족은 지도사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 많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발달관련 프로그램과 사회, 정치교육적인 지향과는 동떨어진 서비스에 노출되게 된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에서의 인식부족과 자원부족은 관리자 역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만든다. 청소년지도사는 방문센터, 식당과 비취업 집단내에 한두사람의 청소년지도사는 회의 개최나 전화받는 일들을 한다. 어떤 청소년지도사는 건물관리, 설비를 끄고 센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역할이 한정된다. 공공지출이 삭감되면 청소년과의 활동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관리지원을 가능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건물이나 결비를 지키고, 사용자의 계산서를 쓰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지겨운 일로 지도사에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사는 이 역할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상적으로 이 역할은 사무원에게 이전이 되어야 하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으며 가끔 청소년지도사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활동과 그 목표에 대한 공감과 지식부족은 청소년지도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 청소년활동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감지하기 힘들다. 사회교육이라는 것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관리자나 교장, 대학의 장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인지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청소년과 지역사회내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역할에 대한 제한된 이해만을 한다. 유급이건 자원이건 좋은 청소년지도사의 업무는 청소년사업을 계속할 자원이 준비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지도사의 업무에는 현재의 자원 수준을 감시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 청소년서비스는 그릇된 개념과 모호함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아왔다. 청소년지도사가 사회교육자, 상담자와 발달적 지도사로서 역할을 충족하도록 시도할 때, 대상은 그들의 내담자로 확인된 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관리자, 지방정부 관료와 선출된 구성원이 포함된다. 서비스 개념이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변화될 때 서비스 역시 초기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관리자 모델을 벗어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와 소년법정

○ 청소년비행에 대한 법적 처리에 있어서 복지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바로 청소년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무엇일까?

○ 청소년지도사는 직업적 우선도, 인간적 철학과 활동 역할 면에서 볼 때 다양하다. 청소년지도사는 법적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알려진 개인이나 집단을 지지할 수 있다. 위협에 처한 청소년의 예방작업에 참여한다. 지역 내 일탈관리 선도에 개입한다. 즉,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 법정에 선 청소년에 대해 무력감과 혼란을 느끼겠지만,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동의없이도 부모나 사회복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은 그들이 법에 연루된 과정과 의무와 권리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친구같이,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의존성을 막기 위해 언제 철회해야 할 지, 거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범죄예방자
- 전환: 법정으로부터 벗어나 관리/ 보호 역할
-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접근: 보상/배상

청소년지도자는 지역사회내 청소년범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활동에 관해서는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관전이다.

· 체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리과정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법적 대표를 찾는 것: 청소년범죄에 관한 전문가는 상담비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그들의 부모가 부담하는데 소득과 가족 수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가족은 법적 advice와 representation 비용이 면제된다. 청소년지도사는 변호하는 것에 능숙하고, 청소년복지에 대해 진실로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전문가를 포함시킨다: 사회질의문은 주관적이며 청소년지도사가 절의하기 원하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보고서가 청소년과 한두번 정도 만난 것을 근거로 한 정보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가치로운 근거의 정보를 입증해야 한다.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가 비협조적이

고 관심이 없는 경우, 변호사는 청소년지도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는 독립적으로 법정의 서기에게 간단한 특성참고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작성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청소년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만 청소년지도사는 자유롭게 작성하고 거부권을 가질 수도 있다.

· 학교에 기초하는 보고서 : 사회질의회문에는 학교에서 작성한 질의응답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학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가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되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이 불균형과 나쁜 자질을 바로잡고 이러한 언급과 논의에 대해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 판사와 소년법정에 대한 친숙함 : 법정활동과 법적 용어에 대해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청소년지도사는 법정활동이 어떤 지원과 원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소년법정은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법정 서기에게 서면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선고에 대한 중재 : 선고 이전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 편지 받는 것, 지역의 소기와 사건에 접하는 것, 청소년클럽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최소한의 중재가 미덕이며 많은 청소년이 가해자일 뿐 아니라 희생자이기도 하다. 많은 청소년지도사는 법정에 선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중재도 자유로와야 하며 청소년의 동의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는 중재 목적을 이해해야 하며, 부정적 반향을 가져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중재는 가장 좋은 대책이다.

○ 중재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청소년이 가해자일 뿐 아니라 범죄의 희생자라는 시을 갖고 청소년의 전적인 동의하에 수행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중죄가 아닌 모든 청소년은 구류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청소년지도사는 Rutherford가 언급한 청소년가해자를 위한 10가지 보호특성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가족과 직장과의 관계와의 단절 및 와해
 정상적인 성숙경험의 배제 (심리성적발달의 지체 포함)
 범죄 태도의 강화
 범죄 기술의 고양
 공모자의 도입
 폭력과 협박의 경험
 인종주의와 인내심부족에 대한 교훈
 제도적 삶에의 의존성을 유인할 위험
 구금제도의 전수감자에게 혐의를 씌움
 보호기록 결과 사회적, 개인적 결과와 흔적

사상자로서의 청소년지도사

○재해증후군은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영역에서 드문 것이 아니다. 본래 직업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전문가의 수는 적을 뿐이다. 전일제 근무를 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어려움을 겪어 질병, 개인적인 스트레스, 또는 취업을 중단하게 되기도 한다.

○casualty를 만드는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직업과 관련되며 서로 상관되어 있다.

- 활동에 관한 일상적 조건과 반사회적 시간
- 보편적 압력문제 : 과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 특정 훈련부족과 지원부족
- 도시재정인 과제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편의주의 근거
- 부가적 훈련을 요하는 몇몇 부서의 어려운 조건(상황)

○재해의 결과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기 어려운 영속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업에 근거한 것이며, 독단적 관리와 작업만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의 대부분은 혼자서 지도사 위치에 고용되며, 청소년서비스 자체는 공공 서비스내에서 주변적이며, 전문직 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점유한다. 작업장은 흩어져 있어 그들 자

신의 조작 수준에서 전일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와의 교류를 갖기 힘들다. 이러한 스트레스 역시 재해에 포함된다.

○ 이 장의 목적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보다 문제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가로서의 청소년지도사

○ 사업가는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윤을 재정적 의미로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지위, 승인, 개인적·정치적 권력에의 접근, 교육적 잠재력을 포함한다면, 청소년지도사를 건설적 방향에서 사업가로 볼 수도 있다.

○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자본을 제공하는 주체와의 가치갈등이 주된 문제이며, 이윤은 지위나 승인 그리고 개인적 권력에의 접근과 같은 개인적 이득과 시설의 증가나 청소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기회의 증가와 같은 청소년에게 이득을 주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사업가로서 청소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1) 개인들과 집단의 구체적인 욕구를 분석하고 2) 목적을 설정한 다음 3)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4)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5)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6)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순환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시장)과 자금후원자(광범위한 지역사회와 지역교육국)에 적합하고 수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해야만 한다.

○ 많은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신뢰성을 상실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성은 청소년과의 신뢰성 만큼이나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들의 활동을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그들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비상근 지도자를 총원하고 지역사회내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그들의 사업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지역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구축되었고 더 많은 자본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활동에 압력이 줄어들어 효과가 있었다.

○ 또한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당국(행정가와 정치인)의 신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과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담당자들이 정책이나 교과과정 개발, 훈련 등에 대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깔끔히 정리해 모든 요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교육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자금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고충을 줄일 수 있다.

○ 다른 청소년서비스 집단과의 경쟁에서는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영향력은 지도자들의 신뢰감과 자문위원회의와 조합 그리고 실행당사자 체계를 통해서 생산된다. 거리, 지역, 국가적 모든 차원에서의 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행정, 규제와 실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된다.